정책연구 2013-2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연 구 진

임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김현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안영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해육(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오은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손화정(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이희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차 례

제1장 서 론 ····· 1

제1절 과제의 배경 및 목적 ····· 3

1. 과제의 배경 ····· 3
2. 과제의 목적 ····· 5

제2절 과제의 범위 및 방법 ····· 6

1. 과제의 범위 ····· 6
2. 과제의 수행방법 ····· 8

제2장 투자저해 지방규제 현황 ····· 11

제1절 규제의 의의 ····· 13

제2절 행정규제의 의의 ····· 16

제3절 지방규제 의의 ····· 23

제4절 지방규제 현황 ····· 24

제5절 지방규제의 문제점 ····· 28

제6절 해외규제와 시사점 ····· 33

제3장 자치단체의 인허가 관련 규제 ····· 37

제1절 인허가의 개념 ····· 3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인허가 규제 현황 ····· 40

1. 주요 법률 ····· 40

2.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업무 유형 ····· 41
3. 주요 인허가 규제 ····· 44
4. 인허가 규제업무의 처리과정과 절차 ····· 48
5. 문제점 ····· 51

제4장 지방규제 설문조사 분석 ····· 53

제1절 분석의 개요 ····· 55
제2절 기업체 분석 ····· 56
제3절 공무원 대상 분석 ····· 63
제4절 기업인, 공무원 비교 분석 ····· 77

제5장 지방규제 제도개선 방안 ····· 85

제1절 제도개선 기본방향 ····· 87
제2절 제도개선의 총괄 ····· 89
제3절 세부 개선시책 ····· 91
1. 입지·규제 관련 정보공개 개선 및 총괄 시스템 구축 ····· 91
2. 기업활동 및 규제관련 시책 지원 ····· 95
3. 규제개선 평가 / 공무원 교육 강화 ····· 102





[보론] 지자체 기업활력지수의 개발 및 활용 ····· 106

〈부록 1〉 규제비용의 분석 : 방법과 사례 ····· 132
〈부록 2〉 지방규제 개선사례 ····· 138
〈부록 3〉 행정규제기본법 ····· 153
〈부록 4〉 지방규제 설문지 ····· 166

참고문헌 ····· 189

표 차 례



<표 1> 부처별 등록규제의 수 ····· 3
<표 2> 규제의 개념 ····· 14
<표 3> 규제의 유형 ····· 15
<표 4> 근거별 규제현황 ····· 25
<표 5> 시도별 규제현황 ····· 25
<표 6> 부문별 규제현황 ····· 26
<표 7> 유형별 규제현황 ····· 26
<표 8> 사무특성별 규제현황 ····· 27
<표 9> 연도별 규제현황 ····· 28
<표 10> 행정처분의 종류 ····· 40
<표 11> 기업·상공인 관련 주요 법률 및 위원회 ····· 41
<표 12>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규제의 유형(예: K시 건축규제) 43
<표 13> 인허가 관련규제 ····· 45
<표 14> 기업에 대한 지자체 규제정도(기업인) ····· 56
<표 15>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원인(기업인) ····· 57
<표 16>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정도(기업인) ····· 59
<표 17> 규제 개선 과제 ····· 61
<표 18> 기업에 대한 지자체 규제정도(공무원) ····· 63
<표 19>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원인(공무원) ····· 64
<표 20>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정도(공무원) ····· 66
<표 21> 공무원의 규제업무 행태 ····· 68
<표 22> 규제 관련 행정 시스템 ····· 72
<표 23> 규제 개선 과제(공무원) ····· 75
<표 24> 기업활동에 대한 지자체 규제영향과 정도 ····· 78
<표 25>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원인의 소재 ····· 79



<표 26> 규제유형별 기업활동 저해 ····· 81
<표 27> 규제 개선 과제 ····· 82
<표 28> 지방규제 개선의 방향 ····· 89
<표 29> 지방규제 개선의 총괄 ····· 90
<표 30> 토지이용 및 기업입지 제공정보 예시 ····· 92
<표 31> 자치단체 BVI 평가절차 ····· 97
<표 32> 지방규제 개선 Doctor제 ····· 98
<표 33> 지방규제 개선 건의자 보호 ····· 99
<표 34> 지방규제 개선 평가지표 ····· 103
<표 35> 지방규제 개선 평가 방안 ····· 103

그 림 차 례



<그림 1> 인허가 규제업무의 일반적 처리절차(제1, 2 유형) … 48
<그림 2> 사례: 축허가 및 사용승인 흐름도 …… 50
<그림 3> 내부관련부서 협의체계 …… 51
<그림 4> 산업단지 정보제공 예시 …… 93
<그림 5> 국가-지방규제 총괄 시스템 구성 …… 94
<그림 6> 기업활력지수의 구성 부문 …… 96
<그림 7> 지자체 기업활력지수의 구성 …… 96

제1장
서 론

제1절 과제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과제의 범위 및 방법

제 1 장 서 론

제1절 과제의 배경 및 목적

1. 과제의 배경

○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동에 대한 지방규제의 문제점은 역대정부에서 핵심적인 사안 중의 하나였음

-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규제개혁→기업 투자촉진→경제 활성화→고용 확대의 고리에서 단초가 규제개혁이라는 인식

○ 그런 형편에서 2013년 부처별 등록규제의 수는 7,648건이며 2012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고 있음

- 2012년 부처의 총 등록규제의 수는 7,428건이었던 데 비해, 2013년은 7,648건으로 220건이 증가하였음

<표 1> 부처별 등록규제의 수

부처명	2012년 12월	증감소계	2013년 10월
경찰청	124	0	124
고용노동부	311	4	315
공정거래위원회	211	0	211
관세청	28	7	35
교육부	357	11	368
국가과학기술위원회	0	0	0

부처명	2012년 12월	증감소계	2013년 10월
국가보훈처	52	0	52
국가인권위원회	0	1	1
국무조정실	14	0	14
국민권익위원회	3	1	4
국방부	21	4	25
국세청	15	0	15
국토교통부	1210	24	1234
금융감독원	1	0	1
금융위원회	822	7	829
기상청	15	1	16
기획재정부	161	6	167
농림축산식품부	393	15	408
농촌진흥청	12	0	12
문화재청	59	0	59
문화체육관광부	235	6	241
미래창조과학부	255	2	257
방송통신위원회	42	0	42
법무부	127	0	127
병무청	3	0	3
보건복지부	512	5	517
산림청	130	2	132
산업통상자원부	448	4	452
소방방재청	125	1	126
식품의약품안전처	227	13	240
안전행정부	207	3	210
여성가족부	81	0	81
외교부	11	0	11
원자력안전위원회	13	65	78
중소기업청	93	3	96
통계청	6	0	6
통일부	16	0	16
특허청	30	0	30
해양경찰청	45	0	45
해양수산부	611	25	636
환경부	402	10	412
계	7428	220	7648

출처 :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위원회 홈 페이지(http://www.rrc.go.kr/)

○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등록규제 사무명으로 파악한 규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

- 중앙정부 등록규제의 사무명은 15,054건, 지자체가 등록한 규제는 50,665건에 이르고 있음

※ 지자체 등록규제의 사무는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처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규제 누락 등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있음

○ 박근혜정부에서도 정부의 정책 중의 하나로 기업의 규제개선을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 7. 11)을 계기로 기업의 규제개선이 보다 가속화
- '13년 4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투자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는 대책 마련 지시
-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 5. 1)를 거쳐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 7. 11)에서 기업의 투자를 위한 본격적인 규제개선을 대통령이 지시

※ 중국 시안(西安) 방문시 지방정부가 투자유치를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이 인상적, 동시에 규제완화 성과가 큰 지자체에 인센티브 지원방안 검토

○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실태분석, 규제원인, 규제비용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

- 안행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VIP에게 보고할 연구과제의 수행이 필요

2. 과제의 목적

○ 본 과제는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지방규제의 원인과 소재, 지방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법령규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인지 여부, 기업차원의 체감 규제 등에 대해서는 법제처, 산업부 등이 조사 및 연구를 수행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원인과 비용, 사례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첫째, 조례를 포함한 규제에 대한 지자체의 자치법규, 공무원의 행태, 인허가 원인, 규제비용 등 분석
- 둘째, 지방규제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지방규제 개선방안을 제시
- 셋째,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개발, 제시

제2절 | 과제의 범위 및 방법

1. 과제의 범위

☐ 지방 규제

○ 규제가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의 관련 법령에 토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2) 지방공무원의 행태 측면의 규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
- 자치법규, 공무원의 행태도 기본적으로 법률에 근거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일정한 재량을 가진 채, 관련 법령, 자치법규를 적용하는 공무원의 행태도 상당히 중요한 규제의 문제가 될 수 있음

☐ 지방 인·허가

○ 절차적인 규제에 해당되는 기업투자에 대한 각종의 인허가 사항을 분석
- 인허가도 기본적으로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치법규, 공무원의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의 원인, 현황 등을 분석

☐ 규제 비용

○ 기업활동 및 투자에 대해서 지방규제가 가져오는 규제비용을 산출

- 기업의 규제비용은 행정비용 등도 포함될 수 있지만 주로 규제가 가져오는 기업의 손실이나 비용 측면의 관점에서 접근

☐ 규제사례 개선방안

○ 안행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발굴한 지방규제 사례 가운데 핵심적인 사례의 개선방안을 개발, 제시

- 안행부와 지자체는 시도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담당자로'지방규제 발굴팀'(30명)을 구성, 운영하고 규제사례를 발굴

○ 핵심적인 규제사례는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규제 개선에 상당히 어려움을 보유하고 있음

- 소수의 핵심적인 규제사례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을 제시

☐ 제도개선 방안 개발

○ 기업활동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개발, 제시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설치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제23조('98년, 4. 18일)

- 규제등록현황, 분야별 규제정보 등으로 제한된 규제를 제공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보포털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개발, 제시

○ 지방규제 구호제도, 지자체 및 부처별 평가, 규제정보 포털 공개품목의 확대 등 다양한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 국민에게 알려진 지자체별 포털 공개(공개시기- 분기별), 기업신고센터 정보, 지자체 기업협력지수, 지자체별 토지이용 현황 정보 등 추가적인 개선 등이 필요
- 안행부의 정보포털 구축, 연계를 위한 토대가 되는 자료의 생성 및 제시

2. 과제의 수행방법

☐ 규제 관련 이론검토

○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 등 규제일반에 대한 이론 및 내용 검토

- 규제의 개념, 규제의 유형, 원인과 양태
- 규제 개선 시책의 역사적 흐름, 규제개혁 및 완화, 개선 방법 등

☐ 안행부와 유기적 협업

○ 안행부 '지방규제완화 TF'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규제완화 TF'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규제를 발굴, 압축하고 개선방안 등을 개발

- 실무적으로는 안행부(위원장은 2차관)의'지방규제개선위원회'의 규제개선을 지원

※ 안행부는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옴부즈만) 등과 협업을 통해 지방규제 개선을 추진

☐ 기업 및 공무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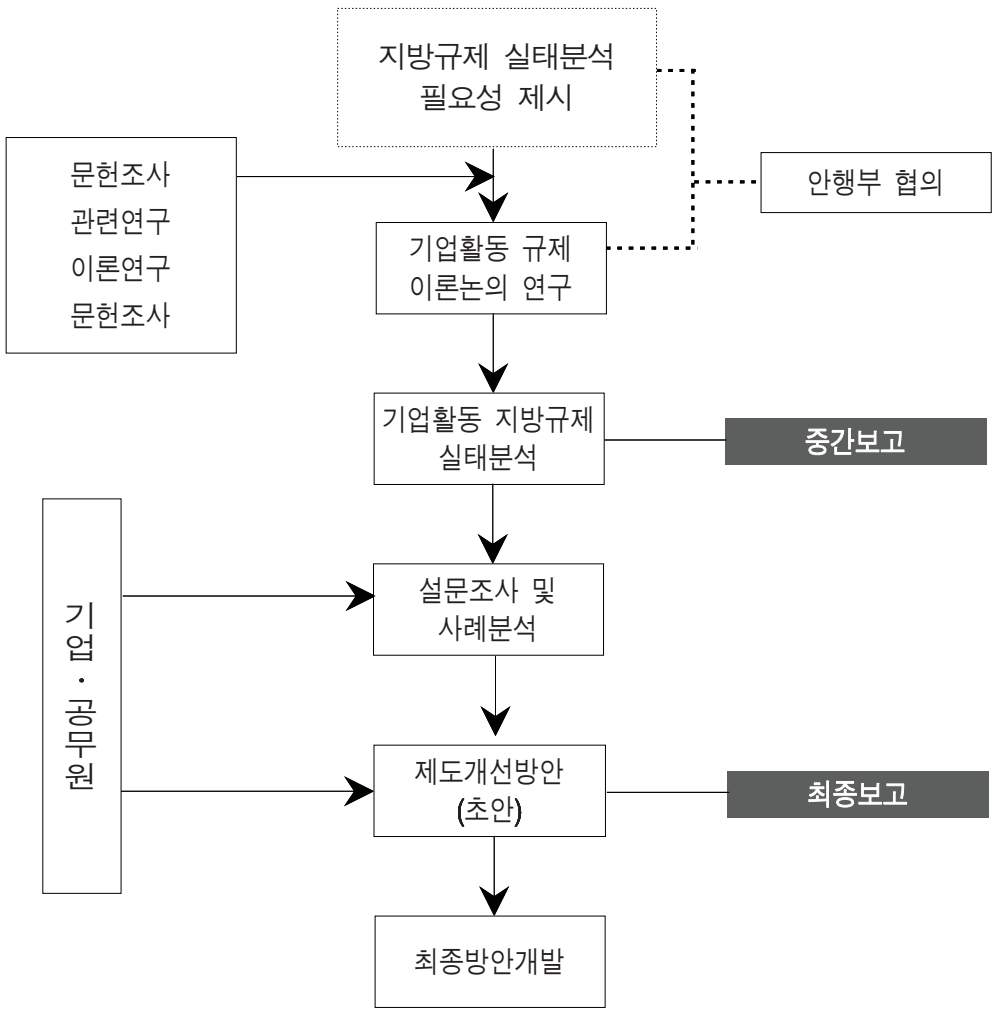
○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활동 촉진을 저해하고 있는 지자체 자치법규, 지방공무원의 행태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

- 안행부와 중기청의 협조를 통해 기업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취합 (별첨, 설문지 참조)

○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업활동의 촉진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자체 자치법규, 지방공무원의 행태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

- 안행부의 협조를 통해 시도,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를 시행(별첨, 설문지 참조)

과제 수행도


지방규제 실태분석
필요성 제시
문헌조사
관련연구
이론연구
문헌조사
안행부 협의
기업활동 규제
이론논의 연구
기업활동 지방규제
실태분석
중간보고
기업·공무원
설문조사 및
사례분석
제도개선방안
(초안)
최종보고
최종방안개발

제2장
투자저해 지방규제 현황

제1절 규제의 의의
제2절 행정규제의 의의
제3절 지방규제 의의
제4절 지방규제 현황
제5절 지방규제의 문제점
제6절 해외규제와 시사점

제 2 장 투자저해 지방규제 현황

제1절 규제의 의의

☐ 규제의 개념

○ 광의

- 어떤 주체의 행동선택에 의도적으로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과정 (Mitnik, 1980)
- 사회적 공동생활의 유지를 위한 개인의 욕구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나 구속(규범, 관습, 도덕, 법 등 ⇒ 수단: 훈육, 교육, 포상 ,제재, 형벌 등)

○ 중의

-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최병선, 1992)

○ 협의

-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법과 규칙의 설정이 요구되므로 정부구조밖에 존재하는 개인이나 조직들에게 정부가 설정한 표준과 주요 경제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부과하는 법과 규칙(미국 규제개혁위원회, 1977)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2013)

<표 2> 규제의 개념

구분	내 용
광의	- 어떤 주체의 행동선택에 의도적으로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과정
중의	-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
협의	-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법과 규칙의 설정이 요구되므로 정부구조밖에 존재하는 개인이나 조직들에게 정부가 설정한 표준과 주요 경제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부과하는 법과 규칙

❑ 규제의 유형

○ 규제는 그 성격에 따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1)]

- 경제적 규제란 가격, 품질, 경쟁, 시장진입 및 퇴출 등과 같은 기업의 사장활동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규제(ex. 경제, 산업, 금융, 중소기업, 공정거래, 부동산 등과 관련된 규제)
- 사회적 규제란 건강·안전·환경 및 사회적 통합과 같은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규제(ex. 보건, 의료, 복지, 식품, 안전, 환경, 고용, 교육 등과 관련된 규제)
- 행정적 규제란 정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규제(ex. 행정, 치안, 외교, 인허가, 절차 등과 관련된 규제)

1) 또한 규제는 중요도에 따라 주된 규제와 부수적 규제로도 구분됨. 부수적 규제란 주된 규제에 따라 오는 규제로서, 주된 규제 관련 절차, 자격, 처벌, 규정 등이 해당됨

<표 3> 규제의 유형

구분	내용	예시
경제적 규제	- 가격, 품질, 경쟁, 시장진입 및 퇴출 등과 같은 기업의 사장활동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규제	경제, 산업, 금융, 중소기업, 공정거래, 부동산 등
사회적 규제	- 건강·안전·환경 및 사회적 통합과 같은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규제	보건, 의료, 복지, 식품, 안전, 환경, 고용, 교육 등
행정적 규제	- 정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규제	행정, 치안, 외교, 인허가, 절차 등

❑ 규제와 정책

○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적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이를 위해 필요한 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을 지칭

○ 따라서 규제는 정책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 또는 정책유형(ex. 조세정책, 재정정책, 규제정책, 유인책, 시스템 변동 등) 중의 하나임

제2절 행정규제의 의의

☐ 행정규제 개념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행정규제 범위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은 행정규제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음[2)]

○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2) 하지만, 이 행정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적시된 사무 혹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않음. 즉,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무, 병역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됨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4개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 행정규제 판단기준

○ 앞서 정의한 행정규제의 주체·객체·내용·형식 모두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규제로 판단됨

○ 행정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

- 국가: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행정규제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경우,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법제3조 제2항)
- 행정기관이 아닌 자로서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지 아니한 자

○ 행정규제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

- 법령의 규제를 받는 자연인(내국인, 외국인)
 - 국민은 자국내 사람(내국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규제대상(피규제자)인 내·외국인을 통칭

-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에 근거해서 행하는 규제사무로 인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당하는 피규제자라면 자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법인격 유무에 관계없이 행정규제의 객체가 됨

○ 행정규제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경우,
-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행정내부규제로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원칙
- 하지만, 행정기관에 대한 의무 부여가 궁극적으로(혹은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면 이 규제의 실질적인 객체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되므로 이런 규제는 행정규제로 봄[3)]

○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국민에게 "부담 혹은 수익적 규정 제시 여부"가 기준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냐"가 기준임

○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중 그것이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 국민의 일반적인 민사, 상사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상법 혹은 개별 행정법령 내에 법적 명확성을 위해서 규정된 민법 혹은 상법과 동일한 정도의 규정은 '특정행정목적'에 해당하지 않음[4)]

3) 검사비를 피검사자가 부담토록 규정된 경우에 있어 검사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검사횟수 증가 등을 지시하는 내용의 훈령 등이 이에 속함
4)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서 민법 혹은 상법 등의 규제수준보다 강화된 요건 등을 개별 행정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는 행정규제임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중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한 사무

〔국민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시 행정규제기본법 적용제외 사무〕

- 범죄수사 등 형사관련 사무,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행형 및 보안처분 등에 관한 사무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과 직접 관련된 사항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와 직접 관련된 사항

☐ 행정규제 형식

○ 행정규제는‘법령 등’에 규정된 것임

- ‘법령 등’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등’(고시, 공고, 예규, 훈령)을 지칭

○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않은 규제

-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등록, 규제심사의 대상인 행정규제는 아니나 규제법정주의 등을 위반한 규제가 됨(법 제4조, 법 부칙 제4조)

〔 행정규제 기본 법령규정〕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제1항 제1호~제4호

1.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

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무
4. 「병역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 기본원칙

○ 규제법정주의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규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원칙임[5)]
- 법령 등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이 되지 않은 경우, 행정부관으로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할 수 없음
- 법령 등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위임된 경우나 허가 등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인·허가 등의 취지 및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부관을 붙여야 하며, 새로운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별개의 규제를 정할 수 없음

5)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법률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제내용을 정할 수 있음. 고시 등'에는 원칙적으로 규제를 규정할 수 없으며, 법령, 조례의 위임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문적, 기술적, 경미한 사항에 한해서만 정할 수 있으며, 지침, 교육자료, 지시 등에는 새로운 규제를 정할 수 없으며 해당규제의 운영·집행절차, 내용의 명확화 등에 관한 해석적 사항만 정할 수 있음

- 재량행위(허가 등)의 경우‘법령 등’에 의한 구체적인 위임이 없어도 허가의 목적과 취지 내에서의 기술적,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부관은 가능하나, 새로운 행정처분이 수반되거나 재산거래제한 등 중요사항의 경우는 부관으로 규제할 수 없음
- 기속행위(신고 등)에 대한 부관의 경우는, 신고와 관련된 권고적·계도적인 사항이나 신고행위와 관련되어 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한 행정안내 등에 한하고 새로운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6)]
- 다만, 신고의 성질에 따라 자기 완결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본래 의미의 신고)의 경우에는 그것이 관계행정기관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므로 규제인 부관 등을 붙일 수 없으나, 신고가 사실상 허가 등의 경우와 같은 기속재량행위인 경우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행정부관은 가능함

○ 규제순응의 실효성

- 규제는 일반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함. 일반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없는 규제는 법규위반자를 대량으로 양산하거나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사회적·기술적 여건, 규제집행 일선 공무원의 현실, 우리나라의 실태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규제수준의 적정성(비례의 원칙)

- 규제의 대상 및 수단은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여야 함.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전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서는 안 되며, 행정편의주의 시각에서 규제 목적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과도한 내용을 규정하여서는 안 됨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면서 “기타 타법에 관련되는 사항을 적시하고 그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후에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라는 행정안내 성격의 부관을 부과하는 것은 무방함

○ 규제의 시의성

-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만큼 현상의 문제점이 중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동 규제가 시급하게 필요하여야 하며, 규제 도입 시 기존규제의 활용가능성 또는 타 법령의 유사규제 여부를 확인하여 규제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 규제의 불가피성

- 불가피하게 미래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 도입 시에는 그 필요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행정규제 근거 법령 등의 범위 〕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3절 지방규제 의의

☐ 지방규제 개념

○ 지방규제란 앞서 정의한 행정규제 중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례·규칙에 관련된 사항을 총칭하여 말함

○ 가령, 중앙정부와 관련된 상위 법령이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조례, 규칙 등이 폐지되지 않는 경우, 상위법령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조례, 규칙 등이 부재한 경우,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조례, 규칙 등이 개정되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됨

☐ 지방규제의 중요성

○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권한 이양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힘입어 과거의 형식적인 지방자치제에서 탈피해,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독자적인 정책결정 권한과 영향력을 갖게 됨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서 제정 및 개정한 법령이 실제로 시행되는 현장이며, 지방의회에서 자치법규로 조례·규칙을 제정하기에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성격의 규제가 많음

○ 지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2008~2012년도 규제개혁 체감도조사' 결과,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의 방향으로 ① 핵심규제의 개혁 (44.8%), ②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의 정비 (18.8%), ③ 조례, 규칙 등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정비 (14.8%), ④ 규제의 신설·강화 지양 (11.4%), ⑤ 공무원의 자질 향상 (10.1%) 순으로 제시되어 규제개혁에서 지방규제의 개선의 시급함이 부각됨

○ 중앙정부의 규제개선이 커다란 진척을 보이더라도, 지방에서의 변화가 없다면 규제개선의 목표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뿐이며, 지방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부처의 편의에 맞게 규제가 제정 및 운영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비현실적 규제, 저-품질 규제, 중복규제 등의 폐해가 발생하여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이 맥락 하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의 내실화 없이는 국민의 규제개선체감도 제고는 물론, 국가적 목표 달성도 어려워지게 되기에, 실질적 규제개선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현장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음**

제4절 | 지방규제 현황[7)]

☐ 근거별

○ 근거별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과 기초 지자체 공히 규칙, 훈령, 고시·공고 등에 비해 조례가 자방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조례가 32,598로서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규칙이 4,047을 차지

7) 이 파트는 2012년 12월 말 지방규제 등록 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규제를 분석

<표 4> 근거별 규제현황

구분	계	조례	규칙	훈령	고시·공고 등
계	37,679	32,598	4,047	717	317
광역본청	3,831	3,166	508	100	57
기초	33,848	29,432	3,539	617	260

▢ 시·도별

○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경북, 충남, 강원 등의 순서로 지방규제가 많음

- 이와 더불어, 광역에 비해 기초 지자체에 지방규제가 집중되어 있음

<표 5> 시도별 규제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계	37,679	2,971	1,129	552	1,321	833	349	374	94
광역본청	3,831	414	180	197	214	315	40	115	94
기초	33.848	2,557	949	355	1,107	518	309	259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016	3,452	2,583	4,190	3,230	3,219	4,660	2,990	716
153	196	126	495	185	149	152	90	716
4,863	3,256	2,457	3,695	3,045	3,070	4,508	2,900	-

▢ 부문별

○ 부문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도시개발, 지방행정, 환경, 주택건축도로 등의 순서로 지방규제가 많음

<표 6> 부문별 규제현황

구분	계	행정일반	지방행정	지방재정	경찰교통	소방	국가보훈	교육학술	체육청소년	문화공보	재정경제	농지농정	축산	산림	수산
계	37,679	267	5,518	1,202	252	683	67	172	1,325	1,720	1,138	1,079	133	339	134
광역	3,831	55	255	78	12	207	5	36	90	330	107	239	50	23	52
기초	33,848	212	5,263	1,124	240	476	62	136	1,235	1,390	1,031	840	83	316	82

상공업	에너지	국토도시개발	주택건축도로	수자원	토지지적	건설	보건위생	의료약사	사회복지	환경	노동	운송물류	관광	해운항만	정보통신
1,989	135	9,256	3,109	557	36	122	1,155	37	2,047	4,211	102	649	197	30	18
70	27	760	288	110	7	46	137	19	235	310	25	175	59	21	3
1,919	108	8,496	2,821	447	76	76	1,018	18	1,812	3,901	77	474	138	9	15

❑ 유형별

○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3호(기준설정·금지·신고의무 등), 2호(행정질서벌 등), 1호(허가·인가·승인·확인 등), 4호(기타) 등의 순서로 지방규제가 많음

○ 4호(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 세부사항을 또한 살펴보면 1호의 경우, 허가, 지정, 승인(승락) 등의 순서로, 2호의 경우, 행정질서벌, 명령(시정), 지도(감독) 등의 순서로, 3호의 경우, 기준설정, 신고의무, 제출의무 등의 순서로 지방규제가 많음

<표 7> 유형별 규제현황

구분	계	1호(허가·인가·승인·확인 등) 6,169건(16.4%)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승락)	지정	인정(인증)	시험(심사)	검사	검정(검인)	확인	증명	추천	동의(협의)
계	37,679	2,982	139	73	3	1,000	1,251	28	95	389	22	114	23	11	39
광역	3,831	283	21	11		178	141	2	18	40	1	9	7	4	7
기초	33,848	2,699	118	62	3	822	1,110	26	77	349	21	105	16	7	32

2호(행정질서벌 등) 7,182건(19.1%)					3호(기준설정· 금지·신고의무 등) 21,094건(56%)								4호
결정 (해제)	명령 (시정)	지도 (감독)	단속 (조사)	행정 질서벌	신고 의무	보고 의무	등록 의무	고용 의무	통지 의무	제출 의무	기준 설정	금지	기타
406	752	689	194	5,141	1,477	357	262	24	132	1,074	15,560	2,208	3,234
13	76	53	22	450	161	63	28		14	154	1,521	308	246
393	676	636	172	4,691	1,316	294	234	24	118	920	14,039	1,900	2,988

▢ 사무특성별

○ 사무특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 기초 지자체 공히 자치사무에 비해 위임사무가 지방규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8> 사무특성별 규제현황

구 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총계	소계	37,679	2,971	1,129	552	1,321	833	349	374
	위임	30,501	2,564	923	393	1,088	747	277	307
	자치	7,178	407	206	159	233	86	72	67
광역	소계	3,831	414	180	197	214	315	40	115
	위임	3,034	353	87	139	171	250	27	69
	자치	797	61	93	58	43	65	13	46
기초	소계	33,848	2,557	949	355	1.107	518	309	259
	위임	27,467	2,211	836	254	917	497	250	238
	자치	6,381	346	113	101	190	21	59	21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94	5,016	3,452	2,583	4,190	3,230	3,219	4,660	2,990	716
77	4,312	2,705	1,984	3,238	2,178	2,659	4,119	2,318	612
17	704	747	599	952	1,052	560	541	672	104
94	153	196	126	495	185	149	152	90	716
77	141	150	84	422	114	123	145	70	612
17	12	46	42	73	71	26	7	20	104
-	4,863	3,256	2,457	3,695	3,045	3,070	4,508	2,900	-
-	4,171	2,555	1.900	2,816	2,064	2,536	3,974	2,248	-
-	692	701	557	879	981	534	534	652	-

☐ 연도별(2009년 – 2012년 등록규제 기준)

○ 2009년을 제외한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규제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09년 지방규제의 수가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이유는 지난 MB정부 출범 직후 누락된 규제등록, 규제를 주된 규제와 부수적 규제로 분리하여 등록하는 등 등록기준의 대대적인 변경으로 인한 것임

<표 9> 연도별 규제현황

시 도		2009		2010		2011		2012	
		6.30	12.31	6.30	12.31	6.30	12.31	6.30	12.31
계	계	29,183	30,305	29,218	25,341	25,887	28,892	31,771	37,679
	본청	2,782	3,414	3,475	3,014	2,771	2,976	3,275	3,831
	기초	26,401	26,891	25,743	22,327	23,116	25,916	28,496	33,848

제5절 | 지방규제의 문제점

☐ 추진체제의 문제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담당 인력부족 및 전문성 미흡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규제개선 전담체계의 미비로 담당자 한 명이 규제관련 업무를 전담하거나 다른 업무와 전께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규제개선 업무의 추진이 사실상 곤란함
-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규제업무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인식하여 규제부서 배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잦은 보직 교체로 담당 인력이 규제개혁에 대한 전문성을 갖기 어려움

-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안건 검토 등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쳐 규제심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규제업무 담당 조직의 분산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정보 공유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하는 비효율성이 존재함
- 최근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 파주시 인허가 부서 통합운영(즉, 여러 부서에 얽혀 있는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매일 아침 실무종합심의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실무자에게 처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한 사례)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음

○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등 규제심사기구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
- 16개 광역지자체(세종시 제외)에 대한 점검 결과, 대부분의 광역지자체(14/16개)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고 있어 형식적인 요건은 대체로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평균 3.2회로 나타나 회의 운영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도 자치법규 심사 위주에만 국한되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규제개선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

○ 행정규제 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결여

- 속성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은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어 있으나, 아직도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를 뒷받

침할만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민원처리시스템이나 행정규제 관련 홈페이지 등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음

-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이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홍보하고 있는 안산시의 24시간 민원센터의 경우를 보면, 정규 근무시간 내에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국가산업단지 근무 근로자 및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17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홈페이지 점검 결과, 모든 지자체가 홈페이지 상에 행정규제개혁코너를 개설하여 규제등록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하고 있으나, 정기적 자료 업데이트 등 세부적인 관리·운용실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아울러 규제개혁코너를 몇 단계에 걸쳐야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주민들이 쉽게 검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규제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

○ 지방자치단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의 유형은 명확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된 규제들임. 이는 규제집행상의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규제에 대한 불신감과 낮은 정책순응을 초래함

○ 이 규제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문제 발생뿐만 아니라, 중앙의 해당부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빈번한 유권해석 의뢰, 그리고 해당 부처의 불명확한 해석 등 질의와 회신상의 문제와 이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규제 정비 시 발생하는 문제

○ 상위법상 휴·폐지된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문제

- 예컨대, 석유사업법 제10조에서 규정한 휴·폐지 신고사항이 폐지된 이

후에도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을 처리하면서 휴·폐지 신고의무를 준수토록 통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 또한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정기간행물의 휴·폐간 신고제가 폐지되었으나 종전과 같이 신고서 접수 처리가 지속됨

○ 법령 미근거 규제의 지속적 적용의 근절 어려움

-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사료성분등록 신청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에 근거없이 사료수입 및 판매실적을 매월 5일까지 보고토록 하는 가운데, 보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등의 규정을 통보
- 건축사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규정에 없는 사무실평면도, 배치도, 기자재·비품보유증명서등을 징구하여 처리한 사례 등

○ 규제등록 문제

- 자치단체의 규제등록 문제점의 원인은 자치단체 실무 담당자들에게 있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규제등록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있다고 판단됨
- 현재 규제등록방식은 규제개혁위원회가 2000년에 작성한 행정규제 판단 및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이들 중 규제라고 판단되는 규정들을 등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규제등록을 위해서는 자치법규의 특정 조항이 규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하지만, 규제등록을 위해 행정규제 판단 및 분류기준을 적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처럼, 현재의 규제 판단기준에 근거해서 조례나 규칙의 특정조항이 규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님
- 즉, 규제개혁위원회가 작성한 행정규제 판단 및 분류기준은 그 대부분의 내용이 법령의 규정 중 규제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행정규제로 분류

해서는 안 되는 예외적인 규정들을 선별해 내는 기준에 대한 것들임

- 이 규제판단 기준은 부분적인 원칙이나 기준은 수립되어 있으나 전체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원칙이나 기준은 수립되어 있지 못함
- 또한 그 기준이 추상적이거나 지엽적인 내용도 많음. 자치단체 실무자들이 이 기준에 의거해 특정 자치법규의 규제 판단 여부를 내리기에는 문제점이 많음
- 실제 자치단체 실무자들 간에도 유사한 조항에 대해서 상이한 규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경우가 허다함
- 자치단체 규제등록상의 문제점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규제등록의 목적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함. 규제를 등록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법규정 중 규제(조항)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 법규정을 일반 법규정과 달리 규제(조항)라는 명칭을 붙여 등록하는 것임
- 즉, 규제등록의 목적은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규제를 관리한다는 표현은 규제를 강화, 완화, 폐지 등의 규제정비를 목적으로 함. 따라서 규제를 등록하는 목적은 특정 규제(조항)를 강화, 완화, 폐지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정비의 여지가 없는 법규정은 비록 규제적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규제로 등록할 필요가 없음

○ 규제 내용의 문제

- 규제의 폐지를 두 가지 의미로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음. 하나는 현행 자치법규의 특정 조항을 삭제한다는 의미와, 규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규제등록에서 제외시킨다는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존치란 용어의 의미는 규제로서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와 규제 등록은 불필요하지만 법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현행 규제등록상의 문제는 자치법규의 특정 조항을 규제로 등록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조항이 규제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데에서 기인함. 규제를 등록하는 근본 목적이 이를 정비하는데 있다면, 향후 규제등록은 특정 조항의 규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항의 규제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함

○ 공무원의 행태 및 의식의 근본적 문제

-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사항의 하나는 늑장행정으로 인한 민원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과다 요구, 관련 법령의 잘못된 해석 등의 불합리한 관행 및 행태가 일선 행정기관에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은 곧 바로 국가 전체 규제개혁 체감도와도 직결되고 있음

제6절 해외규제와 시사점

☐ 해외 규제개선 프로그램

○ 대부분 해외국가 규제개선은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종합적인 규제품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범정부적(whole-of-government)으로 추진 중임

- 특히, 행정규제 간소화를 위해서 신설규제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부담을 초래하는 기존 규제를 개혁하는 두 가지 접근방식을 동시에 활용

○ 행정부담 감축방안

- 신설규제의 경우, 규제영향평가(RIA: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과정에서 해당 규제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며 불필요한 부담

을 초래하지 않는지를 분석·검증하고 규제가 시행된 후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함[8)]

- 게다가, 최근에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부담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감노력을 추진하는 방안이 부각되고 있음 이 측정은 주로 기업에 대한 부담이 대상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시민에 대한 부담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임
- 측정방법은 각 국가마다 다르나, 최근의 발전된 측정모델은 매우 상세한 측정을 가능케 하고 있음. 아래는 이러한 표준비용모델에 대한 설명임

〔 표준비용모델 〕

– 이 모델은 규제를 측정 가능한 3개 구성요소로 분리
① 정보의무(Information obligation): 정보의무란 공공기관이나 제3자에게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의무를 말함(고용조건과 같은 보고서)
② 자료 요구사항(data requirements) : 자료 요구사항은 정보의무를 따르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각 요소임(기업체명, 세금액)
③ 행정활동(administrative activities): 행정활동은 각 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임. 내부활동일 수도 있고 위탁(outsourcing)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설명, 계산, 정보 보관)

– 이후 다음의 기본적 비용에 관한 매개변수에 기초해 각 구성요소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산함
① 가격: 가격은 세금, 급료 및 내부 행정활동과 관련된 간접비용 또는 외부서비스를 위한 시간당 비용(hourly cost)으로 구성됨
② 시간: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소모된 시간의 양
③ 수량: 영향을 받는 기업체의 인구 규모와 매년 그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빈도로 구성됨

– 이런 요소를 합치면 다음의 공식이 도출
– 즉, 행정활동 당 비용 + 가격 × 시간 × 수량 :
Cost per administrative activity = Price × Time × Quantity

8) 또한 영·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음

○ 행정규제 간소화 방안

- 통합 전자 민원실(Electronic one-stop shops: web portals)
 - 기존의 물리적 장소를 합친 통합민원실(one-stop shops) 외에, 온라인을 통해 정보자료를 얻고 민원을 처리하는 통합 전자민원실 서비스
 - 캐나다 BizPal: 중앙·지방 정부 인·허가 관련 정보·자료 통합제공 제공
 - 덴마크 Virk: 경제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정보·자료와 서비스 외에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관련 정보 및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 경제산업부, 노동부, 환경·지방부 등의 정부부처와 민간협력 사업으로 구축, 운영됨
 - 정보제공과 자료의 전달·저장·공유와 같은 행정규제의 주요 프로세스의 경우, 정보통신기술활용을 통해 효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음
- 인·허가 등 업무처리 간소화(Process re-engineering)
 - 인·허가를 신고로 바꾸거나, 신고서류 간소화, 인허가 업무 처리기간 명시 또는 일정처리기간 경과 시까지 처리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Silence is Consent"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없애고 창업을 위한 시간과 비용 및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전개
- 규제 적용대상의 합리화
 - 규제적용대상 기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규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추고 제한된 규제집행 역량을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 추진
 - 영국, 캐나다, 덴마크 등에서는 규제적용을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에 따르게 하여 낮은 위험을 갖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또는 검사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 영국의 Hampton 법안의 경우, 규제자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자료의 요구, 검사방법의 적용, 벌칙의 적용 수준 등을 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기업의 규제준수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함

• 덴마크의 경우, 적용대상을 보다 분명히 하고 집행의 부담을 줄인 환경감독 제도를 도입. 감독기관은 환경관련 노력에 따라 기업을 3개 군으로 나누고 위험도가 큰 기업에 대한 감독에 초점

- 허가안내 제도(Permit pilot(Genehmigungslotse)): Schleswig-Holstein, 독일

• 독일 Schleswig-Holstein의 산업협회(Industrial Association), 농림부, 환경부에서 각각 허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하나의 접촉 장소를 통해 질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이것은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과 비즈니스에만 초점을 맞추어 제공함

- 필요한 허가의 간소화

• 네덜란드 환경부(VROM)는 필요한 허가들을 하나의 구조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음

• 이것은 약 25개의 다른 형식의 허가를 하나로 줄여줄 수 있음

• 예컨대, 화학 공장, 석유 정화, 화석연료 발전소 등

☐ 시사점

○ 중앙정부의 정책수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이라는 행정메커니즘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그에 따른 접근방식이나 전략도 달라져야 할 것임

○ 중앙정부는 수립된 정책이 지방의 현장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자문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규제개선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며, 정책집행상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제3장
자치단체의 인허가 관련 규제

제1절 인허가의 개념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인허가 규제 현황

제 3 장 자치단체의 인허가 관련 규제

제1절 인허가의 개념

○ 인허가는 행정규제의 유형 중의 하나임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을 기준으로 행정규제 사무를 인·허가, 지도·단속 등 유형별로 분류

○ 행정규제는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인 인·허가,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동(면제, 말소 등의 결정),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기관 및 국민의 의무,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이 존재함

○ 이 중에서 인허가는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해당 인허가 처리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표 10> 행정처분의 종류

유 형	세 부 유 형
○ 1호 (인허가)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승락), 지정, 인정(인증, 공인), 시험(심사), 검사, 검정(검인), 확인, 증명, 추천, 동의(협의) 등
○ 2호 (관리감독)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결정(공제, 해제, 해지, 말소 등), 명령(시정, 개선조치 등),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 검열, 검색, 진단), 등록말소, 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 3호 (의무조항)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특정 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기준고시, 공시, 공고 등), 금지(부작위) 등
○ 4호 (징수)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기타 (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인허가 규제 현황

1. 주요 법률

○ 인허가는 국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당 국민의 권리와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허가 규제의 도입과 적용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

○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주요 인허가 규제사항은 주로 국토부와 관련이 많음

- 기업의 개별 입지와 관련된 「건축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이 존재

-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성되며 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이 있음

<표 11> 기업·상공인 관련 주요 법률 및 위원회

근거법령 (소관부처)	의무적 설치 대상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관할 위원회
	시·도(16개)	시·군·구 (228개)	
2012년 기준	9종(144개)	4종(912개)	10종(1056개)
건축법 (국토부)	○	○	건축위원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국토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국토부)	○	○	도시계획위원회
주택법 (국토부)		○	분양가심사위원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안전행정부)	○	○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문화관광부)	○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 특례법 (국토부)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물류시설의개발 및운영에관한법률 (국토부)	○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전통시장및상점가 육성을위한특별법 (중기청)	○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국토부)	○		물류정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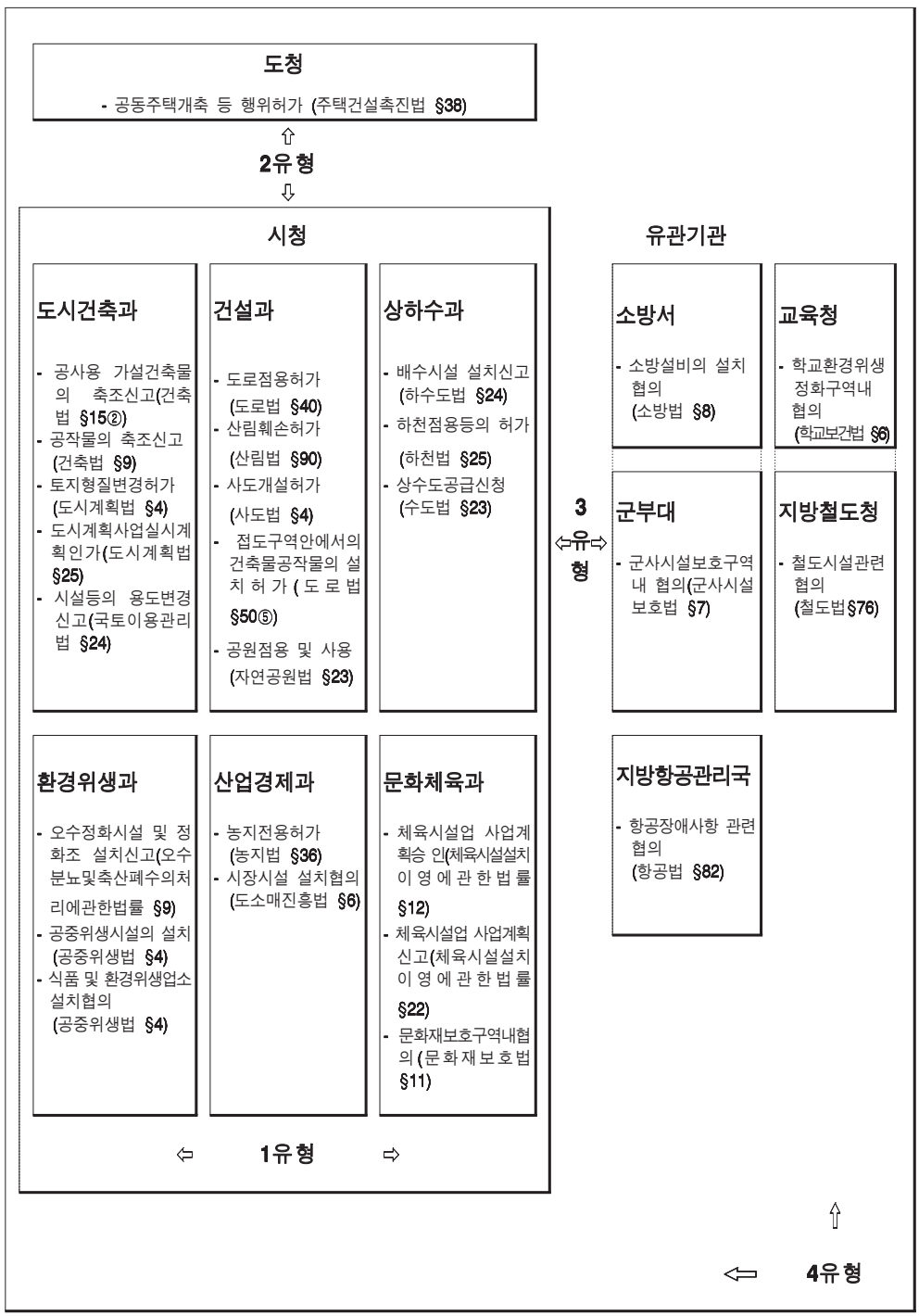
2.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업무 유형

○ 종래 처리주체에 의한 유형분류, 처리목적에 의한 유형분류 등을 시도하여 왔음

○ 그러나 유형간 차별화 부족, 모호성 등으로 인하여 현재 처리절차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부서)의 수준에 따른 유형화가 일반적임

- 제1유형 : 동일기관 내 부서 간에 관련된 인허가 규제업무
- 제2유형 : 감독관계에 있는 상·하기관 간 관련된 인허가 규제업무
- 제3유형 : 타 행정기관(단체·협회등 포함) 상호 간 관련된 인허가 규제업무
- 제4유형 : 기관내부 상·하기관 타 행정기관 간에 혼합적으로 관련된 인허가 규제업무

<표 12>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규제의 유형(예: K시 건축규제)



3. 주요 인허가 규제

○ 인허가 규제의 유형을 개별 항목별로 보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 내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음

○ 지자체의 주요한 규제내용으로는 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 토지점용허가, 식품위생허가, 자동차등록 등을 들 수 있음

<표 13> 인허가 관련규제

주민원 (주무부서)	관련 규제 (관련부서·기관)
전통사찰경내 공원점용등 허가(문화체육과)	- 공원지역점용 및 사용허가(건설과) - 도시공원점용허가(건설과) -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허가(도시건축과) - 보전임지 전용허가(건설과)
공연장설치허가(문화체육과)	- 건축허가(도시건축과)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시건축과)
옥외광고물표시·설치허가 (건설과 경관기획)	- 도로점용허가(건설과 건설행정)
토지분할신청(민원봉사과)	- 도시계획구역내 토지분할허가(도시건축과)
식품영업허가신청(환경위생과)	-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산업경제과)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해제신청(교육청)
식품영업 허가사항변경(환경위생과)	-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산업경제과)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해제신청(교육청)
묘지설치허가(사회복지과)	- 80㎡이하 산림훼손허가(건설과) - 토지형질변경허가(도시건축과)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환경위생과)	- 농지전용허가(산업경제과) - 초지전용허가(산업과) - 산림형질변경허가(건설과)
유료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사회복지과)	- 건축허가(도시건축과) - 농지전용허가(산업경제과) - 산림형질변경허가(건설과) - 배수설비설치신고(상하수과) - 도로점용허가(건설과)
의례식장 등 영업신고(사회복지과)	- 건축허가(도시건축과)
창고업등록신청(산업경제과)	- 농지전용허가(산업경제과) - 폐수시설설치허가(환경위생과) - 건축허가(도시건축과)
석유판매업허가(산업경제과)	- 배출시설설치허가(환경위생과) - 위험물제조시설 설치허가(소방서) - 농지전용허가(산업경제과) - 토지형질변경허가(도시건축과) - 건축허가(도시건축과)
석유판매업신고(산업경제과)	-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소방서)
액화석유가스충전업허가(산업경제과)	- 건축허가(도시건축과) - 기술검토의뢰(한국가스안정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판매허가 (재난관리과)	- 건축허가(도시건축과) - 통보(소방서) - 기술검토의뢰(한국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 저장·판매허가(재난관리과)	- 건축허가(도시건축과) - 통보(소방서) - 기슬검토회의(한국가스안전공사)
임목벌채허가(건설과)	- 토지형질변경허가(도시건축과)
산림형질변경허가(건설과)	- 토지형질변경허가(도시건축과)
자동차등록(민원봉사과)	- 등록세납부(세무과) - 각종채권매입(시금고) - 자동차책임보험(보험회사)

주민원 (주무부서)	관련 규제 (관련부서·기관)
사도개설허가(건설과)	- 토지형질변경허가(도시건축과) - 농지전용허가(산업경제과)
토지형질변경허가(도시건축과)	- 임목벌채허가(건설과) - 사방지지정해제(건설과) - 농지전용허가(산업경제과)
물건적지허가(도시건축과)	- 농지전용허가(산업경제과)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산업경제과)
건축허가(도시건축과)	- 공사용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도시건축과) - 공작물의 축조신고(도시건축과) - 도로점용허가(건설과) - 배수시설 설치신고(상하수과) -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설치신고(환경위생과) - 토지형질변경허가(도시건축과)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도시건축과) - 산림훼손허가(건설과) - 사도개설허가(건설과) - 농지전용허가(산업경제과) - 접도구역내 건축물,공작물 설치허가(건설과) - 하천점용등의 허가(상하수과) - 시설등의 용도변경신고(도시건축과) - 상수도공급신청(상하수과) - 소방설비공사의 신고(소방서) - 공동주택개축등 행위허가(도청) - 공원점용 및 사용(건설과) - 소방설비 설치협의(소방서)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문화체육과)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신고(문화체육과) - 공중위생시설의 설치(환경위생과) - 식품 및 환경위생업소 설치협의(환경위생과) - 시장시설 설치협의(산업경제과)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협의(교육청) - 문화재보호구역내 협의(문화체육과) - 군사시설보호구약내 협의(군부대) - 철도시설관련협의(지방철도청) - 항공장애사항 관련협의(지방항공관리국)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도시건축과)	- 오수정화시설/정화조준공검사(환경위생과)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준공검사(전화국) - 지적공부변동사항 등록신청(민원봉사과) - 배수설비의 설치(상하수과) - 소방설비공사 준공검사(소방서)
증축등 심고서 및 신고필증(도시건축과)	- 공사용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시건축과) - 공작물의 축조신고(도시건축과) - 배수시설의 설치신고(상하수과) -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설치신고(환경위생과)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도시건축과)	- 정화조설치신고(환경위생과) - 학교환경정화구역내 금지(교육청) - 위험물취급시설 변경신청(소방서)
도로변(시·군도)휴게소설치허가 (환경위생과)	- 농지전용허가(산업경제과) - 산림훼손허가(건설과) - 건축허가(도시건축과) - 도로점용허가(건설과) - 초지점용허가(산업경제과) - 석유판매업허가(산업경제과) - 식품영업허가(환경위생과) - 사도개설허가(건설과)

주민원 (주무부서)	관련 규제 (관련부서·기관)
하천부속물 점용허가 (상하수과 상하수행정)	- 토지점용허가(상하수과 상하수행정)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기타 토지형상변경 허가(상하수과 상하수행정)
유수의 점용허가 (상하수과 상하수행정)	- 토지의 점용허가(상하수과 상하수행정) - 하천부속물 점용허가(상하수과 상하수행정) -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제거허가(상하수과 하수시설)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기타 토지형상변경허가 (상하수과 상하수행정) - 하천의 현저한 오손 또는 위생상 유해한 행위허가(상하수과 상하수행정)
토지의 점용허가(상하수과)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기타 토지형상변경 허가 (상하수과 상하수행정) - 식물의 재식허가(상하수과 상하수행정)
지하수채취 및 주수허가(상하수과)	- 수질오염여부심사(환경위생과) - 상수도수원지 수질오염여부심사(상하수과)
의료기관개설허가(보건소)	- 건축물 용도확인 및 심의(도시건축과)
의약품도매상허가(보건소)	- 고압가스판매업허가(산업경제과)
주민등록전입신고(동)	- 향토예비군 거주지이동신고(동) - 민방위대 거주지이동신고(동) - 생활보호대상자 거주지이동신고(동) - 장애인 거주지이동신고(동) - 학력아동 전출입신고(동) - 병역의무자 거주지이동신고(동) - 인감대상자 거주지이동신고(동) - 국가유공자 거주지변경신고 - 인력동원대상자 거주지변경신고 - 자동차 주소지변경신고(동) - 지역의료보험 탈퇴, 가입신고(동) - 이륜차소유자 주소지변경신고(동) - 주거용상하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신고(동) - 일주택 수가구 거주수용 요금적용신청(한전)

4. 인허가 규제업무의 처리과정과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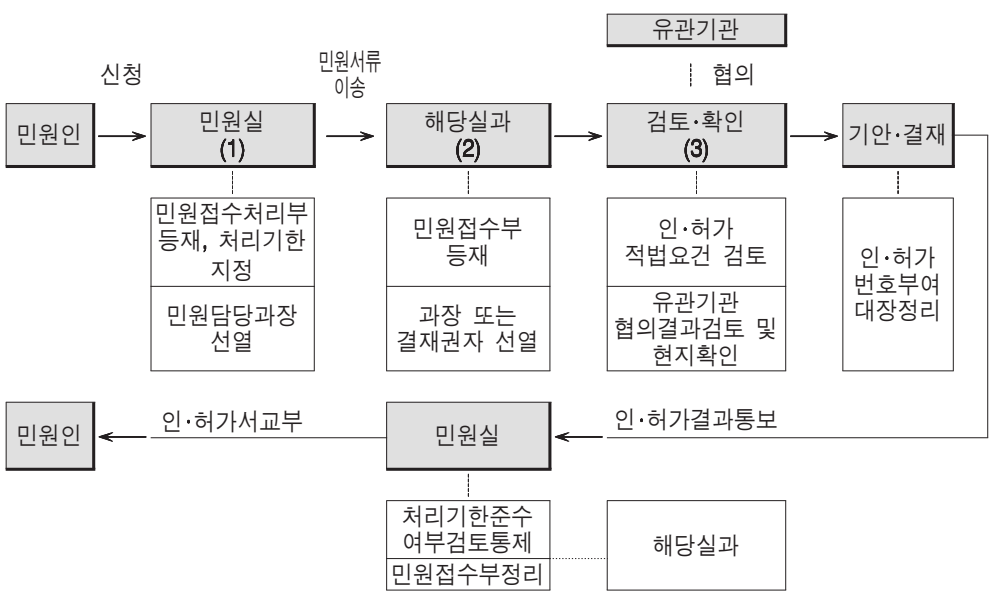
☐ 인허가 규제업무의 처리절차

○ 인허가 규제업무에 대한 처리절차는 각각의 개별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처리과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됨

① 제1유형

- 인허가 규제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고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
- 처리과정은 첫째, 민원인이 인허가 업무를 민원실에 접수하게 되면 민원실에서는 이를 민원접수 처리부에 등재하고 주무 처리부서를 지정함
- 둘째, 주무처리하는 해당 실과는 유관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인·허가의 규제업무와 관련한 적법성을 검토함
- 셋째, 주무처리부서는 인·허가 결과를 민원실로 통보하고, 민원실은 이 사항을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함

<그림 1> 인허가 규제업무의 일반적 처리절차(제1, 2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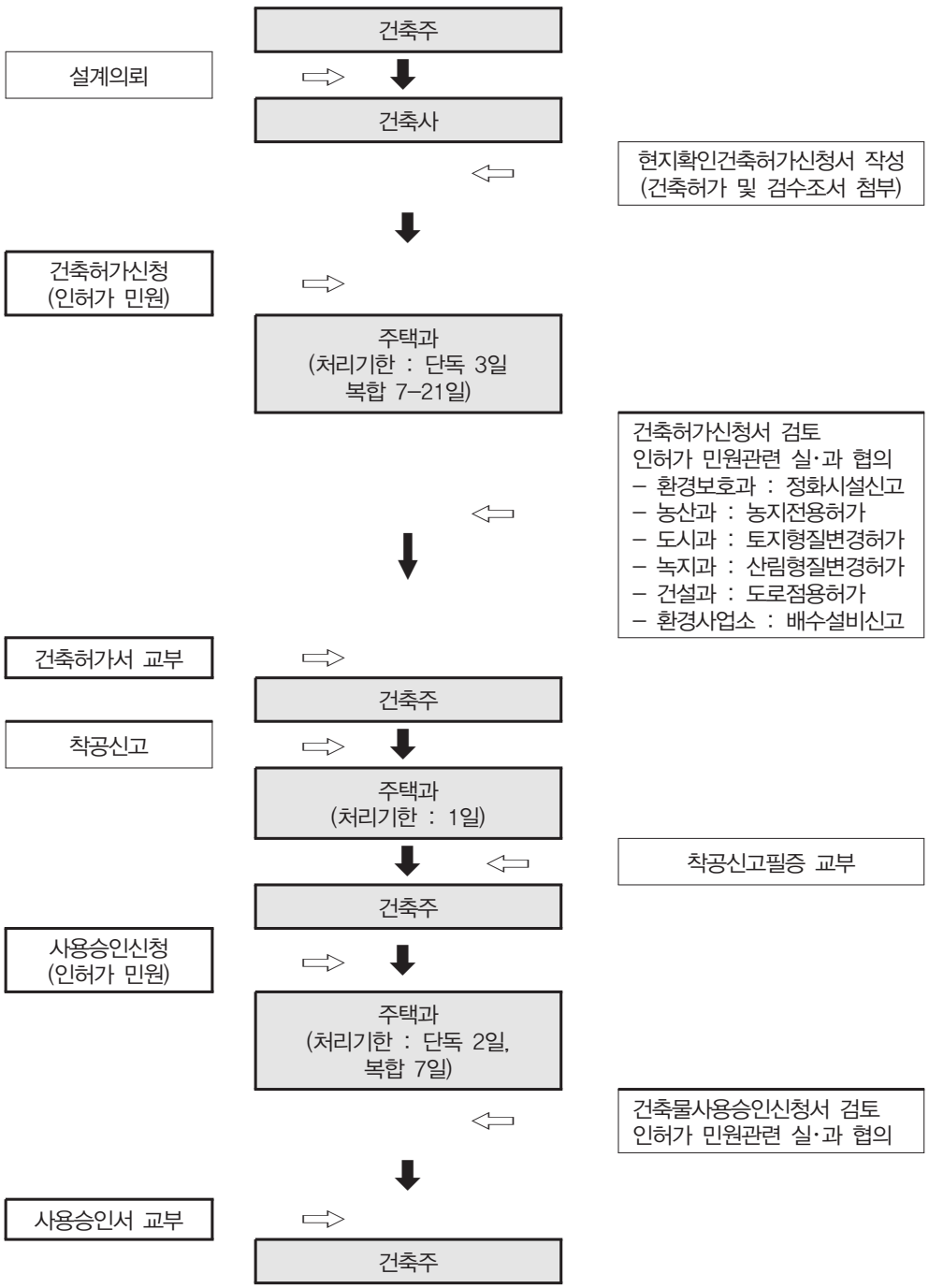
② 제2유형

- 인허가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인허가 규제업무의 접수, 적법요건의 검토, 관련부서 간 협의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방법임. 위 <그림>에서 (1), (2), (3)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제2유형임

③ 인허가 규제업무의 전체 처리과정

- 전반적인 처리과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간단히 민원의 접수, (규제 검토 등) 유관기관협의, 민원인에 대한 통지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음
- 민원의 접수와 관련해서는 민원인의 인허가 규제업무 접수, 주무부서 선정 등
- 유관기관협의는 인·허가의 적법성(규제내용)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관계부서 내지 기관과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여기서는 다시 내부부서와의 협의과정과 외부기관과의 협의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통지는 검토된 규제사항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단계로 처리기한의 문제, 전달방법상의 문제 등을 포함함
- 이외 기타사항에서는 인허가 규제의 처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문제, 사기제고방안, 업무량조정문제, 전산화 미비 등을 다룸

<그림 2> 사례: 축허가 및 사용승인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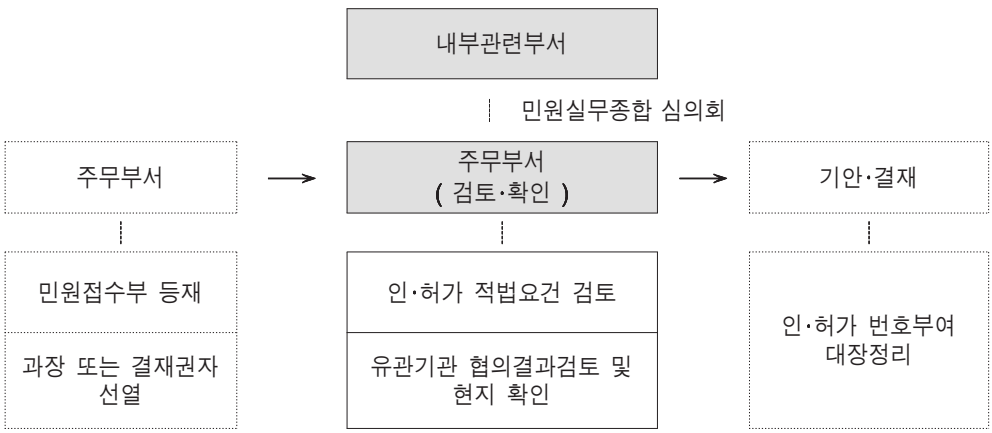


☐ 인허가 규제업무의 협의체계

○ 접수단계를 거쳐 주무부서로 보내진 인허가 규제민원업무는 관여하는 기관(또는 부서)에 따라 상이한 협의절차를 거치게 됨

○ 내부부서간 협의만으로 끝나는 인허가 규제민원의 경우 주무부서가 관련 부서에 협조문을 보내고 내부부서간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민원을 검토·확인하게 됨

<그림 3> 내부관련부서 협의체계



5. 문제점

○ 내부 부서간 협의는 외부 기관간 협의과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처리과정이 무난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간 부서이기주의 및 협의시간의 부족, 책임회피성 접근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인허가 민원 처리과정의 지연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인허가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서비스 헌장 등을 통하여 경쟁적으로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공고하고 있는 사례가 많음

- 민원처리기한의 단축은 업무절차의 효율화를 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여겨짐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과 유리된 처리기한 의무화로 인하여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무리한 처리 기한 의무 도입의 경우 책임회피가 많이 발생
- 인허가 민원에 대한 협의·검토과정의 부실화는 물론, 결과에 대한 책임회피를 증가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상당수 인허가 민원의 경우 현지실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인허가 처리의 지연요인으로 작동
- 예를 들어 건축허가에서 관련 민원인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 배수설비 등은 현장확인 후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이 경우 민원인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민원담당공무원 당사자들에게도 업무량 과부하에 따른 피로누적 및 사기저하, 민원부서 기피 등 내부조직관리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키게 됨

제4장
지방규제 설문조사 분석

제1절 분석의 개요
제2절 기업체 분석
제3절 공무원 대상 분석
제4절 기업인, 공무원 비교 분석

제 4 장 지방규제 설문조사 분석

제1절 분석의 개요

☐ 목적 및 내용

○ 기업체와 지방 공무원의 기업활동에 대한 지방규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규제의 원인과 내용, 특성 등을 분석하기 위함

- 지방규제에 대한 기업과 공무원이 체감적, 실무적으로 느끼는 인식의 정도와 내용에 대한 데이터 확보
 내용은 기업체와 공무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영향 및 정도, 규제원인의 소재, 개선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대상 및 방법

○ 설문조사의 대상은 전국의 기업체와 지자체 공무원이 대상

- 기업체는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하는 기업체가 대상
- 공무원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를 대상

구분	기업체 (개)	공무원 (명)
설문대상	297	283

○ 설문조사 방법은 기업의 경우와 공무원의 경우가 달랐음
- 기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서브를 통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 공무원의 경우, 안행부 지역경제과 규제개혁팀에서 행정계통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음

제2절 기업체 분석

☐ 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규제 정도

○ 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규제정도에 대해 기업인은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고 느끼는 기업인이 과반이 넘는 59.2%에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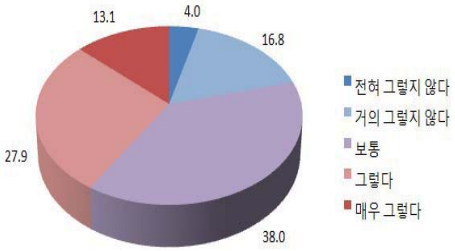
○ 지자체의 기업활동 규제수준이 기업활동을 저해할 정도인지에 대하여는 40.0%가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고 응답해 기업인이 느끼는 지자체의 규제 수준은 높게 나타남

<표 14> 기업에 대한 지자체 규제정도(기업인)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업활동에 대해서 지자체의 규제가 영향을 미친다	빈도	6	34	81	115	61
	%	2.0	11.4	27.3	38.7	20.5
지자체의 규제수준이 기업활동을 저해할 정도로 높다	빈도	12	50	113	83	39
	%	4.0	16.8	38.0	27.9	13.1



<지자체의 규제 영향>



<규제의 기업활동 저해 수준>

❑ 규제 원인의 소재

○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원인의 소재에 대하여 기업인은 1순위로 중앙정부 제정법령(55.2%)으로 응답하여 반수가 넘는 기업인이 중앙정부에 규제 소재가 있다고 판단함

○ 또한, 지자체 공무원의 행태가 1순위에서 30.6%를 차지하여 지자체의 조례 및 법규(14.1%)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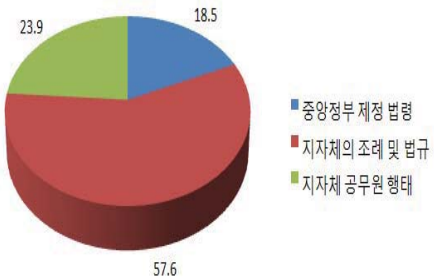
○ 2순위에서는 지자체의 조례 및 법규(57.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순위에서는 지자체 공무원 행태(45.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15>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원인(기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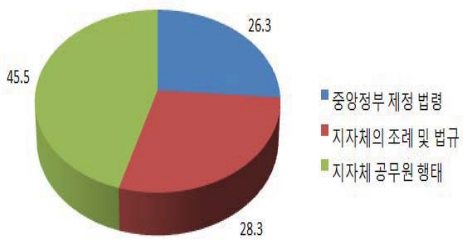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중앙정부 제정 법령	164	55.2	55	18.5	78	26.3
지자체의 조례 및 법규	42	14.1	171	57.6	84	28.3
지자체 공무원 행태	91	30.6	71	23.9	135	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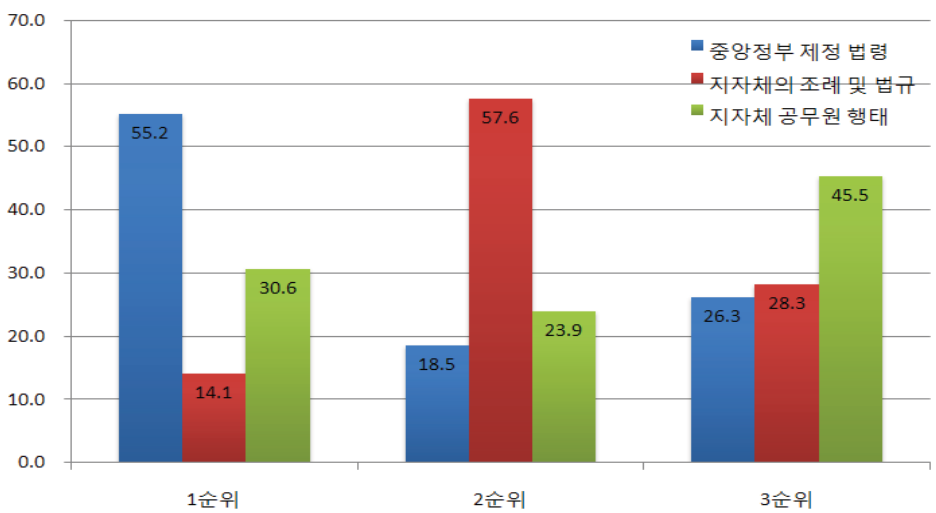
<1순위 규제원인>



<2순위 규제원인>



<3순위 규제원인>



<순위별 규제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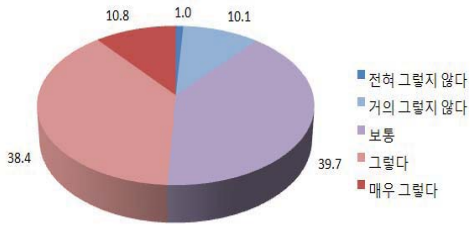
❑ 규제 원인별 규제 정도

○ 기업인은 중앙정부의 규제와 법령(49.2%), 지자체의 규제와 조례(48.5%), 담당 공무원의 행태(52.6%)가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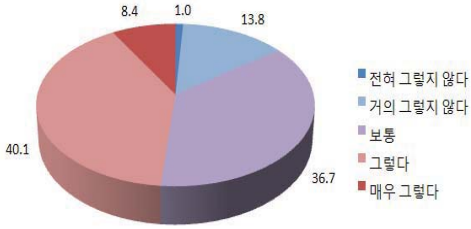
○ 특히, 공무원의 행태가 기업활동을 저해한다는 기업인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18.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표 16>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정도(기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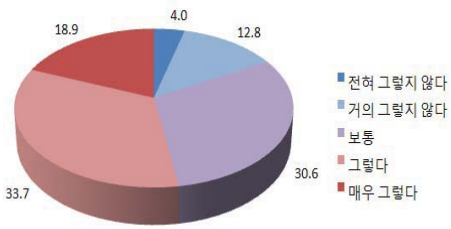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앙정부가 제정한 기업활동 규제와 관련된 법령이 기업활동을 저해한다	빈도	3	30	118	114	32
	%	1.0	10.1	39.7	38.4	10.8
지자체의 기업활동 규제와 관련된 조례가 기업활동을 저해한다	빈도	3	41	109	119	25
	%	1.0	13.8	36.7	40.1	8.4
지자체의 기업활동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행태가 기업활동을 저해한다	빈도	12	38	91	100	56
	%	4.0	12.8	30.6	33.7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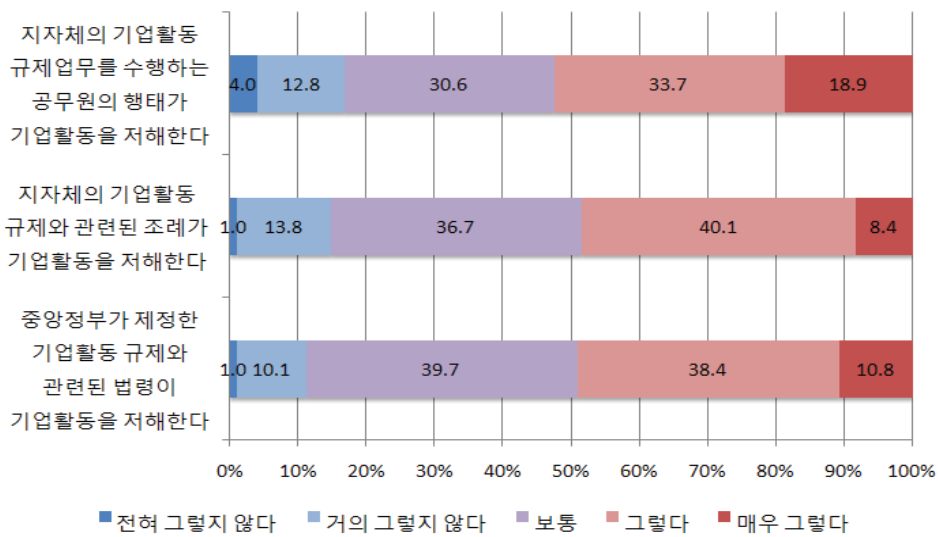
<법령에 의한 기업활동 저해>



<조례에 의한 기업활동 저해>



<공무원 행태에 의한 기업활동 저해>



<원인별 기업활동 저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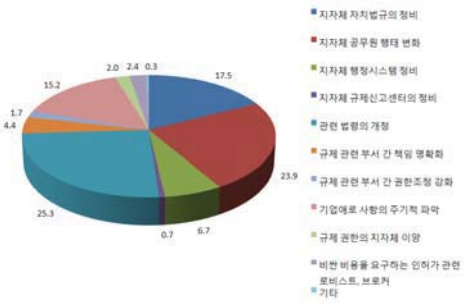
❑ 규제 개선의 순위

○ 규제 개혁을 위한 개선 과제로 기업인은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25.3%)을 1순위 과제로 응답하였으며, 지자체 행정시스템 정비(23.9%), 지자체 자치법규의 정비(17.5%),규제 관련 부서 간 책임 명확화(15.2%) 등이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로 선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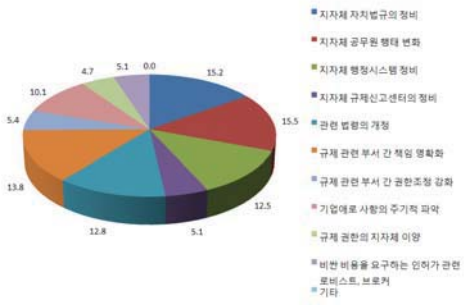
○ 전체 응답수에서는 지자체 행정시스템 정비(18.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해결해야 할 개선과제로 나타났으며,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15.4%), 지자체 자치법규의 정비(14.7%)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규제 개혁을 위한 개선 과제로 판단하고 있음

<표 17> 규제 개선 과제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지자체 자치법규의 정비	52	17.5	45	15.2	34	11.5	131	14.7
지자체 행정시스템 정비	71	23.9	46	15.5	45	15.2	162	18.2
관련 법령의 개정	20	6.7	37	12.5	48	16.2	105	11.8
규제 관련 부서 간 권한조정 강화	2	0.7	15	5.1	15	5.1	32	3.6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	75	25.3	38	12.8	24	8.1	137	15.4
지자체 공무원 행태 변화	13	4.4	41	13.8	33	11.1	87	9.8
지자체 규제신고센터 정비	5	1.7	16	5.4	17	5.7	38	4.3
규제 관련 부서 간 책임 명확화	45	15.2	30	10.1	52	17.5	127	14.3
기업애로 사항의 주기적 파악	6	2.0	14	4.7	11	3.7	31	3.5
비싼 비용 요구 인허가 관련 로비스트, 브로커	7	2.4	15	5.1	16	5.4	38	4.3
기타	1	0.3	0	0.0	2	0.7	3	0.3
계	297	100	297	100	297	100	89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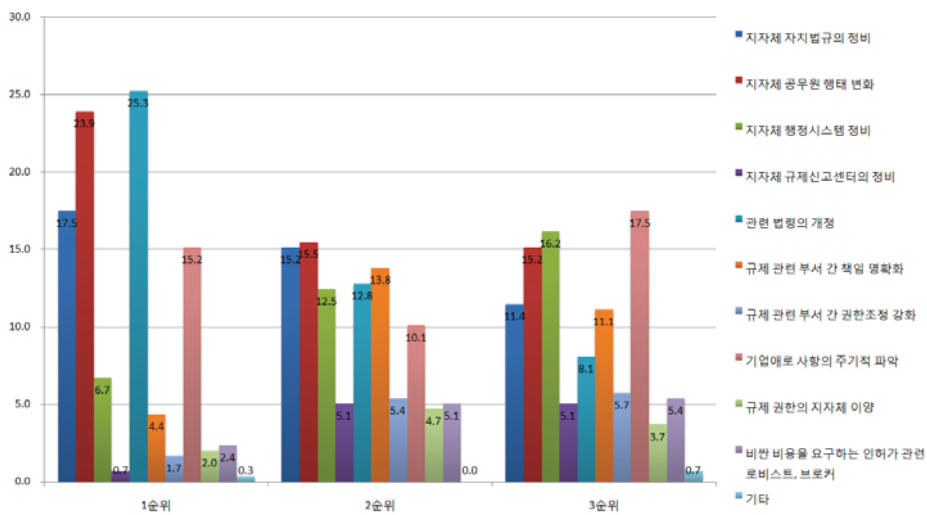
<1순위 규제 개선 과제>



<2순위 규제 개선 과제>



<3순위 규재 개선 과제>



<순위별 규제 개선 과제>

제3절 공무원 대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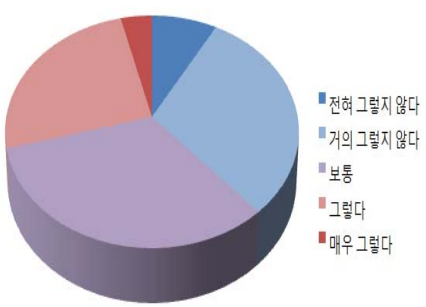
☐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유무 및 정도

○ 기업활동에 대한 지자체의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은 전혀 그렇지 않다와 거의 그렇지 않다가 38.5%,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29.3%로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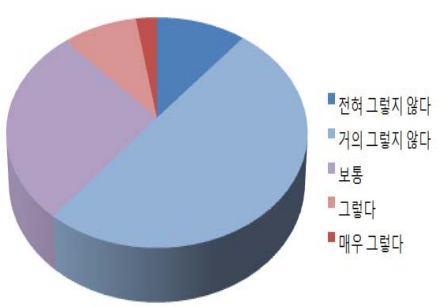
○ 기업활동을 저해할 정도로 규제가 심한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거의 그렇지 않다가 60.7%로 과반이 넘게 나타나 공무원은 규제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표 18> 기업에 대한 지자체 규제정도(공무원)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업활동에 대해서 지자체의 규제가 영향을 미친다	빈도	23	86	91	72	11
	%	8.1	30.4	32.2	25.4	3.9
지자체의 기업활동 규제수준이 기업활동을 저해할 정도로 높다	빈도	30	137	76	25	7
	%	10.9	49.8	27.6	9.1	2.5



<지자체의 규제 영향>



<규제의 기업활동 저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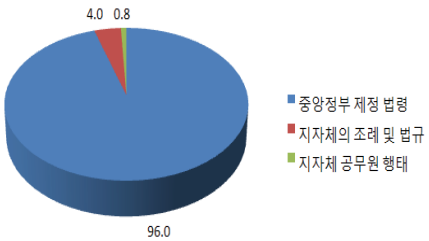
❑ 규제원인의 소재

○ 기업활동 규제원인의 소재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96.0%가 중앙정부의 제정 법령에서 기인한다고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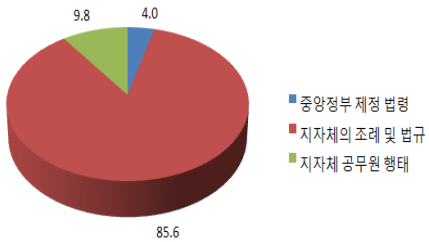
○ 2순위로는 지자체의 조례 및 법규가 85.6%를 차지하였으며, 3순위로는 지자체 공무원 행태가 89.4%를 차지하여 공무원이 생각하는 규제 원인의 순위가 명확하게 나타남

<표 19>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원인(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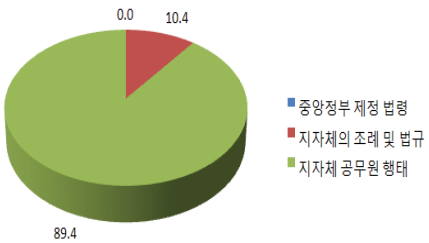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중앙정부 제정 법령	267	96.0	11	4.0	0	0.0
지자체의 조례 및 법규	10	4.0	214	85.6	26	10.4
지자체 공무원 행태	2	0.8	24	9.8	219	8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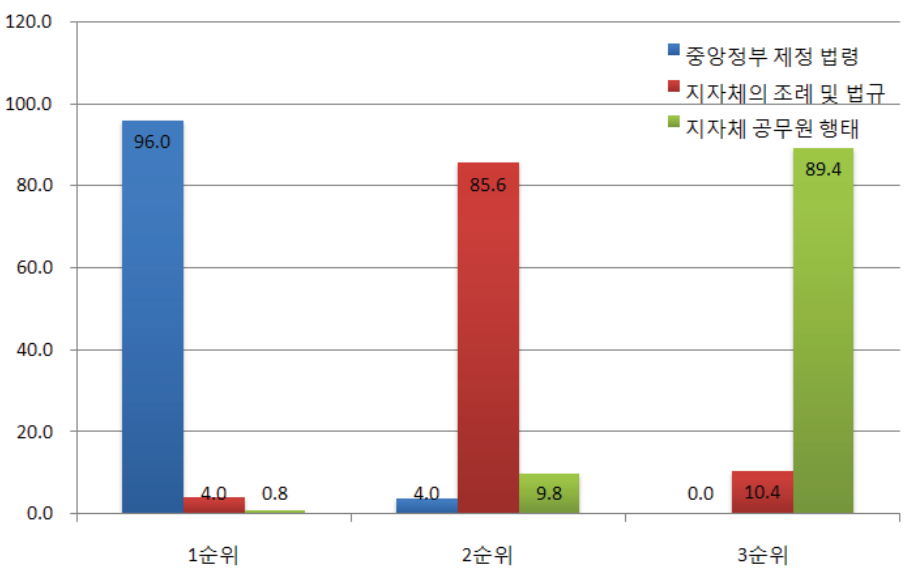
<1순위 규제원인>



<2순위 규제원인>



<3순위 규제원인>



<순위별 규제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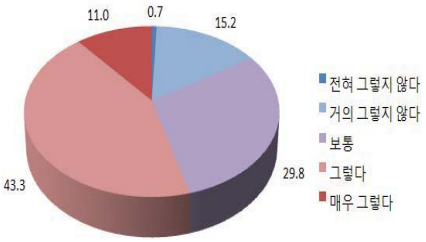
❑ 규제원인별 규제정도

○ 공무원의 반수 이상은 중앙정부가 제정한 규제와 관련된 법령이 기업활동을 저해한다고 응답(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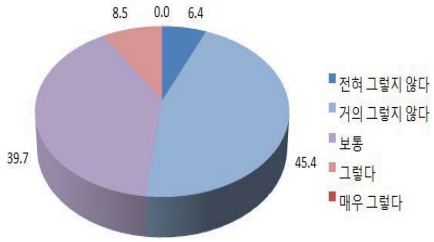
○ 반면, 지자체의 조례와 공무원의 행태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각각 51.8%, 68.4%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지자체 보다는 중앙정부의 규제 법령에 기인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0>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정도(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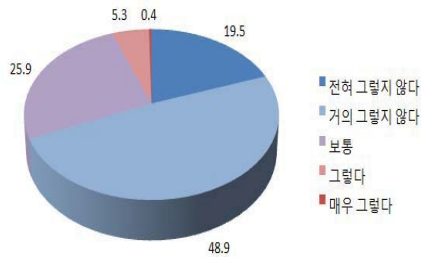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앙정부가 제정한 기업활동 규제와 관련된 법령이 기업활동을 저해한다	빈도	2	43	84	122	31
	%	0.7	15.2	29.8	43.3	11.0
지자체의 기업활동 규제와 관련된 조례가 기업활동을 저해한다	빈도	18	128	112	24	0
	%	6.4	45.4	39.7	8.5	0.0
지자체의 기업활동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행태가 기업활동을 저해한다	빈도	55	138	73	15	1
	%	19.5	48.9	25.9	5.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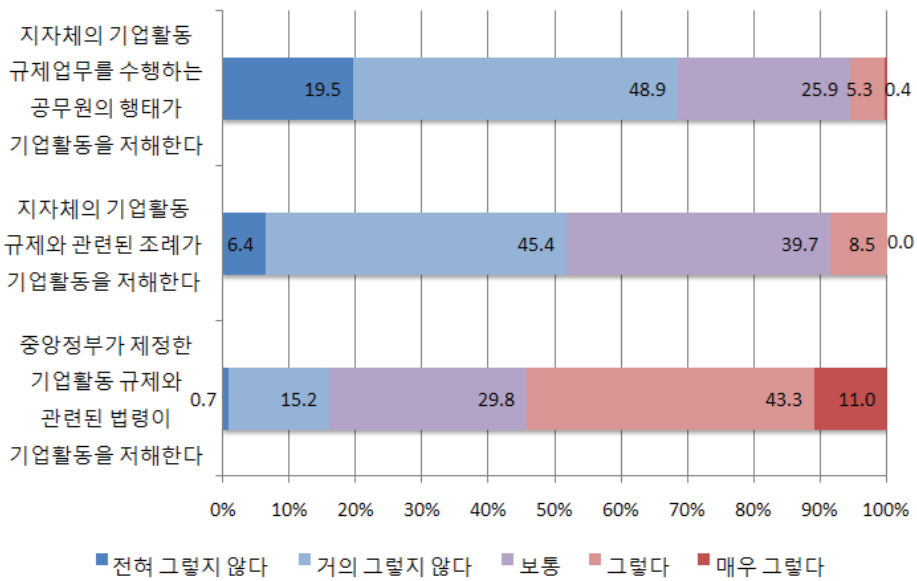
<법령에 의한 기업활동 저해>



<조례에 의한 기업활동 저해>



<공무원 행태에 의한 기업활동 저해>



<원인별 기업활동 저해 정도>

❑ 규제업무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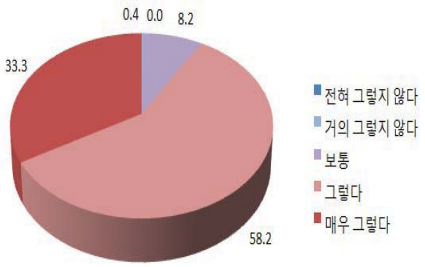
○ 공무원이 생각하는 공무원의 업무 행태는 규제업무를 공정하게 처리, 신속하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각각 91.5%, 84.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업무 전문성에 대하여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50.4%,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37.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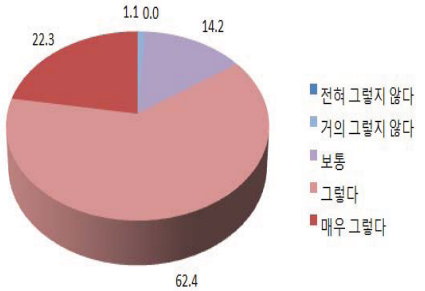
○ 그밖에 규제업무를 법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처리(72.6%),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84.7%),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75.6%) 등의 지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표 21> 공무원의 규제업무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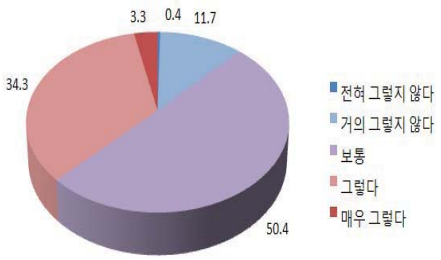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하는 기업활동 규제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한다.	빈도	0	1	23	164	94
	%	0.0	0.4	8.2	58.2	33.3
귀하는 기업활동 규제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빈도	0	3	40	176	63
	%	0.0	1.1	14.2	62.4	22.3
귀하는 기업활동 규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빈도	1	32	138	94	9
	%	0.4	11.7	50.4	34.3	3.3
귀하는 기업활동 규제업무를 법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빈도	0	3	72	168	31
	%	0.0	1.1	26.3	61.3	11.3
귀하는 기업활동 규제업무 수행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빈도	0	0	42	169	63
	%	0.0	0.0	15.3	61.7	23.0
귀하는 기업활동 규제업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한다.	빈도	0	6	61	166	41
	%	0.0	2.2	22.3	60.6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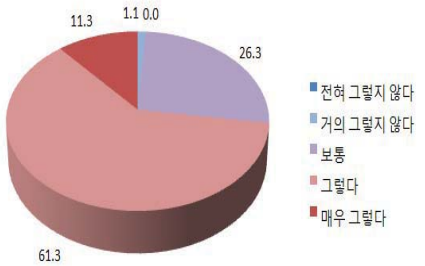
<공정한 규제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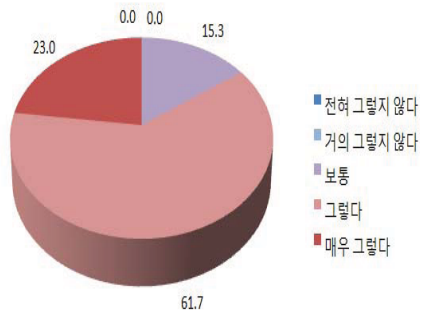
<신속한 규제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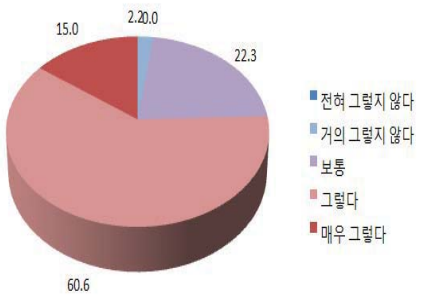
<규제업무의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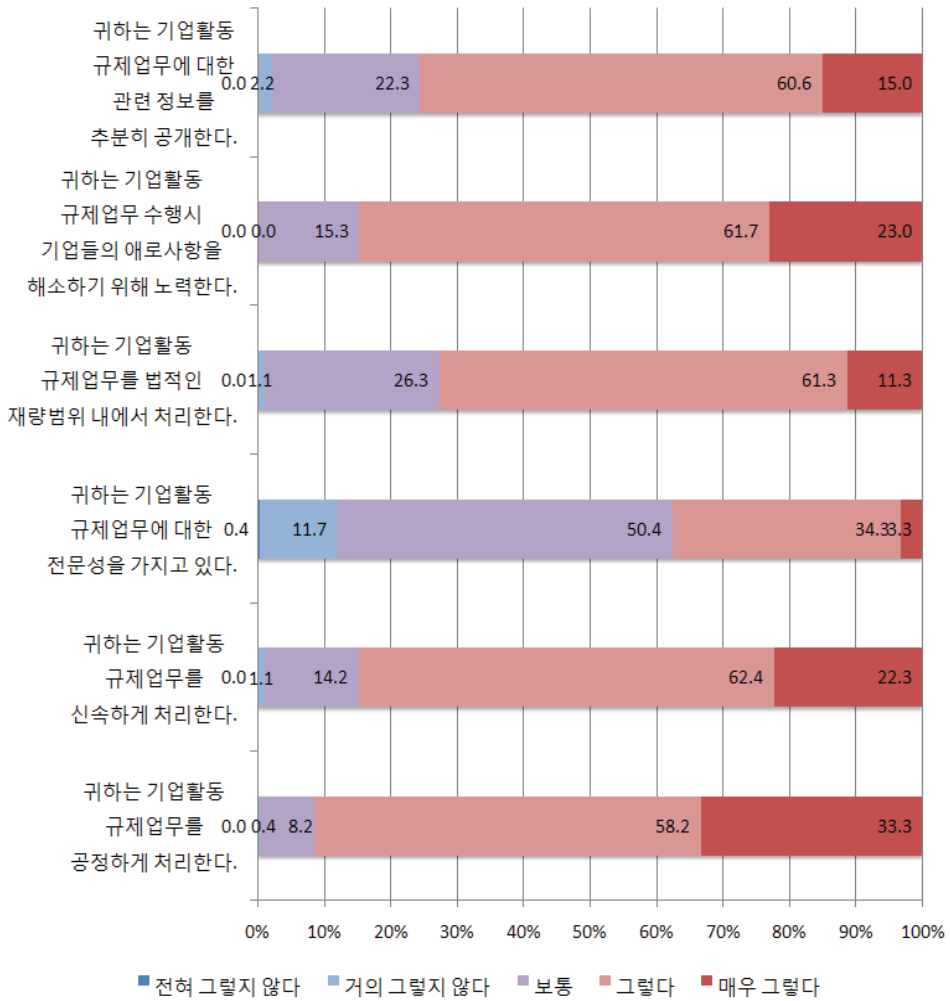
<재량범위 내 처리>



<애로사항 해소 노력>



<충분한 정보 제공>


귀하는 기업활동 규제업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추분히 공개한다.
0.0 2.2 22.3 60.6 15.0
귀하는 기업활동 규제업무 수행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0.0 0.0 15.3 61.7 23.0
귀하는 기업활동 규제업무를 법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0.0 1.1 26.3 61.3 11.3
귀하는 기업활동 규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0.4 11.7 50.4 34.3 3.3
귀하는 기업활동 규제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0.0 1.1 14.2 62.4 22.3
귀하는 기업활동 규제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한다.
0.0 0.4 8.2 58.2 33.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무원 규제 업무 행태>

❑ 규제 관련 행정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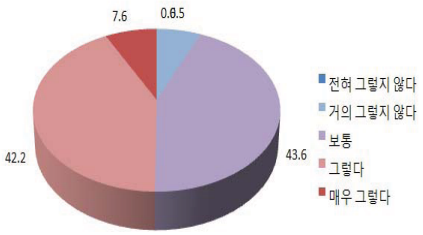
○ 공무원은 편의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57.9%), 행정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81.1%), 규제 정보 제공(63.5%), 기업 방문 애로사항 수렴(52.6%) 등의 업무에 대하여 과반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절차 간소화(49.8%), 행정 정보 접근 용이(47.8%), 서류 제출 관련 전담 조직 구성 여부(44.4%) 등에 대하여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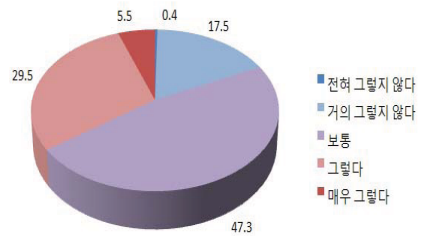
○ 그러나 관련된 업무의 창구가 일원화 되어있는가에 대하여는 47.3%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35.0%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남

<표 22> 규제 관련 행정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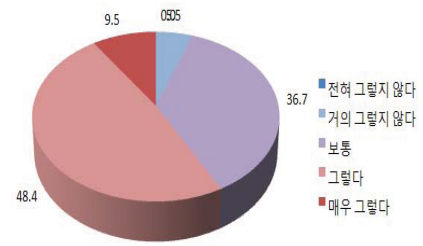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각종 서류의 제출과정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빈도	0	18	120	116	21
	%	0.0	6.5	43.6	42.2	7.6
여러 부서와 관련된 업무의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다.	빈도	1	48	130	81	15
	%	0.4	17.5	47.3	29.5	5.5
각종 기업 민원서류의 접수 및 발급을 위한 편의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빈도	0	15	101	133	26
	%	0.0	5.5	36.7	48.4	9.5
기업민원 관련 행정처리를 위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	빈도	0	22	121	122	9
	%	0.0	8.0	44.2	44.5	3.3
기업민원 관련 행정처리 절차 및 소요시일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하고 있다.	빈도	0	4	48	175	48
	%	0.0	1.5	17.5	63.6	17.5
규제업무의 진행에 대한 정보가 해당 고객에게 잘 제공되고 있다.	빈도	0	17	83	153	21
	%	0.0	6.2	30.3	55.8	7.7
각종 서류의 제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상시로 문의할 수 있는 전담조직(창구)이 있다.	빈도	3	35	115	105	17
	%	1.1	12.7	41.8	38.2	6.2
주기적으로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빈도	3	24	104	107	38
	%	1.1	8.7	37.7	38.8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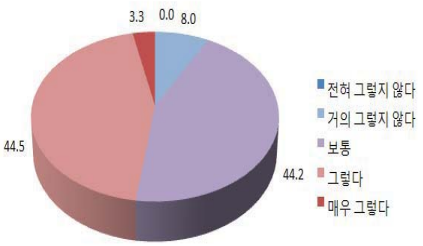
<절차 간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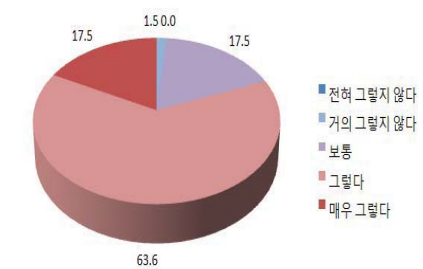
<창구의 일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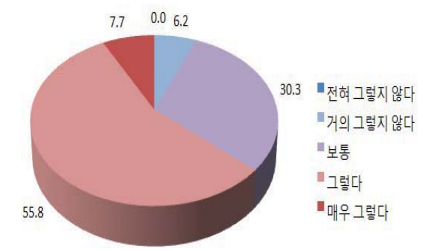
<온라인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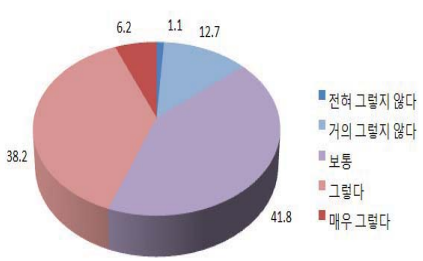
<정보 접근 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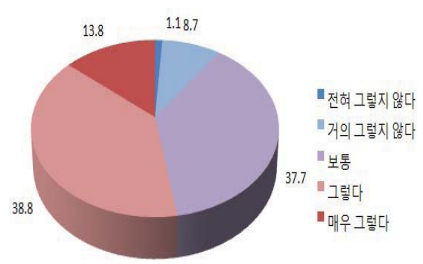
<절차 및 소요일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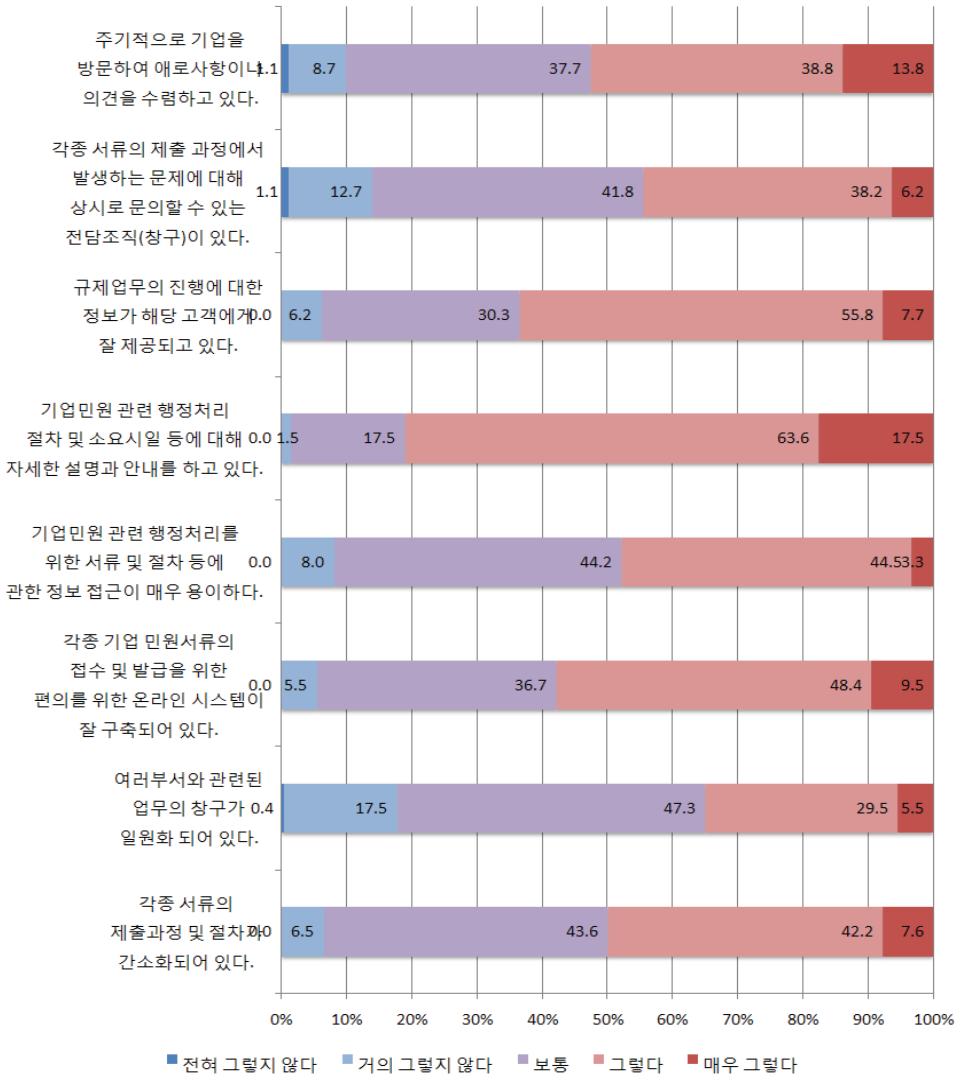
<정보 제공>



<전담조직(창구)>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


주기적으로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1 8.7 37.7 38.8 13.8
각종 서류의 제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상시로 문의할 수 있는 전담조직(창구)이 있다.
1.1 12.7 41.8 38.2 6.2
규제업무의 진행에 대한 정보가 해당 고객에게 잘 제공되고 있다.
0.0 6.2 30.3 55.8 7.7
기업민원 관련 행정처리 절차 및 소요시일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하고 있다.
0.0 1.5 17.5 63.6 17.5
기업민원 관련 행정처리를 위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
0.0 8.0 44.2 44.5 3.3
각종 기업 민원서류의 접수 및 발급을 위한 편의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0.0 5.5 36.7 48.4 9.5
여러부서와 관련된 업무의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다.
0.4 17.5 47.3 29.5 5.5
각종 서류의 제출과정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0.0 6.5 43.6 42.2 7.6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규제 관련 행정 시스템>

❑ 규제 개선 과제

○ 규제 개혁을 위한 개선과제로 공무원의 과반이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59.4%)을 최우선 과제로 응답하였음

○ 2순위로는 지자체 공무원 행태 변화(20.3%), 지자체 자치법규의 정비(17.4%)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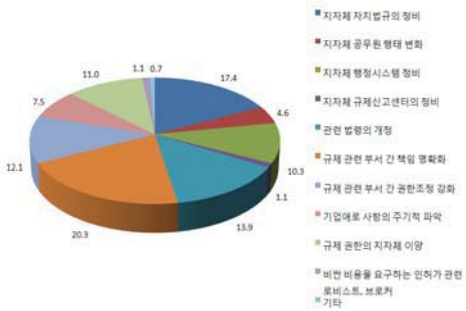
○ 전체 응답 빈도는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27.0%), 지자체 공무원 행태 변화(15.1%), 지자체 자치법규의 정비(11.0%)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와 관련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

<표 23> 규제 개선 과제(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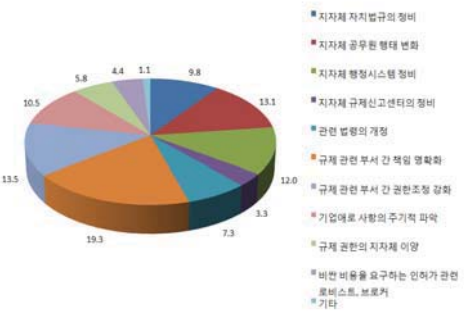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지자체 자치법규의 정비	16	5.7	49	17.4	27	9.8	92	11.0
지자체 행정시스템 정비	7	2.5	13	4.6	36	13.1	56	6.7
관련 법령의 개정	13	4.6	29	10.3	33	12.0	75	9.0
규제 관련 부서 간 권한조정 강화	2	0.7	3	1.1	9	3.3	14	1.7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	167	59.4	39	13.9	20	7.3	226	27.0
지자체 공무원 행태 변화	16	5.7	57	20.3	53	19.3	126	15.1
지자체 규제신고센터의 정비	10	3.6	34	12.1	37	13.5	81	9.7
규제 관련 부서 간 책임 명확화	16	5.7	21	7.5	29	10.5	66	7.9
기업애로 사항의 주기적 파악	27	9.6	31	11.0	16	5.8	74	8.8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인허가 관련 로비스트, 브로커	5	1.8	3	1.1	12	4.4	20	2.4
기타	2	0.7	2	0.7	3	1.1	7	0.8
합계	281	100	281	100	275	100	83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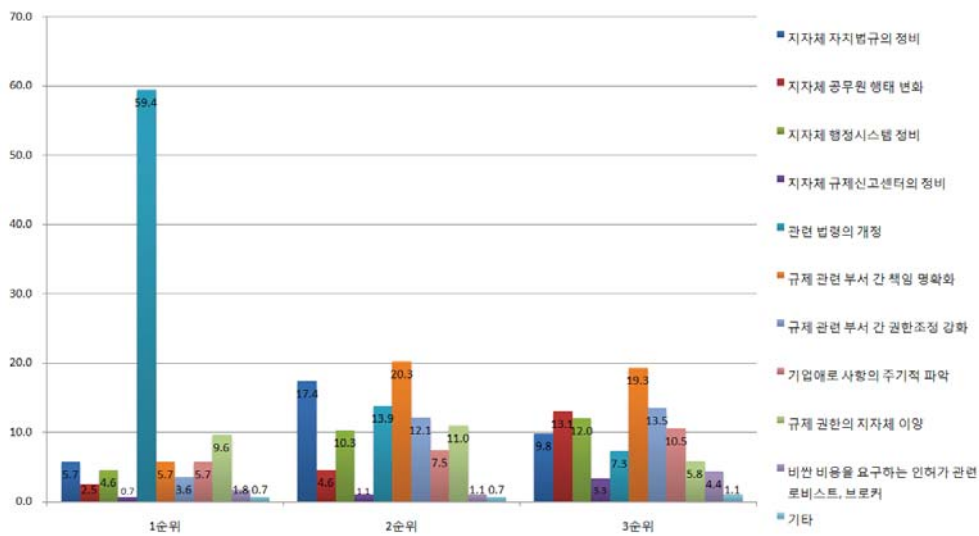
<1순위 규제 개선 과제>



<2순위 규제 개선 과제>



<3순위 규재 개선 과제>



<순위별 규제 개선 과제>

제4절 기업인, 공무원 비교 분석

☐ 지자체 규제의 기업활동 영향

○ 지자체의 규제가 기업활동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기업인은 59.2%인 반면 공무원의 경우는 29.3%로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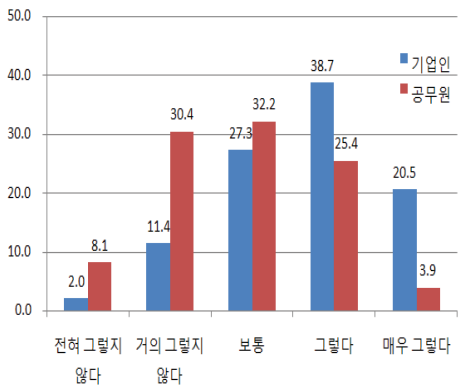
○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거의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기업인은 13.4%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공무원은 38.5%로 나타나 기업인과 공무원간 인식에 큰 차이를 보임

○ 지자체의 규제 수준이 기업활동을 저해할 정도인가에 대해서 공무원은 거의 그렇지 않다가 49.8%로 반수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10.9%를 차지하여 공무원의 경우 규제수준이 높지 않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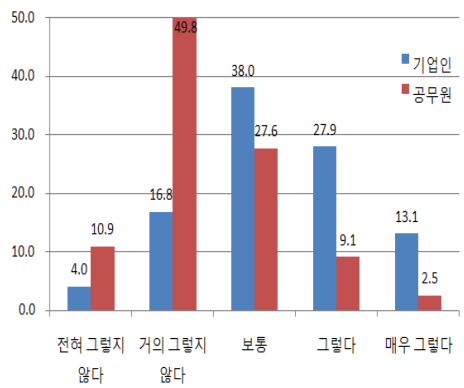
○ 그러나 기업인의 경우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41.0%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거의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20.8%보다 높게 나와 규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음

<표 24> 기업활동에 대한 지자체 규제영향과 정도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업활동에 대해서 지자체의 규제가 영향을 미친다	기업인	빈도	6	34	81	115	61
		비율	2.0	11.4	27.3	38.7	20.5
	공무원	빈도	23	86	91	72	11
		비율	8.1	30.4	32.2	25.4	3.9
지자체의 기업활동 규제수준이 기업활동을 저해할 정도로 높다	기업인	빈도	12	50	113	83	39
		비율	4.0	16.8	38.0	27.9	13.1
	공무원	빈도	30	137	76	25	7
		비율	10.9	49.8	27.6	9.1	2.5



< 지자체 규제의 기업활동 영향>



<지자체규제의 기업활동 저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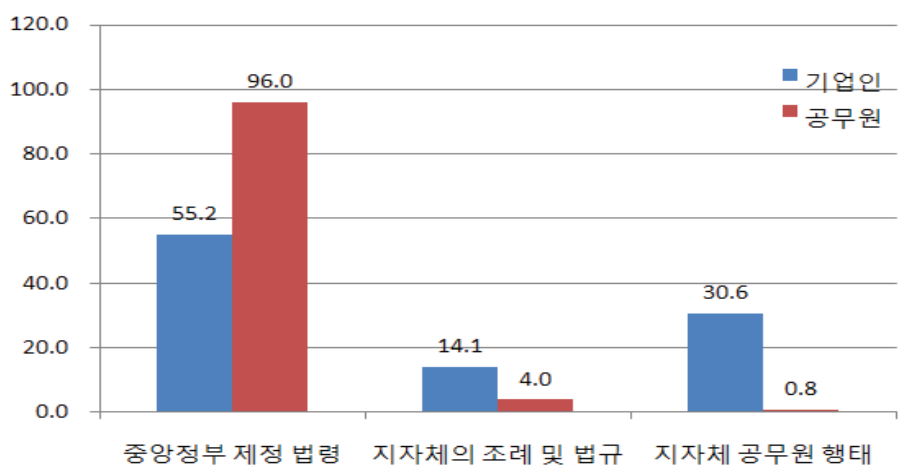
☐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원인의 소재

○ 기업활동 규제원인의 소재에 대하여 공무원과 기업인 모두 중앙정부 제정 법령에 가장 큰 소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공무원의 96.0%가 중앙정부 제정 법령에 있다고 응답한 반면 기업인은 55.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원인 소재에 대해 다른 패턴을 보임

○ 공무원의 경우 규제원인의 소재의 1순위가 지자체 공무원의 행태라고 응답한 비율은 0.8%에 불과했으나 기업인의 경우 30.6%가 지자체 공무원에 행태에 기인한다고 응답하여 원인 소재의 1순위 2중 두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

<표 25>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원인의 소재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중앙정부 제정 법령	기업인	164	55.2	55	18.5	78	26.3
	공무원	267	96.0	11	4.0	0	0.0
지자체의 조례 및 법규	기업인	42	14.1	171	57.6	84	28.3
	공무원	10	4.0	214	85.6	26	10.4
지자체 공무원 행태	기업인	91	30.6	71	23.9	135	45.5
	공무원	2	0.8	24	9.8	219	89.4



❑ 규제유형별 기업활동 저해

○ 중앙정부의 규제 법령이 기업활동을 저해 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54.3%였으며 기업인은 49.2% 나타나 중앙정부의 법령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 판단을 하고 있으나 비슷한 패턴으로 타나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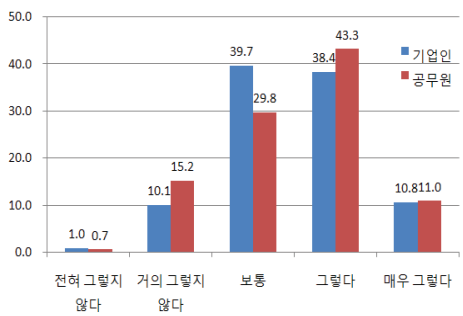
○ 지자체의 기업활동 관련 조례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기업인은 48.5%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매우 부정적인 반면, 공무원은 51.8%가 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거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기업인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공무원의 행태가 기업활동을 저해한다고 응답한 기업인은 52.6%로 과반 이상이 공무원의 행태가 기업활동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공무원은 68.4%가 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거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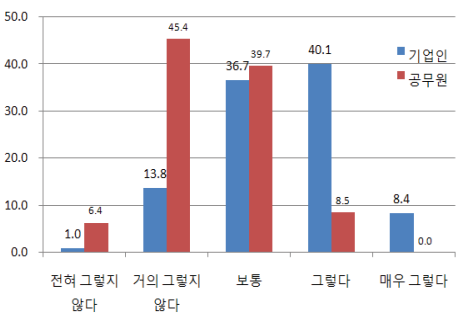
○ 중앙정부의 법령과 관련해서는 기업인과 공무원 모두 과반 정도가 기업활동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 지자체 조례와 공무원 행태에 대하여는 기업인은 기업활동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지만 공무원은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표 26> 규제유형별 기업활동 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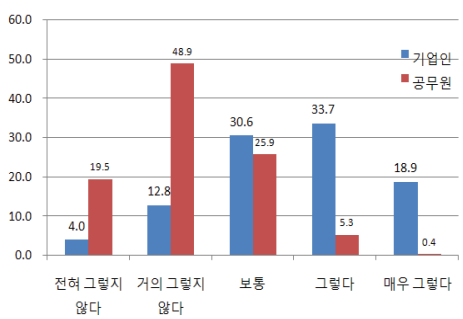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앙정부가 제정한 기업활동 규제와 관련된 법령이 기업활동을 저해한다	기업인	빈도	3	30	118	114	32
		비율	1.0	10.1	39.7	38.4	10.8
	공무원	빈도	2	43	84	122	31
		비율	0.7	15.2	29.8	43.3	11.0
지자체의 기업활동 규제와 관련된 조례가 기업활동을 저해한다	기업인	빈도	3	41	109	119	25
		비율	1.0	13.8	36.7	40.1	8.4
	공무원	빈도	18	128	112	24	0
		비율	6.4	45.4	39.7	8.5	0.0
기업활동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행태가 기업활동을 저해한다	기업인	빈도	12	38	91	100	56
		비율	4.0	12.8	30.6	33.7	18.9
	공무원	빈도	55	138	73	15	1
		비율	19.5	48.9	25.9	5.3	0.4



<법령의 기업활동 저해>



<지자체 조례의 기업활동 저해>



< 지자체 공무원 행태의 기업활동 저해>

❑ 규제개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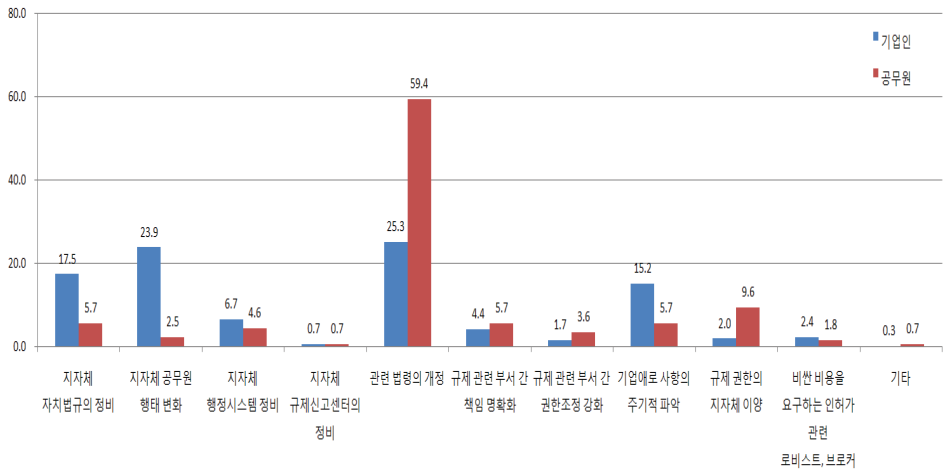
○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개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공무원의 59.4%가 관련 법령의 개정이라고 응답하여 과반이 넘는 응답률을 보임

○ 기업인의 경우도 관련 법령의 개정이 1순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5.2%로 공무원과는 상대적 차이가 있음

○ 기업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이 외에 지자체 공무원의 행태 변화(23.9%), 지자체 자치법규의 정비(17.5%), 기업애로 사항의 주기적 파악(15.1%) 등이 1순위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응답하여 공무원에 비해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표 27> 규제 개선 과제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자체 자치법규의 정비	기업인	52	17.5	45	15.2	34	11.5
	공무원	16	5.7	49	17.4	27	9.8
지자체 공무원 행태 변화	기업인	71	23.9	46	15.5	45	15.1
	공무원	7	2.5	13	4.6	36	13.1
지자체 행정시스템 정비	기업인	20	6.7	37	12.5	48	16.2
	공무원	13	4.6	29	10.3	33	12.0
지자체 규제신고센터의 정비	기업인	2	0.7	15	5.0	15	5.0
	공무원	2	0.7	3	1.1	9	3.3
관련 법령의 개정	기업인	75	25.2	38	12.8	24	8.1
	공무원	167	59.4	39	13.9	20	7.3
규제 관련 부서 간 책임 명확화	기업인	13	4.4	41	13.8	33	11.1
	공무원	16	5.7	57	20.3	53	19.3
규제 관련 부서 간 권한조정 강화	기업인	5	1.7	16	5.4	17	5.7
	공무원	10	3.6	34	12.1	37	13.5
기업애로 사항의 주기적 파악	기업인	45	15.1	30	10.1	52	17.5
	공무원	16	5.7	21	7.5	29	10.5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	기업인	6	2.0	14	4.7	11	3.7
	공무원	27	9.6	31	11.0	16	5.8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인허가 관련 로비스트, 브로커	기업인	7	2.4	15	5.0	16	5.4
	공무원	5	1.8	3	1.1	12	4.4
기타	기업인	1	0.3	0	0.0	2	0.7
	공무원	2	0.7	2	0.7	3	1.1


80.0
60.0
40.0
20.0
0.0
기업인
공무원
17.5
5.7
23.9
2.5
6.7
4.6
0.7
0.7
25.3
59.4
4.4
5.7
1.7
3.6
15.2
5.7
2.0
9.6
2.4
1.8
0.3
0.7
지자체 자치법규의 정비
지자체 공무원 행태 변화
지자체 행정시스템 정비
지자체 규제신고센터의 정비
관련 법령의 개정
규제 관련 부서 간 책임 명확화
규제 관련 부서 간 권한조정 강화
기업애로 사항의 주기적 파악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인허가 관련 로비스트, 브로커
기타

제5장
지방규제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제도개선 기본방향
제2절 제도개선의 총괄
제3절 세부 개선시책

제 5 장 지방규제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제도개선 기본방향

☐ 기업활동 활성화 정보개선 및 통합적 정보제공

○ 기업활동을 위한 입지선정에 필요한 정보는 막대할 뿐 아니라 산재되어 있는 문제 등이 있음

- 용도지역뿐 아니라 건폐율, 용적율, 개발행위 허가, 토지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

 특히 중소기업 등은 이에 대한 정보검색 능력의 부족하여 자치법규를 포함하여 관련정보를 얻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음
- 공장입지 선정에 필요한 토지활용정보는 자치법규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의 투자환경 등의 정보도 자치단체별로 제공하고 있음
- 기업 등은 산재된 정보 홍수 속에서 담당 공무원을 방문하는 등 정보검색, 비교 등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

 지자체나 시스템 구축 등으로 기업입지 등 정보 획득 비용 등에서 오는 기업입지 애로 등을 최대한 해소

○ 지자체나 시스템 구축 등으로 기업입지 등 정보 획득 비용 등에서 오는 기업입지 애로 등을 최대한 해소

○ 복합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이와 관련되는 부처, 기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

- 관련 기관으로 구성되는 현장 지향적인 협업적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 특히,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상당수가 다수의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덩어리 규제가 많음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지닌 기관간의 협업적이고 총괄적인 시스템 구축이 중요

☐ 자치단체의 기업활력 지원

○ 기업활동에 관계하는 법률에 따라 소극적이며, 보신적인 지방규제를 적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 규제법정주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업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고사하고, 관련 법률의 개선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여기와 관련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음
- 자치단체가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치단체의 기업활동 친화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개발, 시행할 필요가 있음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비리가 아니다면 업무상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보다 강화하고, 규제에 대한 일몰제 등을 도입 적용
- 아울러 규제개선 건의자의 신분보호 등의 시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평가 등 활용한 자치단체간 경쟁촉발

○ 규제개선에 대한 강제나 실적 점검 등의 조치 보다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

- 규제개선을 위한 과도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자체의 자발성을 통한 규제개선
 기업활동의 궁극적인 혜택이 해당 지자체에 있음을 주지시킬 뿐 아니라, 이를 위해 행정 마인드 보다는 기업가적 마인드에 의한 기업의 활

동에 필요한 규제를 개선

- 기업입지 환경의 개선, 기업친화적인 지자체의 행태 강화 등에 대한 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를 개선

<표 28> 지방규제 개선의 방향

구분	내용	비고
기업활동 관련 정보제공 개선	- 지자체나 시스템 구축 등으로 기업입지 등 정보 획득 비용 등에서 오는 기업입지 애로 등을 최대한 해소	- 정보 접근성 강화
자치단체의 기업활동 지원 강화	- 기업활력지수, 지방규제 개선에 대한 공무원 업무의 면책 강화, 규제 일몰제 등 적용을 통한 지방규제 개선	협업적 추진
자치단체간 경쟁촉발 평가 적용	- 기업입지 환경의 개선, 지자체의 기업친화적인 행태 강화 등을 통한 자치단체간 경쟁 유발	- 자치단체간 경쟁촉발

제2절 제도개선의 총괄

○ 앞서 언급한 기본방향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을 총괄적으로 제시하면 핵심적인 몇 개의 부문으로 나눌 수 있음

○ 정보공개 및 확대 등 시스템 구축에 관련되는 부문, 기업활력제고 및 공무원 면책강화 등에 대한 부문, 규제개선에 대한 교육 및 평가에 관련된 부문으로 구분이 가능

<표 29> 지방규제 개선의 총괄

구분		내용	비고
기업입지 및 규제관련 정보공개 개선 / 총괄적 시스템 구축	지방규제 정보포털 개선	-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제공하고 있는 지방규제 등을 확대, 개선, 연계	- 부처, 안행부 수록
	토지이용 및 입지결정 정보제공	- 토지이용, 기업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	- 정보탐색 비용 저감
	국가 및 지방규제 총괄 시스템 구축	- 부처, 지자체 규제를 통합, 총괄하는 시스템 구축	- 총괄관리
기업활동 지원 / 규제관련 시책 지원	기업친화지수 개발, 활용	- 자치단체별 기업친화지수 구축 및 평가	- 권고안 작성
	지방규제 Doctor제 운영	- 시도별 지방규제 개선 전문팀 구성 및 운영	- 시도별 실적 산출
	지방규제 개선 건의자 보호	- 규제개선 건의자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	- 불이익 사례 발굴
	지방규제 총량 및 일몰제 도입	- 규제의 생성,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소임을 다한 규제의 일몰	- 과다규제 저감
	규제관련 업무 면책 강화	-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규제 개선 관련 공무원 업무에 대해 면책강화	- 적극적 지원 유도
	자동 승인제 도입	- 인허가 등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인되는 제도	- 신규도입
규제개선 평가 / 공무원 교육 강화	부처별 지역별 규제개선의 평가	- 부처별, 지역별 규제개선을 평가 - 단기적으로는 안행부, 장기적으로는 합동평가	- 평가체계 구축
	지방규제 도입시 비용평가 의무화	- 규제 도입시 비용 평가 의무화 시스템 구축	- 사전심사
	지방규제 개선 공무원 교육 강화	- 법령, 자치법규 개선, 공무원 행태 등의 개선에 대한 교육	- 교육실적 평가

제3절 세부 규제개선 시책

1. 입지·규제 관련 정보공개 개선 및 총괄 시스템 구축

□ 지방규제 정보포털 개선

○ 현재 지방규제 정보 포털 등에서는 제한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규제개선을 위한 활용도가 저하

- 규제개혁위원회의 정보포털에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록규제, 게시판 등만을 운영하고 있음
- 규제 관련 평가 및 지자체, 부처의 기업친화지수 등 기업 활동에 유용한 관련 제반 정보의 제공이 부족함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규제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 : 안행부 등이 발굴한 규제의 내용 등 수록
- 규제에 대한 정보공개의 주기를 단축 : 분기 및 반기별 공개(정보의 내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로 규제에 관한 정보를 수록
-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 규제개선 평가내용을 공개
- 시도 및 시군구, 부처별 기업친화지수(CFI: Corporate Friendly Index) 공개

 ※ 지역별, 부처별 기업친화지수의 분기별, 반기별, 연도별 공개
- 인터넷 포털 등에 기업규제 개선의 모범사례, 모범 공무원 수범사례 공개
- 부처,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등 규제 포털 및 시스템의 연계 강화

 규제개선을 잘 하는 부처, 지자체는 인센티브 부여
- 시상(포상), 승진, 인사 등에 반영하여 타 주체의 참여를 독려

☐ 토지이용 및 입지결정 정보 제공

○ 기업활동에 중요한 토지이용은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용적율, 개별행위 허가기준 등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77조 동법 시행령 5조 84조 등

○ 기업은 입지, 투자여건 등을 검토하여 입지를 결정하나 지역별로 검토 가능한 정보 시스템이 없는 형편임

- 대부분의 기업은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얻고 있어 시간적, 금전적인 측면에서 정보탐색 비용이 막대함

○ 지역별 토지이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지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업에 제공

- 전국 지자체에 세부적인 토지이용 현황, 규제 등을 시각화시킬 수 있는 지도화 작업(Mapping)을 수행
- 입지요인 정보제공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의 통합적인 네트워크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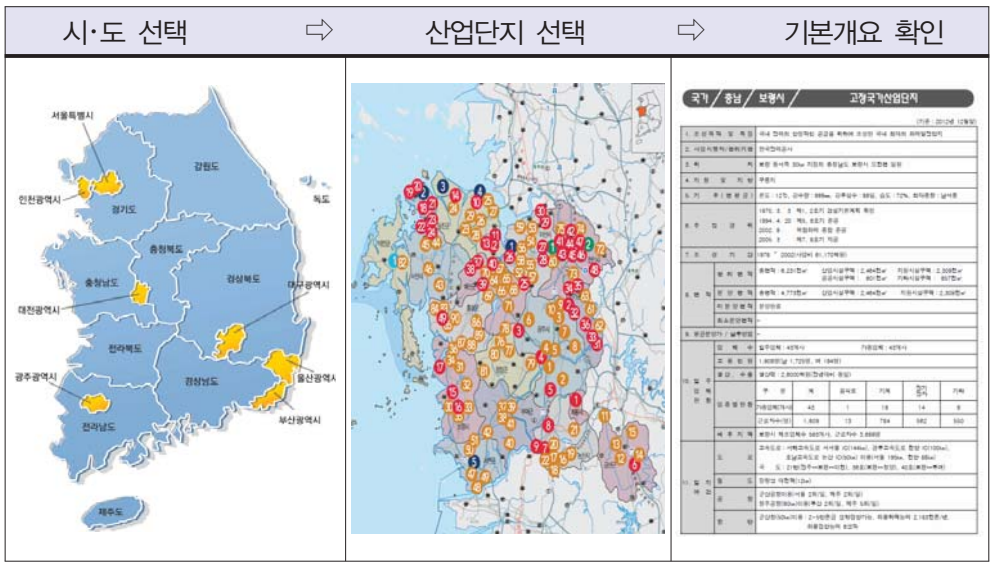
<표 30> 토지이용 및 기업입지 제공정보 예시

구분	내용	비고
토지이용	-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 건폐율, 용적율 등	-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율 제시
개발행위	- 허가규모,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 예) 관리지역 3만 m3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m3 미만 - 입목축적, 경사도에 따른 허가대상
개발행위 면제	-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등	- 무게, 부피, 면적 등

○ 장기적으로는 기업입지와 토지이용에 대한 지자체의 여건개선까지를 평가하여 지자체간 규제개선에 대한 경쟁을 유발

- 기업환경 개선 평가를 합동평가와 연계시켜 지자체 참여 촉발

<그림 4> 산업단지 정보제공 예시



※ 그 외 브이월드(국토부, map.vworld.kr) 서비스가 구축(’ 12년)되어, 용도지역·지구·구역, 산업입지도, 국가교통도 등이 3D 지도형태로 제공 중

❑ 국가 및 지방 규제 총괄 시스템 구성

○ 각 부처에서 각자 관할하고 있는 현재의 국가 규제 상황을 총괄해서 관할하는 시스템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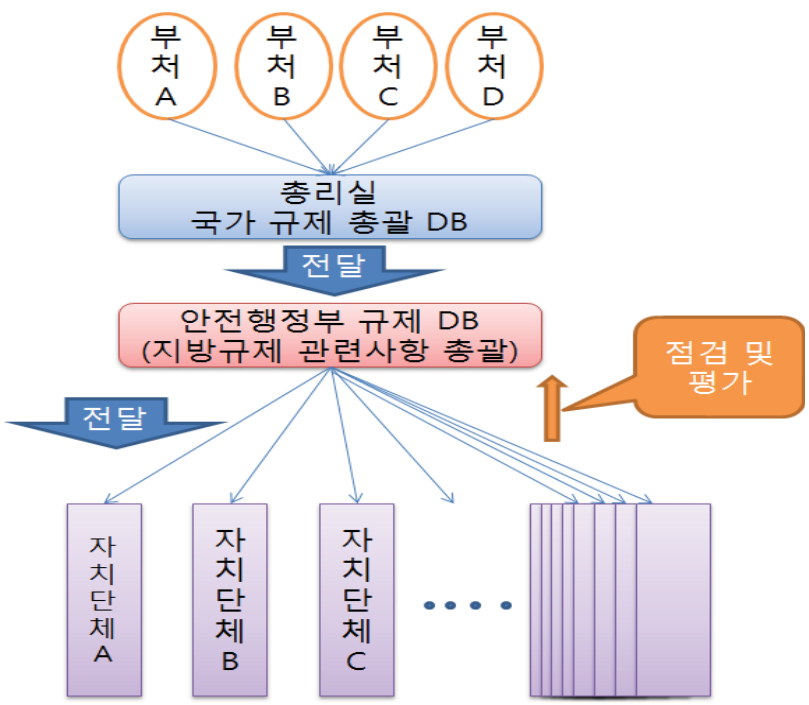
- 현행 규제는 생성 관할 부처별로 각자 관리되고 있어 중복 유사 규제가 발생하여 규제 숫자를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총리실에서 국가 전체 규제를 관리하려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확고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총리실에 국가 규제 총괄 DB를 구축하고, 각 부처가 관할 규제 혹은 새로 생성할 규제를 제출하여 중복 유사 규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각 부처에서 각자 관할하고 있는 현재의 지방 규제 상황을 통합, 총괄해서 관할하는 시스템의 구성

- 국가 규제 통합 DB와 연계하여 안행부에서는 새로 제정된 규제나 이미 제정되었으나 아직 반영하고 있지 않은 규제들을 체크하여 지방에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이 시스템을 통해 각 자치단체가 중앙의 법령에 기반하여 지방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규제들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이를 점검 및 평가하여 과도하거나 해가 되는 지방규제들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상기한 국가 및 지방 규제 총괄 시스템을 개념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5> 국가-지방규제 총괄 시스템 구성



2. 기업활동 및 규제관련 시책 지원

□ 기업활력지수의 개발 및 활용

① 자치단체 기업친화지수의 개발

○ 규제 개선 등을 통한 지자체의 기업활동지원은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 투자나 기업유치, 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의 지위를 가지는 측면을 지수에 고려할 수 있는 방향에서 지수를 개발

-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이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실제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도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 지자체의 기업활력은 해당 지자체에서 기업활동 활성화에 관계되는 지자체의 제반 역량을 지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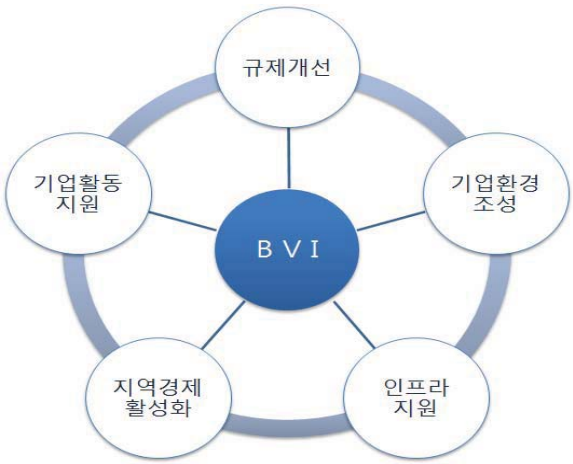
○ 기업활력에 관계되는 지자체의 제반 역량은 규제개선, 지자체의 행태 등 제도요소,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지 등 인프라 요소, 기업애로 해소 지원, 단체장의 의지 및 공무원의 역량, 기업유치 성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업애로 대응, 규제개혁, 기업유치 활동, 행정지원, 산업단지 및 인프라 지원, 단체장의 의지 등을 종합한 자치단체“기업활력지수”(Business Vitality Index; BVI)를 개발
- 국내외 기업친화 및 일자리 창출 지수 관련 연구 검토

〈 기업활력지수의 주요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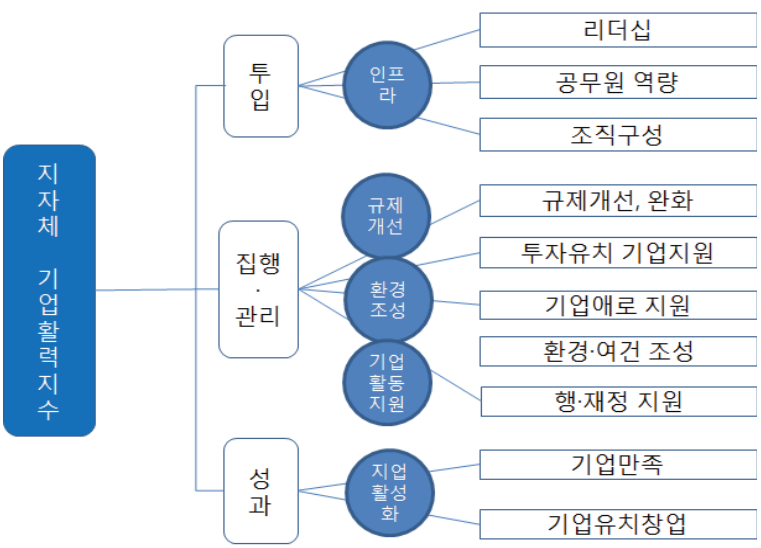
△ 단체장 의지와 관심, 공무원 행태, 규제개선, 원스톱 지원, 민원처리 사항 등 포함

<그림 6> 기업활력지수의 구성 부문



○ 위의 개념적 정의와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지자체의 기업활력지수는 투입 측면의 규개개선 인프라, 집행 및 관리 측면의 규제개선 및 기업지원, 성과로서의 기업유치 등의 3가지 측면에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7> 지자체 기업활력지수의 구성



② 자치단체별 규제개혁 등 기업활력지수의 평가

- 자치단체 기업친화 평가 관련 Data 구축
- 자치단체 기업친화 종합부문 평가 (상, 중, 하)
- 기업친화 세부 부문별 평가

※ 평가결과 하위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진단 차원의 2단계 평가시행

③ 자치단체별 권고안 작성

- 평가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별로 규제개선 및 기업친화 권고안 작성
- 권고안은 지자체별로 작성하여, 해당지역, 중앙부처 등에 제공
- 권고안을 받은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은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반영

<표 31> 자치단체 BVI 평가절차

자치단체 BVI 개발	◦ 부문 및 부문별 지표의 선정 (유사 선행연구, 통계청, 현지조사 등 활용)
▼	
자치단체 BVI 평가 (분석지표 적용)	◦ 자치단체별 BVI 지수 산출 ◦ 부문별 평가결과 산출 ◦ 상, 중, 하 그룹산출 - 상위, 중위, 하위 그룹화
▼	
권고안 작성 유형별 정책처방	◦ 평가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권고안 작성 ◦ BFI에 의한 유형별 맞춤식 처방작성 ◦ 자치단체 권고안 및 처방 제공
▼	
개선계획 수립, 시행	◦ 권고안 및 맞춤형 정책제안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 ◦ 개선계획의 실행을 통한 기업친화성 향상
▼	
평 가	◦ 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언급하는 【보론】 을 참조

☐ 지방규제 개선 Doctor제 구성 및 시행

○ 목적은 자치단체별 맞춤식 규제개선을 지원

- 지방규제는 현장 특수성을 띠고 있음을 고려하여 맞춤식 해결이 초점
 지방규제 Doctor의 구성은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규제개선에 전문성을 지닌 중앙부처, 지자체, 기업, 전문가 등 참여

○ 현장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지방규제 Doctor를 구성

- 해당 시군구의 규제개선을 지원
 시도별 규제개선 실적을 산출, 보고
- 총리실 주관의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지역별 규제개선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
- 동시에 규제개선 실적을 규제개선 정보 포털에 공개

<표 32> 지방규제 개선 Doctor제

구분	내용	비고
목적	- 자치단체별 맞춤식 규제개선을 지원	- 현장 솔루션
구성	- 규제개선 전문성 보유 중앙부처, 자치단체, 기업, 전문가	- 전문성
운영	- 시도별 설치, 개선실적 산출 및 보고	- 자치단체 비교

☐ 지방규제 개선 건의자 신분보호

○ 기업의 규제 개선을 통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 규제개선을 건의하면,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규제개선 건의 자체를 회피하는 경향을 사전에 차단

○ 규제 건의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발굴하여 차단

○ 규제 건의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개선 건의 채널(가령, 신문고 제도)를 도입, 시행

<표 33> 지방규제 개선 건의자 보호

구분	내용	비고
목적	- 규제개선 건의에 따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차단	-
방안	- 규제개선 신문고 제도 구성 및 운영	- 민간, 전문가 등 위원으로 구성

☐ 지방규제 총량 및 일몰제 도입

○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법정 규제가 아닌, 새로운 권리 침해적 지방 규제를 고려하고 있을 경우, 해당 규제는 일정 기간 동안만 시행되고 이후에 없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규제는 일단 시행되기 시작하면, 잘 없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음
- 현행 지방 규제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규제는 일단 만들어지면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임

※ 중앙부처 공무원 1인당 규제건수는 2008년 19.2건에서 2012년 24.2건으로 계속해서 증가

○ 규제의 총량한도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규제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기업활동을 최대한으로 지원

- 규제건수를 공무원 수에 연계하여 관리하거나, 신설규제 일몰제 적용을 보편화하는 조치 시행
- 법정 의무적 규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지만, 법에서 지방에 실시여부를 위임한 규정의 경우 특정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 동안만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 그 기간이 끝날 즈음 해당 규제를 평가하여 계속 실시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한다면 현행 과다한 규제의 숫자들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 법 통과 절차와 기간이 짧은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의무화하는 조치

〈 영국의 규제 총량제 〉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규제개혁을 천명

△ 2010년 5월 "기존 규제 폐지 없이 새로운 규제 신설 없다"(One In, One Out)는 정책과 '규제 일몰제'(Sunset Clauses) 도입

☐ 적극적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 면책 활성화

○ 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자세에 따라 기업활동을 위한 지방규제 개선은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

- 자치단체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업무역량이 뛰어나면 기업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음

※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파주, 진사(진주-사천)공단, 전라북도 등이 해당됨

○ 기업활동을 위한 지방규제개선을 위해 수행한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면책을 보다 활성화

- 공직자로서 품위에 적합하지 않은 비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과실 등에 대해 면책의 범위를 확대

☐ 자동 승인제 도입

○ 정의 및 기대효과

- 자동승인규칙(silence-is-consent rule)을 적용하여 기업인이 인허가를 신청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견이나 결과 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 협의, 인·허가 등 행정관청의 판단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 일정기간 경과 시 자동승인제를 도입, 기간 단축 및 사업 예측성을 제고하도록 함

○ 적용사례

① 외국의 사례

- 미국의 경우 1997년 FDA에서 식품안전감정(Food Safety Determinations) 시 자동승인제를 운영하였음
- 이탈리아 경우 2011년 7월부터 인구 100,000 이상의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분야에 자동승인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② 우리나라의 사례

-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않을 경우 이견 없이 산업단지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간주함('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
-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0조 제4항)
- 공장설립 인허가를 위해 인허가권자가 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협의시 법정 협의기간 내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

○ 적용방안

- 인허가 기간 내에 업무가 처리되도록 행정기관에 의무를 부과하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효과를 거둠
- 특수한 개발사업 이외에 행정관할구역 내의 다양한 인허가, 승인 사무에 대한 일정 기간 경과 시 자동승인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절차적 규제개선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가장 용이한 유형임

3. 규제개선 평가 / 공무원 교육 강화

☐ 부처별, 지역별 규제개선 평가

① 평가를 위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

○ 사후 검토와 패널티 부여를 통한 정확한 비용 산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함
- 비용 평가가 의무화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규제를 원치 않는 피 규제 대상들이 규제의 비용을 과대평가하는 것임
- 비용 데이터의 산정은 결국 피 규제 대상들의 자체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비용의 과다계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규제 비용 평가의 핵심이 될 것임
- 사전심사의 특성상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데이터와 크게 어긋나는 결과가 산출되었을 때 사후 검토를 통해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
- 규정을 충분히 고지하여 가능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서 운영

② 부처별, 지역별 규제개선 평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강화
- 새마을 운동의 핵심적인 성공 요건은 독특한 경쟁방식을 도입, 시행했던 사례가 있음

○ 평가는 규제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부처별, 지자체별로 시행
- 시도, 시군구별로 규제개선 실적을 평가
- 중앙부처별로도 소관 사무에 대한 규제개선 실적을 평가

○ 규제개선을 잘 하는 부처, 지자체는 인센티브 부여
- 시상(포상), 승진, 인사 등에 반영하여 타 주체의 참여를 독려
 평가 지표는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지원, 정책 환류 등으로 구성

<표 34> 지방규제 개선 평가지표

구분	내용	비고
인프라 구축	- 규제개선 노력도 및 단체장 관심도: 규제개선 교육, 관계기관간 협력, 단체장 관심도 - 투자 인허가 처리 효율화 : 전담창구 개설 및 운영, 인허가 우수사례 선정 등 - 기업활동 협력기반 조성 : 노사정 협의회 운영 등	- 안행부, 중기청, 노동부
규제완화 개선노력	- 중앙부처 법령규제 개선 실적: 법령규제 개선 건의 및 수용율 -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실적 : 조례, 규칙 개선율 - 지방규제 개선 실적 : 등록규제 정비율, 지방규제 개선 우수과제 발굴건수 등	- 안행부, 공정위 등
기업활동 활성화 지원	- 지역투자 기반조성 및 투자유치 실적 : 법령 개정 반영사례, 자치법규 반영사례, 인허가 행태개선 사례 등 - 기업환경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실적 : 기업의 생산기반조성 사례, 기업현장 애로해소 사례, 창업 원스톱 지원사례 등	- 안행부, 경제단체

○ 단기적으로는 안행부 등이 주관해서 규제개선 평가를 시행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업무 합동평가와 연계

- 공무원 행태 등에 대한 지방규제 개선이 어느 정도 정착되는 시기까지는 안행부가 평가를 주관, 시행
- 지방규제에 대한 평가가 정착되고 자치단체의 인식이 증가하게 되면 합동평가를 통해 평가 안정화하는 조치를 시행

<표 35> 지방규제 개선 평가 방안

구분	내용	비고
단기	- 공무원 행태, 자치법규 등 지방규제 개선에 대한 평가 정착시까지는 안행부가 주관	- 평가 정착기
중장기	- 지방규제 평가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 합동평가로 평가를 수렴	- 평가 안정기

❑ 지방규제 개선에 대한 공무원 교육강화

○ 규제와 관련된 법령과 조례, 심지어 자치법규의 개정조차도 모른 채, 이전의 법령과 조례 등으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적지 않음
- 지자체가 발굴하고 있는 규제개선의 애로나 건의사항에서 조차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 형편임

○ 담당 공무원의 순환 보직을 고려하여 최대한 촘촘하게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관한 교육을 시행
- 안행부는 지자체 공무원 규제 개선 교육 교재를 개발, 제공
- 규제개선 지자체 우수사례, 방법, 내용 등도 교육내용에 포함
-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 공무원 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등의 적합한 장소에서 교육을 제공

○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해서도 규제 관련 교육을 강화
-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공통교재를 마련하되,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교육을 제공

○ 지방규제 공무원 교육실적을 부처별, 지자체별로 평가
- 우수한 부처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상, 재원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지방규제 도입 시 비용 평가 의무화

○ 새로운 지방 규제를 고려하고 있을 경우, 그 규제에 대한 비용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
- 법안 비용평가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용과 편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문 편임

○ 특히,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 비용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

- 정부입법은 절차가 까다롭고 비교적 피 규제 대상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법안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지, 어떤 편익이 있는 지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사전규제심사를 거치고 있으나(2010년 개정된 규제영향심사 규정 참조), 의원입법의 경우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므로 비용 편익에 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규제 입법이 만들어질 확률이 큼
- 부록에 제시한 규제 비용 산정의 방법론적 검토를 통해 비교적 타당성이 있다고 검증된 방법론을 매뉴얼화 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보론] 지자체 기업활력지수의 개발 및 활용

1. 지자체 기업활력지수개발의 필요성과 목적

○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동에 대한 지방규제의 문제점은 역대정부에서 핵심적인 사안 중의 하나였음

-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규제개혁→기업 투자촉진→경제 활성화→고용 확대의 고리에서 단초가 규제개혁이라는 인식

○ 박근혜정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개선을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 7. 11)을 계기로 기업의 규제개선이 보다 가속화
- '13년 4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투자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는 대책 마련 지시
-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 5. 1)를 거쳐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 7. 11)에서 기업의 투자를 위한 본격적인 규제개선을 대통령이 지시

※ 중국 시안(西安) 방문시 지방정부가 투자유치를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이 인상적, 동시에 규제완화 성과가 큰 지자체에 인센티브 지원방안 검토

- '13년 4차에 걸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부처 및 지자체의 개선사항을 챙김
- '14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2014, 1. 6)에서도 규제개선장관회의를 직접 챙기는 등 지속적인 규제개선계획을 밝힘

○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중앙정부 규제, 법령 등 다양한 종류의 규제 가운데서도 공무원의 행태 등 지자체 기업규제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0.0%의 기업이 지자체의 규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한다고 응답하고 있음
- 0.0%가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고 응답해 기업인이 느끼는 지자체의 규제 수준은 높게 나타남

<기업에 대한 지자체 규제정도(기업인)>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업활동에 대해서 지자체의 규제가 영향을 미침	빈도	6	34	81	115	61
	%	2.0	11.4	27.3	38.7	20.5
지자체의 규제수준이 기업활동을 저해할 정도로 높음	빈도	12	50	113	83	39
	%	4.0	16.8	38.0	27.9	13.1

○ 특히 규제개선을 포함해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해서 도구의 개발이 필요
-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 등을 측정,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등 부여 필요
- 주민의 행복에 핵심적인 토대가 되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

※ 이런 일환으로 2013년 안행부는 지자체의 규제개선 및 완화를 평가하고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

- 동시에 지자체 규제개선을 정부업무 합동평가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할 예정임

○ 여기서는 규제개선을 포함해서 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자체 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 특히 지수를 개발하는 것임
- 도로 등 인프라 정비, 단체장의 의지 및 공무원의 노력, 지자체의 제도개선 등을 포함해서 지자체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측정,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2. 지자체 기업활력지수와 기업활동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 등 기업지원은 기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해당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고, 다른 지역의 기업을 유치 및 창업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
- 이같은 목적을 달서하기 위해 지자체는 기업활동 활성화와 관련된 제반시책을 추진

○ 기업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다양한 측면에서 경주될 수 있음(행정안전부, 2008)

- 기업과 관련된 규제의 적극적인 완화를 통한 경제 자유도의 향상
- 인적자원 및 자금 등 투입요소의 풍부한 존재

※ 생산거점 이전, 해외 부품업체의 협력 등을 통해 투입요소의 글로벌 조달이 늘어나는 추세로 국내 및 지역내 생산요소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기업활동에 필요한 용지 및 교통 시설 등 인프라
- 노사관계 안정 및 갈등의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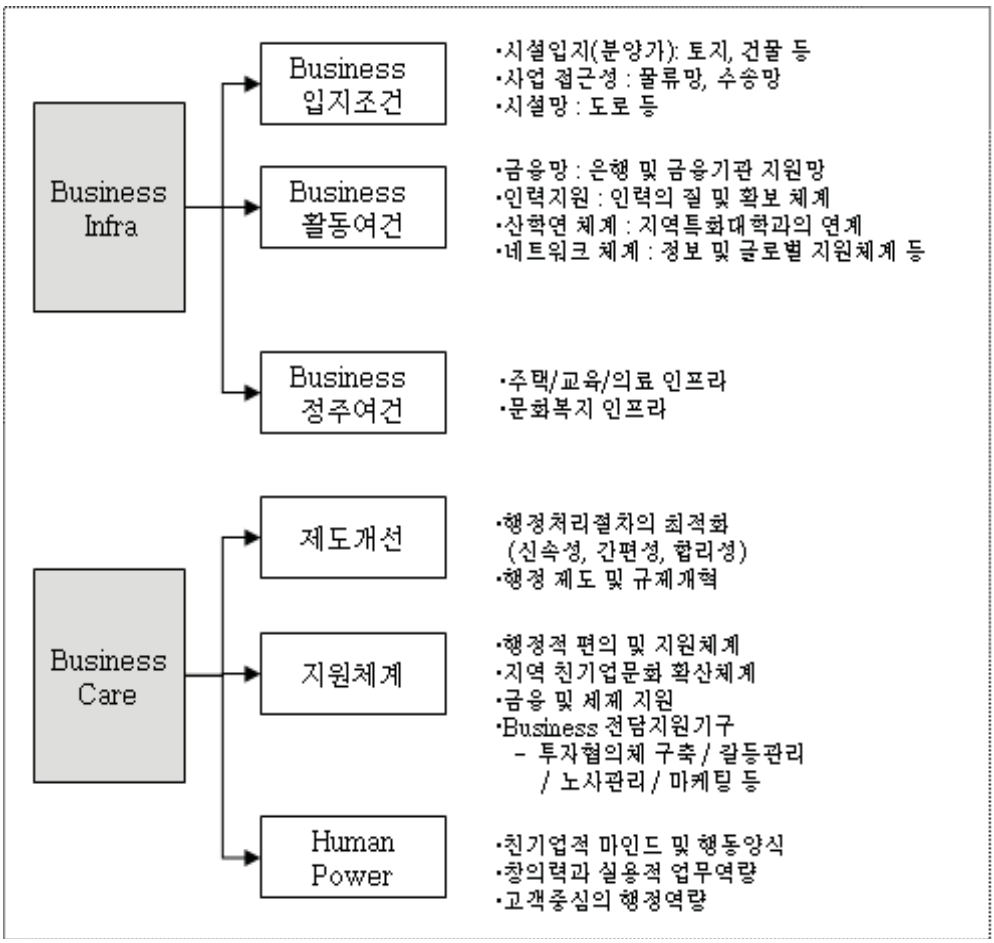
○ 그 외 기업하기 좋은 지역의 환경으로 투입요소, 규제, 사회통합 등을 지적하기도 함

- 투입요소(Input) 측면 : 양질의 인적 자원, 풍부한 물적 자원
- 기업과의 교류 : 기업의 의견청취, 친 기업적인 분위기와 정서
- 인프라 : 지식기반, 지역의 혁신 시스템
- 규제 : 정책의 일관성, 경제활동의 자유, 규제의 개선 및 개혁
- 사회통합 :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회, 기업활동 관련 갈등 최소화
- 기타 환경 : 교육, 주거, 여가 등 삶의 질

○ 지역의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협력을 기업활동 기반과 기업에 대한 지역으로 파악도 가능(행정안전부, 2008)

- 지체의 협력을 기업투자 및 활동을 위한 기반역량 지원과 기업지원 및 협력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
- 기업투자 및 활동을 위한 기반역량의 지원 :
 ① 토지 건물, 물류 및 수송망 등의 입지조건 지원,
 ② 인력지원 및 산학연 체계 등 활동여건 지원,
 ③ 주택, 교육, 교육 및 의료 등의 정주 여건의 지원 등을 포함
- 기업지원 및 협력에 대한 지원 :
 ① 행정처리 신속성, 행정제도 및 규제개선 등의 제도개선
 ② 금융 및 세제지원, 기업지원 조직 및 체계 등의 지원체계
 ③ 친 기업적 지역사회 분위기, 마인드 등의 인적요소

<지자체 기업지원의 측면과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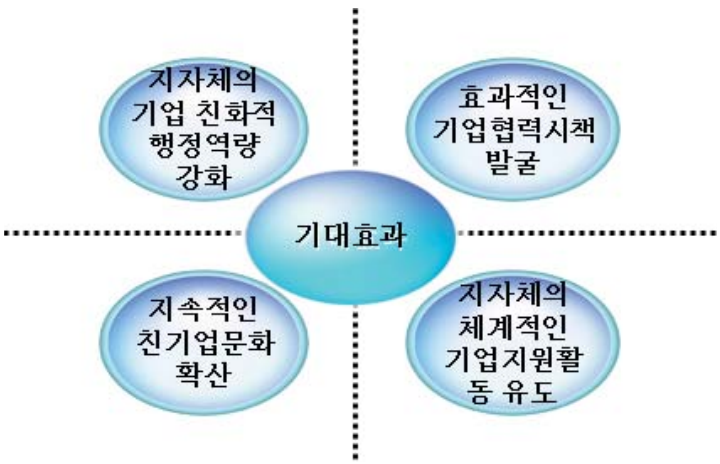
출처 : 행정안전부, 2008

○ 이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자체 기업활력지수(Business Vitality Index; BVI)를 개발함으로써 지자체의 기업활동 활성화를 포함해서 연계된 기대효과가 상당함

- 효과적인 기업협력 시책의 발굴 및 개선, 적용이 가능
- 지자체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위한 교육, 자치단체 조례의 개선 등을 포함해서 보다 체계적인 기업지원활동의 유도가 가능
- 지자체의 기업 친화적인 행정역량을 강화

- 친 기업적인 지역사회의 분위기 형성을 통해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 등이 가능

<기업활력지수와 기업활동 활성화 기대효과>



3. 지자체 기업활력지원 관련 지수의 검토

☐ World Bank의 기업활동(Doing Business) 지수

○ 2009년의 경우, 한국은 181개 국가 가운데 23위를 차지하였음

- 창업, 건축관련 인허가, 고용 및 해고, 재산권 등록, 대출, 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국제교역, 채권회수, 퇴출의 10개 지표로 측정
- 한국은 OECD, 평균인 27위보다 높은 수준이며, 2008년(30위) 보다는 7단계 상승한 순위임
- 10개 분야 가운데 고용 및 해고가 152위, 창업환경 분야는 120위를 차지하고 있음

<2008년 세계은행의 평가지표>

Doing Business
종합평가 (Ease of Doing Business)
창업 (Starting a Business)
건축관련 인허가 (Dealing with Licenses)
고용 . 해고 (Employing Workers)
재산권 등록 (Registering Property)
대출 (Getting Credit)
투자자 보호 (Protecting Investors)
세금납부 (Paying Tax)
국제교역 (Trading Across Borders)
채권회수 (Enforcing Contracts)
퇴출 (Closing a Business)

○ 그러나 2013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활동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7위를 차지하고 있음

- 2013년은 5개 분야에서 11개 지표를 사용해서 지역의 기업지수를 측정하고 있음
- 창업 지원 부문에서는 창업과 노동자의 고용 및 해고의 용이성이 포함
- 입지지원 부문에서는 건축허가 및 전력확보의 용이성, 재산권 등록의 용이성이 포함
- 금융 부문에서는 자금대출과 투자자 보호의 용이성이 포함
- 애로봉착 부문에서는 채권회수 및 신용회복의 용이성이 포함
- 일상조업 부문에서는 세금납부, 국제교역의 용이성이 포함

<2013년 세계은행 기업활동 지원 지수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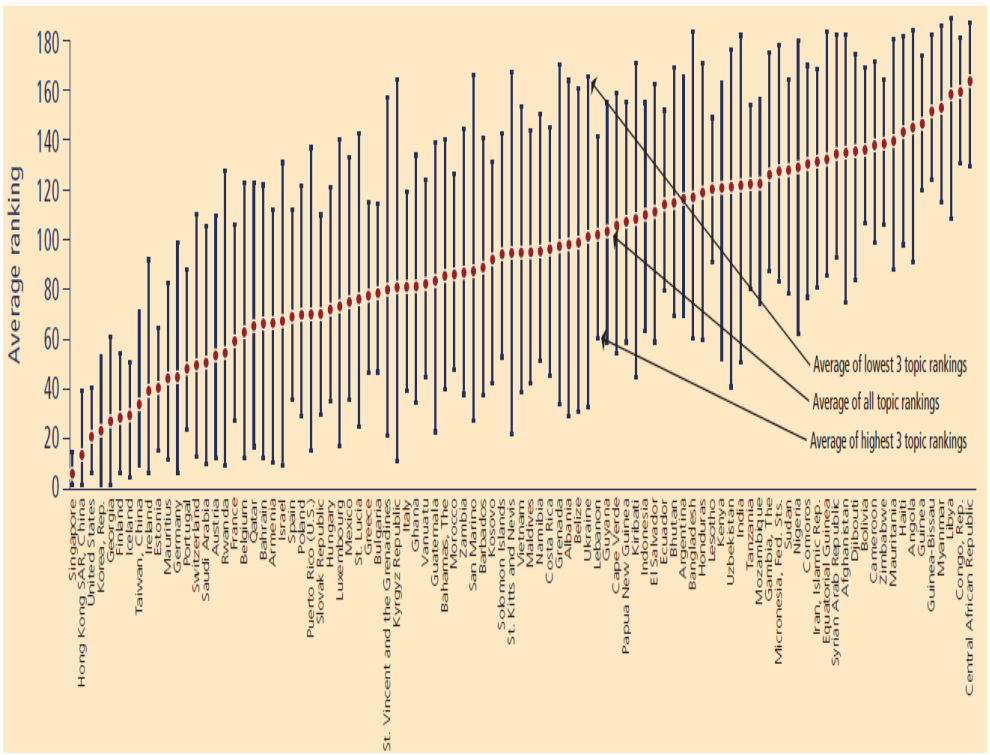
- 2009년의 23위 보다 16단계 상승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지수가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는 싱가폴, 홍콩,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 말레이시아임
- 한국이 상위에 속하는 부문은 전력확보의 용이성(2위), 국제교역의 용이성(3위), 채권회수의 용이성(2위)임
- 반면 한국이 뒤처지는 부문은 창업(34위), 재산권 등록(52위), 투자자 보호(72위) 등이 해당되고 있음

<세계은행의 기업활동 지원 지수의 순위(2003년 6월 현재)>

Economy	Ease of Doing Business Rank ▲	Starting a Business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Getting Electricity	Registering Property	Getting Credit	Protecting Investors	Paying Taxes	Trading Across Borders	Enforcing Contracts	Resolving Insolvency
Singapore	1	3	3	6	28	3	2	5	1	12	4
Hong Kong SAR, China	2	5	1	5	89	3	3	4	2	9	19
New Zealand	3	1	12	45	2	3	1	23	21	18	12
United States	4	20	34	13	25	3	6	64	22	11	17
Denmark	5	40	8	18	7	28	34	12	8	32	10
Malaysia	6	16	43	21	35	1	4	36	5	30	42
Korea, Rep.	7	34	18	2	75	13	52	25	3	2	15
Georgia	8	8	2	54	1	3	16	29	43	33	88
Norway	9	53	28	17	10	73	22	17	26	4	2
United Kingdom	10	28	27	74	68	1	10	14	16	56	7
Australia	11	4	10	34	40	3	68	44	46	14	18
Finland	12	55	36	22	26	42	68	21	9	8	3
Iceland	13	52	41	1	12	42	52	37	50	3	11
Sweden	14	61	24	9	38	42	34	41	6	25	20
Ireland	15	12	115	100	57	13	6	6	20	62	8
Taiwan, China	16	17	7	7	31	73	34	58	18	84	16
Lithuania	17	11	39	75	6	28	68	56	15	17	44
Thailand	18	91	14	12	29	73	12	70	24	22	58
Canada	19	2	116	145	55	28	4	8	45	58	9
Mauritius	20	19	123	48	65	42	12	13	12	54	61
Germany	21	111	12	3	81	28	98	89	14	5	13
Estonia	22	61	38	56	15	42	68	32	7	26	66
United Arab Emirates	23	37	5	4	4	86	98	1	4	100	101
Latvia	24	57	79	83	33	3	68	49	17	21	43
Macedonia, FYR SUBNATIONAL	25	7	63	76	84	3	16	26	89	95	52

출처: http://www.doingbusiness.org/rankings#

<국가별 평균 순위의 분포>



출처: http://www.doingbusiness.org/rank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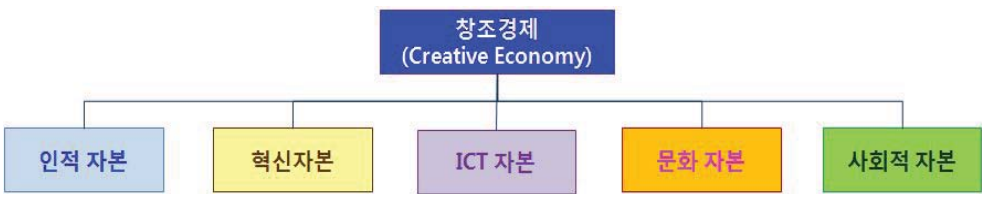
☐ 한국의 창조경제 역량지수

○ 현대경제 연구원은 한국의 창조경제 역량지수를 5개 부문의 지표를 가지고 측정하였음

- 창조경제 역량지수는 창조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지수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현대경제연구원, 2013)
- 5개 부문은 인적 자본, 혁신 자본, ICT 자본,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으로 구성됨
 - 인적 자본 : 노동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입 및 축적, 활용정도와 인적자본의 일시적 이동 및 유동성의 정도
 - 혁신 자본 : 기술혁신을 위한 투입, 중간 및 최종 산출

- ICT 자본 : ICT 자본 축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투입, 활용도 및 그 영향
- 사회적 자본 : 사회전반의 규범과 가치, 자유, 사회적 참여, 사회통합 등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의 정도까지를 포함

<창조경제역량의 구성 요소>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2013, 8월

○ 보다 세부적으로 각 부문은 투입, 성과, 인프라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있음

- 창조경제 역량지수는 창조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지수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현대경제연구원, 2013)
- 인적자본은 GDP 대비 1인당 공공교육의 지출 등이 투입에 해당되며, 성과는 고용율
- 혁신 자본에서는 GDP 대비 R& D 지출액 등이 투입에 해당되며, 인프라에는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벤처의 역할 등이, 성과 부문에서는 하이테크 무역수지비 등이 해당
- ICT 자본에서는 GDP 대비 텔레커뮤니케이션 투자 등이 투입 부문에, 커뮤니케이션 기술력 및 이용료 등이 인프라 부문에, ICT 수출 비중 등이 성과 부분에 해당됨
- 문화 자본에서는 가계 지출 중 문화여가 비중 등이 투입 부문에, 문화유산 수 등이 인프라 부문에, 외국 관광객의 수 및 관광수지 등이 성과 부문에 해당됨

- 사회적 자본에서는 경찰의 서비스 의존도 등이 투입 부문에, 부패지수, 기회평등 등이 인프라 부문에, 삶의 질, 지니계수 등이 성과부문에 해당되고 있음

<창조경제 역량지수 구성의 세부지표>

구분	구성	세부 지표
인적 자본	투입(2)	- GDP 대비 공공교육지출(%) - GDP 대비 1인당 공공교육지출(명목, $)
	성과(2)	- 고용률 - PISA 평가
	인프라(5)	- 대학교육 만족도 - 학교에서의 과학교육 - 중등교육 등록률 - 직원 교육 정도 - 교육시스템 수준
혁신 자본	투입(2)	- GDP 대비 R&D 지출액 - 경제활동인구 1000명 당 연구원 수
	성과(2)	- 하이테크 무역수지비 - 기술무역수지비
	인프라(5)	-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벤처의 역할 - 벤처캐피털 이용성 - 연구원 1인당 과학분야 논문수 - 연구원 1인당 삼극특허수 - 혁신능력
ICT 자본	투입(1)	- GDP 대비 텔레커뮤니케이션 투자
	성과(2)	- ICT가 서비스 및 제품에 미치는 영향 - ICT 수출 비중
	인프라(5)	- 커뮤니케이션 기술력 - 유선 고속통신망 이용료 - 고속통신망 가입자 수 - 정보기술력 - 인터넷 사용자 수
문화 자본	투입(2)	- 가계지출 중 문화여가비 비중 - 관광산업 정부지출
	성과(3)	- 외국인 관광객 수 - 관광수지비 -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수지비
	인프라(4)	- 세계문화유산 수 - 자연자원지수 - 관광산업 발전 지속성 - 관광인프라
사회적 자본	투입(4)	- 개인보안과 사적재산권 - 경찰 서비스 의존도 - 사회적 응집력 - 정의
	성과(4)	- 삶의 질 - 지니계수 - 1인당 GDP - 범죄와 폭력 비용
	인프라(3)	- 부패지수 - 기회평등 - 법 제정의 효율성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2013. 8월

○ 2011년 한국의 창조경제 역량지수는 OECD 37개국 가운데 20위를 차지하고 있음

- 그 가운데 ICT 자본이 가장 우수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혁신자본이 1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사정이 가장 좋지 않은 자본은 문화 자본으로 2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인적 자본이 22위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의 창조역량 지수의 순위>

구분	인적자본	혁신자본	ICT 자본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	창조경제 역량지수
한국	6.5(22)	5.4(11)	8.6(1)	3.7(29)	6.7(21)	6.2(20)
OECD-31 개국 평균	7.3	4.9	6.9	4.7	7.5	6.3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2013, 8월

☐ 기업 투자환경 분석 지표

○ 1996년 한국경제연구원의'우리나라 16개 시도에 대한 기업투자환경분석'에 사용된 지표는 다음과 같음

- 기초투입환경, 정보화 및 기술환경, 인프라 및 사업환경, 지방정부 정책환경 4개 부분에 대해 정성자료와 정량자료의 지표로 구성되고 있음

<기업투자환경 분석 지표>

기업투자환경 정량자료			기업투자환경 정성자료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항목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항목
기초 투입환경	금융	시도별 예금은행기관수/전체인구	기초 투입환경	금융	사업자금 대출절차 간편성
		어음부도율			사업자금 역외유출 정도
		정책자금대출액/예금액 비율			사업자금 조달 소요시간
		대출액/GRDP비율			정책자금 활용 용이성
	노동	사업체 1000개당 파업건수		노동	노동력의 질
		노동자 1인당 실질GRDP금액			노사관계의 안정성
		광공업부문 1인당 급여총액			생산필요인력 채용 용이성
		전체인구 중 대학생			교육기관 교육의 질
	토지	경제활동면적 중 산업단지면적		토지	공장용 토지거래 취득 용이성
		경제활동면적 중 공장용 토지면적			공장용 토지가격의 적정성
		공시지가 수준			산업단지 공급량의 적정성
정보화/ 기술환경	정보화	1000명당 인터넷가입자수	정보화/ 기술환경	정보화	기업간 정보네트워크 구축 정도
		1000명당 개인용컴퓨터 보급대수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용도
		1000명당 정보처리운영 종사자수			정보인프라 구축 비용
	기술개발	연구개발투자액/GRDP비율		기술개발	산학 기술협력
		전체 사업체수 중 연구소수			지역대학 기술개발역량 보유정도
		1000명당 특허출원건수			고급기술인력 채용 용이성
인프라/ 사업환경	인프라	전체면적 대비 도로길이	인프라/ 사업환경	인프라	항만 접근성
		1000명당 의료인력수			공항 접근성
		1000명당 교직자수			물류인프라 확충 정도
		전체기업체 중 운수업체수			편의시설 확보 정도
	사업환경	전체기업체 중 대기업수		사업환경	지역주민의 기업에 대한 태도
		인구밀도			기업간 협력정도
		대형소매점판매액/전체인구수			동종업종 집적단지 발달정도
		소비자물가 상승율			지역관련 준조세 부담정도
지방정부 정책환경		지역개발비/경제개발비	지방정부 정책환경		행정기관의 행정처리속도
		교육+문화+보건+사회개발비/사회지출비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
		지방세감면액/지방세수			기업창업 행정절차의 적정성
		지방정부 청렴도지수			지방정부 기업규제 정도

☐ 지방분권과 시장경제 지표

○ 2008년 자유기업원은‘지방분권과 시장경제’보고서에서 지방의 시장 친화성을 분석

- 여기에 사용된 지표는 작은 정부, 법치 안정, 대외개방, 투자개발, 생산요소, 기업환경 5개 부문으로 구성

<지방의 시장 친화성 분석 지표>

분야	항목	구성요소	관계
작은 정부	공무원수	인구대비 공무원수	(-)
	재정규모	인구대비 재정규모, 인구대비 예산	(-), (-)
	건전성	재정자립도, 인구대비 자체수입	(+), (+)
	청렴성	청렴도지수	(+)
법치 안정	치안상태	인구대비 범죄발생	(-)
	생활안정	소비자물가상승률, 인구대비 도시공원면적	(-), (+)
	소비기반	인구대비 대형소매점판매액	(+)
	재산권보호	인구대비 산업재산권등록	(+)
대외 개방	외국투자	GRDP대비 외국인투자	(+)
	무역비율	GRDP대비 수출, GRDP대비 수입	(+),(+)
	외국인비율	인구대비 외국인	(+)
	인구이동	순인구유입률	(+)
투자 개발	택지개발	면적대비 개발제한구역, 면적대비 농촌진흥지역	(-), (-)
	금융환경	GRDP대비 여신액	(+)
	투자활력	건축허가연면적	(+)
생산 요소	노동력활용	실업률, 종사자수	(-), (+)
	자본활용	사업체수 증가율, GRDP성장률	(+), (+)
	생산능력	유형자산연말잔액 비중	(+)
기업 환경	노동유연성	사업체수대비 파업건수	(-)
	인프라비용	인구대비 도로길이	(+)
	창업위험	어음부도율	(-)
	기술개발	인구대비 R&D연구인력, 경제활동인구대비 대졸이상	(+), (+)

▢ 지자체 기업협력 진단지표

○ 2008년 한국능률협회는'지자체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보고서에서 지자체의 기업협력 진단지표를 개발

- 자자체의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및 협력역량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를 개발

○ 지자체의 기업협력지수를 친기업적 역량으로 파악

- 지자체의 친기업적 역량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총체적 자원(인적자원, 물적자원, 관리적 자원)을 수단 혹은 투입요소로 삼아 지자체의 효율적 내부운영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형성, 축적되는 기업지원이나 협력수준을 지칭

○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의 기업협력역량을 진단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제시

- 투입(input)과 성과(performance)라는 일련의 순환적 메카니즘 차원에서 지표를 구성하고 있음

※ 투입요소에는 Driver(리더십과 기업협력 추진시책)와 Infra(Business Infra와 Business Care)가 해당되고 Performance에는 기업만족도 및 지역경제효과가 해당됨

<지자체 기업협력지수의 구성>

측정부문		관심영역	
		1차 관심영역	2차 관심영역
투입요소 (Input)	리더십	기관장 기업마인드 직원 기업마인드	기관장 관심과 의지 직원협력수준
	기업유치 및 산업육성시책	기업유치 지역전략산업육성 지역경제활성화	기업유치시책 지역전략산업육성시책 지역경제활성화시책
	친기업 인프라	기업입지조건 기업경영여건 직원정주여건	공장부지, 수송(물류)망, 도로, 정보통신, 상수도 금융기관, 대학(인적자원), 산학연연계, 편의시설, 정보네트워크, 유관협의회 및 단체 주택보급,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문화복지서비스

측정부문		관심영역	
		1차 관심영역	2차 관심영역
	친기업 지원시책	제도개선 전담조직 및 인력 행·재정지원시책	규제완화, 프로세스개선(절차간소화), 기업애로 및 불편사항 해소 전담조직(기구), 전문인력 금융지원, R&D지원, 산학연관 협력프로그램, 노사화합지원, 인력제공지원, 마케팅지원, 기술지원, 정보지원, 홍보지원, 교육연수지원
운영과정 (Process)	내부관리체계	모니터링 체계 평가 및 환류체계 예산규모	주기적 지도·점검, 기업방문 확인 주기적 평가 및 시정조치 기업지원 및 운영예산
성과 (perfor-mance)	기업만족도	투자여건만족도 기업활동만족도	투자여건만족도 기업활동만족도
	지역경제효과	일자리창출 연계산업 창출 소득창출	고용유발 관련산업집적 소득증대

❑ Heritage 경제자유도 지수

○ 매년 헤리티지 재단은 세계 각국의 경제 자유도 지수(The Index of Economic Freedom)를 발표하고 있음

- 지표는 법률, 정부의 지원, 시장 개방성, 규제 효율성 등의 4개 부문 10개 지표로 구성

<경제 자유도 지표의 구성>

부문	지표	비고
Rule of Law	- Property Rights	- 재산권 보호의 정도
	- Freedom from Corruption	- 부패지수의 투명도
Limited Government	- Fiscal Freedom	- 개인소득 대비 세율
	- Government Spending	- GDP 대비 국가지출
Open Market	- Trade Freedom	- 무역거래 자유도
	- Investment Freedom	- 투자 자유도
	- Financial Freedom	- 은행금융 개방도
Regulatory Efficiency	- Business Freedom	- 창업, 폐업 등 자유도
	- Monetary Freedom	- 가격규제 등
	- Labor Freedom	- 최저임금 등

출처: http://www.heritage.org/index/ranking

○ 2013년 한국의 경제 자유도는 173개 국가 가운데 31위를 차지하고 있음

- "Free(6개 국가), Mostly Free(28개 국가), Moderately Free(54개 국가), Mostly Unfree, Repressed, Not Ranked"의 6등급으로 구분한 가운데 한국은 Mostly Free에 해당되고 있음

※ 가장 자유로운 국가는 홍콩이며 그 다음은 싱가폴, 호주, 스위스,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순위를 보이고 있음

<세계 각국의 경제 자유도 순위>

FREE (100 - 80)

RANK	COUNTRY	OVERALL	CHANGE
1	Hong Kong	90.1	+0.8 ▲
2	Singapore	89.4	+1.4 ▲
3	Australia	82.0	-0.6 ▼
4	Switzerland	81.6	+0.6 ▲
5	New Zealand	81.2	-0.2 ▼
6	Canada	80.2	+0.8 ▲

MOSTLY FREE (79.9 - 70)

RANK	COUNTRY	OVERALL	CHANGE
7	Chile	78.7	-0.3 ▼
8	Mauritius	76.5	-0.4 ▼
9	Ireland	76.2	+0.5 ▲
10	Denmark	76.1	0.0 —
11	Estonia	75.9	+0.6 ▲
12	United States	75.5	-0.5 ▼
13	Bahrain	75.1	-0.4 ▼
14	United Kingdom	74.9	+0.1 ▲
15	The Netherlands	74.2	+0.7 ▲
16	Luxembourg	74.2	0.0 —
17	Taiwan	73.9	+1.2 ▲
18	Germany	73.4	+0.6 ▲
19	Finland	73.4	-0.6 ▼
20	Sweden	73.1	+0.2 ▲
21	Lithuania	73.0	+0.9 ▲
22	Georgia	72.6	+0.4 ▲
23	Iceland	72.4	+0.3 ▲
24	Austria	72.4	+0.6 ▲
25	Japan	72.4	+0.6 ▲
26	Czech Republic	72.2	+1.3 ▲
27	Botswana	72.0	+1.4 ▲
28	United Arab Emirates	71.4	+0.3 ▲
29	Macau	71.3	-0.4 ▼
30	Qatar	71.2	-0.1 ▼
31	South Korea	71.2	+0.9 ▲
32	Norway	70.9	+0.4 ▲
33	Saint Lucia	70.7	+0.3 ▲
34	Colombia	70.7	+1.1 ▲

출처: http://www.heritage.org/index/ranking

4. 지자체 기업활력지수의 개발

☐ 지수개발의 접근

○ 규제 개선 등을 통한 지자체의 기업활동지원은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 투자나 기업유치, 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의 지위를 가지는 측면을 지수에 고려할 수 있는 방향에서 지수를 개발

○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이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실제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도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 개발한 지표가 안행부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기업지원을 독려,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촉발할 수 있는 유용성 있는 지표를 개발

-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규제개선을 포함한 기업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 지자체의 규제는 국민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항을 다루는 만큼,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사항의 적용 등을 포함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 중앙정부의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자치법규의 지방규제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
- 또한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소극적 행태를 보여서 암묵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

○ 지자체의 기업활력지수 개발의 최종적인 목표는 소극적, 적극적 방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임

- 소극적으로는 지자체의 규제, 행태개선 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는 기업활성화 환경 구축을 통한 기업활동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수개발에는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이 있는데 여기서의 지자체 기업활력지수는 연역적 접근을 선택할 것임

- 연역적 접근은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를 구성하는 1차 하위요소, 1차 하위요소를 구성하는 차 하위요소 등으로 연역적으로 분해해서 대표적인 지표를 구성하는 것음

※ 실전적으로는 연역적 사고에 의해 사전적으로 설정한 측정부문을 구체화할 수 있는 순차적(1차, 2차, 3차 등) 기준을 정해 실측 가능한 요소를 최종적으로 추출하여 지표로 사용하는 방법

- 귀납적 방법은 측정부문과 측정지표를 정해 놓고 통계적 기법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지표를 선정하는 것임

※ 통계적 기법으로는 결과, 목적과 관련성이 높은 것을 추출하기 위한 요인 분석 등의 기법을 적용

☐ 지자체의 기업활력지수

○ 지자체의 기업활력은 해당 지자체에서 기업활동 활성화에 관계되는 지자체의 제반 역량을 지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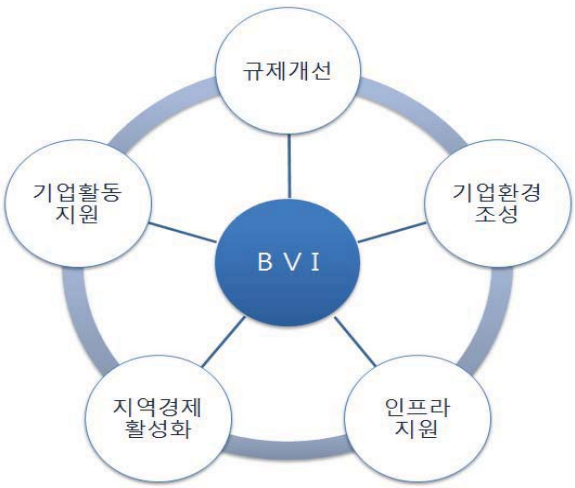
○ 기업활력에 관계되는 지자체의 제반 역량은 규제개선, 지자체의 행태 등 제도요소,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지 등 인프라 요소, 기업애로 해소 지원, 단체장의 의지 및 공무원의 역량, 기업유치 성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업애로 대응, 규제개혁, 기업유치 활동, 행정지원, 산업단지 및 인프라 지원, 단체장의 의지 등을 종합한 자치단체 기업활력지수를 개발

〈 기업활력지수의 주요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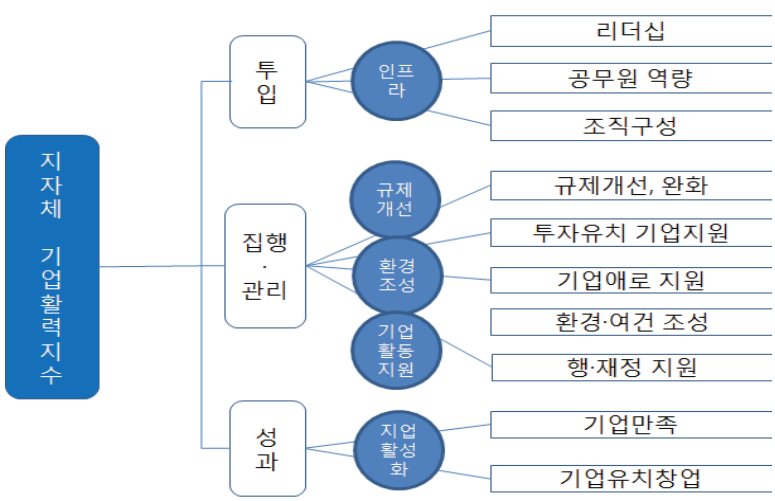
△ 단체장 의지와 관심, 공무원 행태, 규제개선, 원스톱 지원, 민원처리 사항 등 포함

<기업활력지수 구성 부문>



○ 위의 개념적 정의와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지자체의 기업활력지수는 투입 측면의 규개개선 인프라, 집행 및 관리 측면의 규제개선 및 기업지원, 성과로서의 기업유치 등의 3가지 측면에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자체 기업활력지수의 구성>



❑ 지자체 기업활력지수의 세부구성

○ 인프라 구축, 기업환경 조성, 규제개선, 기업활동지원, 지역경제활성화 부문에 38개 지표로 구성

부문	항목	1차 항목	측정지표
규제 인프라 구축 (7)	계획수립	규제계획 추진계획	- 규제개획 추진계획수립도
	리더십	단체장 규제개혁 관심도	- 단체장 주관회의 개최회수
			- 단체장 기업간담회 개최회수
	공무원 역량	규제개선 공무원 교육	- 규제개선 공무원 교육회수
	조직구성	규제개선 전담조직 구성	- 규제개선 전담조직 구성
			- 규제신고센터 설치 여부
			- 인허가 전담창구 개설운영
	협력기반	기업활동 지원기반 조성	-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실적
기업환경 조성 (7)	입지여건	부지 지원	- 전년대비 공장용지면적 증가율
		진입로	- 진입로 지원여부
		상하수도 및 전기	- 상하수도 및 전기 공급율
	생활여건	주택보급	- 전년 대비 주택보급 증가율
		교육	- 전년 대비 초중고 교사 증가율
		문화·복지	- 전년 대비 문화복지예산증가율
	시책조성	기업유치 시책	- 기업유치 관련 시책 우수성
규제 개선 (15)	규제개선 건의	규제개선 건의 실적	- 안행부 법령규제 개선건의 건수
			- 중기청 법령규제 개선건의 건수
	규제정보	변경 법령규제 공유	- 법령규제변경 행정망 공지율
		규제통합정보시스템 공유	- 규제개선내용 실시간 공유도
	자치법규 개선	법령개정 자치법규 개선 실적	- 조례·규칙 개선율
			- 조례·규칙 개선 우수사례
			- 법령개정 공무원 숙지도
	지방규제 완화	규제 완화 추진실적	- 지자체 등록규제 정비율
			- 지방규제완화 우수과제 발굴건수
	규제사례	규제개선 우수사례	- 중앙부처 법령개선 반영 우수사례
			- 자치법규 개선 반영 우수사례
			- 인허가 행태개선 우수사례
	공무원 행태	공무원 행태개선	- 공무원 규제개선 건의 우수사례
			- 공무원 행태개선 우수사례 발굴도
			- 공무원 행태개선 우수사례 시상
기업활동 지원 (6)	행·재정 지원	행정지원	- 산학연관 협력 프로그램수
		재정지원	- 일반회계예산 대비 기업지원액
			- 신청업체수 대비 R&D 지원업체수
	애로해소	애로발굴 해소	- 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실적
			- 기업애로 해소 처리율
			- 기업애로 전담부서 설치실적
			- 기업현장 애로발굴 해소 사례
	창업·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 창업·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사례
		창원자금 지원	- 창업자금지원율
지역경제 활성화 (3)	기업만족	기업만족도	- 지자체 기업 지원 만족도
			- 지자체 규제개선 지원 만족도
	기업활동성과	기업유치 및 창업	- 해외투자 협약건수
			- 기업유치 고용창출수
			- 창업 기업수

▢ 세부 측정지표의 내용

1차 항목	측정지표	측정내용
규제계획 추진계획	- 규제개혁 추진계획수립도	- 지자체 규제개혁 수립내용(정성)
단체장 규제개혁 관심도	- 단체장 주관회의 개최회수	- 분기별 단체장 주관 규제개선 회의회수
	- 단체장 기업간담회 개최회수	- 분기별 단체장 주관 간담회 개최회수
규제개선 공무원 교육	- 규제개선 공무원 교육회수	- 규제개선 교육회수*교육참가인원
규제개선 전담조직 구성	- 규제개선 전담조직 구성	- 규제개선 전담조직 구성의 내용(정성)
	- 규제신고센터 설치 여부	- 지자체 규제개선 신고센터 설치여부
	- 인허가 전담창구 개설운영	- 지자체 인허가 전담창구 개설운영 여부
기업활동 지원기반 조성	-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실적	-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실적(정성)
부지 지원	- 전년대비 공장용지면적 증가율	- (현년도-전년도 공장면적)전년도*100
진입로	- 진입로 지원여부	- 지자체의 도로 지원(정성)
상하수도 및 전기	- 상하수도 및 전기 공급율	- 상하수도 및 전기공급/기업수*100
주택보급	- 전년 대비 주택보급 증가율	- 현년도 보급율-전년도 주택보급율
교육	- 전년 대비 초중고 교사 증가율	- 현년도 교사율-전년도 교사율
문화·복지	- 전년 대비 문화복지예산 증가율	- 현년도 문화복지예산-전년도 문화복지예산
기업유치 시책	- 기업유치 관련 시책 우수성	- 우수한 기업유치 관련 시책(정성)
규제개선 건의 실적	- 안행부 법령규제 개선건의 건수	- 지자체의 안행부 법령규제 개선건 수
	- 중기청 법령규제 개선건의 건수	- 지자체의 중기청 법령규제 개선건 수
변경 법령규제 공유	- 법령규제변경 행정망 공지율	- 공지법령수/변경법령수*100
규제통합정보시스템 공유	- 규제개선내용 실시간 공유도	- 규제개선 후 규제통합정보시스템 공개
법령개정 자치법규 개선실적	- 조례·규칙 개선율	- 조례, 규칙 개선수/개정법령수*100
	- 조례·규칙 개선 우수사례	- 개정법령 연계 조례규칙 개선사례(정성)
	- 법령개정 공무원 숙지도	- 법령개정에 대한 공무원의 인지(정성)
규제 완화 추진실적	- 지자체 등록규제 정비율	- 정비규제수/등록규제수*100
	- 지방규제완화 우수과제 발굴건수	- 규제완화 우수과제 발굴사례(정성)
규제개선 우수사례	- 중앙부처 법령개선 반영 우수사례	- 지자체 법령 개정 우수 규제개선 사례(정성)
	- 자치법규 개선 반영 우수사례	- 지자체 자치법규 개선 우수사례(정성)
	- 인허가 행태개선 우수사례	- 지자체 인허가 행태개선 우수 사례(정성)
공무원 행태개선	- 공무원 규제개선 건의 우수사례	- 건의한 규제개선 사례의 우수성(정성)
	- 공무원 행태개선 우수사례 발굴도	- 우수한 공무원 행태개선 사례(정성)
	- 공무원 행태개선 우수사례 시상	- 우수 행태개선 사례에 대한 시상(정성)
행정지원	- 산학연관 협력 프로그램수	- 지자체 기업지원 산학연관 협력프로그램수
재정지원	- 일반회계예산 대비 기업지원액	- 기업지원액/일반회계총액*100
	- 신청업체수 대비 R&D 지원업체수	- R&D 지원업체수/신청업체수*100
애로발굴 해소	- 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실적	- 지자체 개선과제 및 건의과제 건수
	- 기업애로 해소 처리율	- 애로해소건수/총 건의건수*100
	- 기업애로 전담부서 설치실적	- 기업애로 해소 전담부서 설치(정성)
	- 기업현장 애로발굴 해소 사례	- 애로해소 사례의 우수성(정성)
원스톱 지원	- 창업·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사례	- 창업,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사례(정성)
창원자금 지원	- 창업자금지원율	- 자금지원 기업수/요청 기업수*100
기업만족도	- 지자체 기업 지원 만족도	- 지자체 기업지원 설문의 만족응답수
	- 지자체 규제개선 지원 만족도	- 지자체의 규제개선 만족 응답수
기업유치 및 창업	- 해외투자 협약건수	- 지자체 해외 투자협약체결 건수
	- 기업유치 고용창출수	- 기업유치 고용창출의 개수
	- 창업 기업수	- 지역의 창업한 기업의 수

5. 지자체 기업활력지수의 활용

☐ 자치단체 평가

○ 구축한 지표를 토대로 자치단체의 기업활력 및 지원 정도를 평가

- 평가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평가

※ 자치단체는 평가 관련 데이터 준비

○ 종합부문 및 세부부문별 평가결과의 산출

- 자치단체 기업친화 종합부문 평가 (상, 중, 하)
- 기업친화 세부 부문별 평가

○ 독자적인 평가 뿐 아니라 합동평가와 연계하여 평가 시행

- 독자적인 평가는 안행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행
- 지자체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합동평가의 중점평가로 평가를 수행

※ 평가결과 하위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진단 차원의 2단계 평가시행

☐ 자치단체 포상 및 시상

○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

-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자치단체를 시장

○ 우수 단체장, 우수 공무원 시상

- 지자체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 단체장, 우수 공무원도 선정하여 시상

☐ 자치단체별 권고안 작성

- 자치단체별로 규제개선 및 기업친화 권고안 작성
- 권고안은 지자체별로 작성하여, 해당지역, 중앙부처 등에 제공
- 권고안을 받은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은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반영

<자치단체 BVI 평가절차>

자치단체 BVI 평가 (분석지표 적용)	◦ 자치단체별 BVI 지수 산출 ◦ 단독평가 및 합동평가 시행 ◦ 종합평가 및 부문별 평가 : 상, 중, 하 그룹산출 - 상위, 중위, 하위 그룹화 - 단체장, 공무원도 시상
▼	
권고안 작성 유형별 정책처방	◦ 평가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권고안 작성 ◦ BVI에 의한 유형별 맞춤식 처방작성 ◦ 자치단체 권고안 및 처방 제공
▼	
개선계획 수립, 시행	◦ 권고안 및 맞춤형 정책제안에 따라 개선계획 수립 ◦ 개선계획의 실행을 통한 기업활력제고 시책 추진
▼	
평 가	◦ 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 중간점검 평가(분기 혹은 반기별) - 종합평가 (매년) . 개별평가 + 합동평가 병행

〈부록 1〉 규제비용의 분석 : 방법과 사례

1. 비용산출의 방법

○ 규제의 비용을 수치적으로 계량화하는 일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움
- 정부규제에 따르는 비용은 행정비용과 민간의 규제순응 비용으로 나눌 수 있음
- 행정비용은 비교적 파악이 용이하지만 민간의 규제 순응비용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규제순응 비용으로 피규제기업이 자신의 부담을 과장할 수 있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규제의 비용을 수치적으로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그 규제의 전체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함
- 규제의 목적이 무엇이며, 규제의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규제가 작동되는 지를 개괄적으로 파악
- 각 단계별로 행정비용과 규제순응 비용을 구분하여 파악

○ 행정비용의 산정
- 행정비용의 산정을 위해서는 규제를 위해 어떤 기관이 관여하며, 실제 규제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소요되며,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를 각 규제의 단계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소요인원의 투여시간과 시간당 단위 임금액, 소요장비의 대여시간과 시간당 대여금액을 이용하여 실제 행정비용을 산출함
- 일반적으로 규제를 위한 기관이 이미 존재하고, 그 기관의 공무원이 규제를 진행하게 되므로, 특별한 추가 소요인원이나 추가 소요장비가 투여되지 않는 한, 규제 비용 중 행정비용은 계산하지 않음.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기 계산되어 반영되고 있기 때문임

○ 규제순응 비용의 산정

- 규제순응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특징을 파악하고, 규제로 인해 그 기업이 입을 수 있는 직접적인 피해액을 파악해야 하며, 또한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그 규제가 없었을 경우 기업이 추가로 투자할 용의가 있는 금액과 추가로 고용할 용의가 있는 종업원 수를 파악함
- 직접적인 피해액(명시적 회계비용)과 기회비용(암묵적 비용)을 합친 것이 규제순응 비용임
- 암묵적 비용만을 사용하느냐 직접적인 피해액도 더해서 사용하느냐는 학계의 논란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조사하려 하였으나, 설문의 수정으로 인해 실제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임

○ 규제의 사회적 영향 비용파악

- 규제는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개별기업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과 긴밀히 연관되는 기업들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규제의 비용 파악을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기업들의 순응비용뿐만 아니라 규제의 사회적 영향 비용도 계산해줄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IMPLAN, REMI 등 투입산출 모형을 기반으로 한 상용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용이하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부재한 상태임
-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산업 연관표를 이용하여 최종수요변화의 승수효과를 계산한 후 규제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으나 이는 국가 경제수준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계산해 줄 수 있을 뿐,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별 투입산출 계산은 어려운 상태임

○ 규제순응 비용의 측정과 조정

- 규제비용 산출을 위해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방법은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조건부 가치 평가법)임

- 특정 규제의 경우 해당되는 각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규제와 관련된 직접비용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각 기업의 기회비용을 파악하는 작업이 진행될 수 있으나, 본 과제의 성격상 특정 규제가 아닌 경제규제를 통괄하여 살펴보는 것이므로 방법론상 CVM보다 우월한 대안을 찾을 수 없었음
- 규제순응비용 조사 시 피규제기업은 늘 자신의 부담을 과장하고 자신의 이득을 축소할 유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제순응 비용을 산정할 때는 주의가 필요함
- 실제 CVM 구성 시 가능한 한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특성변수에 종업원 수를 조사하였음. 예컨대 직원 수가 3~4명에 불과한 중소기업이 규제순응 비용을 10억 이상으로 응답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를 분석에서 제외하기 위함임
- 그러나 여전히 비용이 과다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특정 알고리듬을 통해 가능한 한 실제에 가까운 CVM 결과가 나오도록 수치를 조정하였음
-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중소제조업체의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원 미만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 설문대상이 중소기업이므로 규제순응 비용이 1,500억 원이 넘는다고 응답한 기업의 응답결과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중소기업 최대 매출을 능가하는 규제순응 비용이 존재한다면 그 중소기업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임
- 100만원 단위로 응답을 요청하였으나, 화폐단위에 대한 혼란으로 과다응답된 경우도 많았음. 이를 다 제외할 경우 분석 샘플 수가 너무 줄어들게 되므로, 다음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조정하였음
- 설문대상은 중소기업이고 2013년 현재 중소기업의 직원 평균 임금은 연봉 2,000만원 수준임. 이를 이용하여 직원 임금 총액을 계산하여 응

답한 규제순응비용이 직원 연봉 총액이 넘는다고 응답한 기업의 응답 결과는 백만 원 단위가 아닌 천원 단위로 바꾸어 계산하였음

2. 비용의 산출

○ 규제비용의 산출

- 상기 알고리듬을 통해 걸러내고 조정한 샘플은 84개 기업이었음
- 규제순응비용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천억 원에 달하여 표준편차가 아주 컸음
-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평균 14억 정도의 규제순응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

	응답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규제비용	84	200,000	100,000,000,000	1,488,151,905	11,006,271,954

○ 각 산업 유형별로 규제 순응 비용을 분석해 본 결과, 제조업의 규제 순응 비용이 평균 21억으로 타 산업에 비해서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공장 입지 규제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설문의 축소로 인해 판단할 근거가 미비함

구분	규제비용
평균	1,488,151,905
제조업	2,150,514,286
건설업	20,000,000
서비스업	195,650,435
유통업	6,000,000
기타	10,000,000

○ 기업의 성장단계별 규제 순응 비용 분석

- 창업 후 초기단계의 규제 순응 비용이 평균 63억 원에 달해 가장 컸으며, 기업의 성숙기에 이른 시장 확대 단계의 규제 순응 비용이 평균 11억 원에 달해 다른 단계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창업을 위한 입지 선정과 사업 허가 등에 많은 규제 순응 비용이 들어가며, 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공장의 추가 확장 등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많은 규제 순응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됨
- 이 역시 설문의 축소로 인해 판단할 근거가 미비함

구분	규제비용
평균	1,488,151,905
창업 후 초기단계	6,259,081,250
성장기(시장 확보 단계)	112,048,485
성숙기(시장 확대 단계)	1,085,791,176
안정기(후속 상품 개발)	68,000,000
정체기	173,672,143

○ 규제비용과 기타변수들과의 상관관계 분석

- 규제의 영향, 규제의 강도, 법령 규제의 영향, 조례규제의 영향, 공무원 행태의 영향 등이 규제비용과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해 보았으나, 규제순응비용은 상기 어느 항목과도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규제의 영향	규제의 강도	법령규제의 영향	조례규제의 영향	공무원 행태의 영향	규제비용
규제의 영향	1					
규제의 강도	.806**	1				
법령규제의 영향	.483**	.545**	1			
조례규제의 영향	.656**	.735**	.620**	1		
공무원 행태의 영향	.601**	.697**	.440**	.651**	1	
규제비용	.127	.154	.188	.187	.130	1

〈부록 2〉 지방규제 개선사례

1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 용적률 완화(1-40)

1. 현황 및 문제점

❑ 산업단지의 용적률은 일반적으로 산업단지가 속한 용도지역인 공업지역의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 받음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용적률 기준인 150% 이상 4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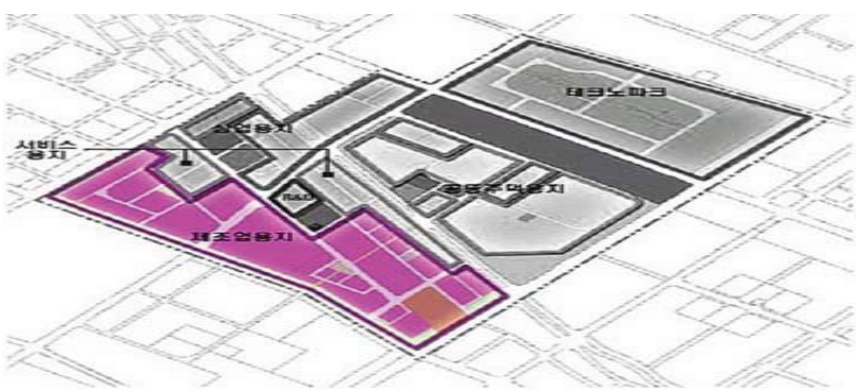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면적의 합계)의 비율

❑ 공업지역과 산업단지의 용적률이 동일하면 산업단지 입주로 인한 인센티브가 적어, 기업은 개발이익 취득 가능성 등으로 인해 개별입지를 선호하여 국토의 난개발 결과 초래

○ 또한 기존에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성장한 기업은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시설확장에 제한을 받고 있어, 중소기업의 성장에 장해요소로 작용

< 문제가 되는 지역의 세부적인 현장 도면 >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해서 완화된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 토지이용 효율성 향상

<공업지역에 설치된 산업단지 용적률 현황>

시·군	공업지역	공업지역 중 산업단지
김포시	전용 : 300% 일반 : 350% 준 : 400%	전용 : 아파트형 공장 250% 일반 :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350% 준 : 지식산업센터 300%, 산업단지 350%
남양주시	전용 : 300% 일반 : 350% 준 : 400%	전용 : 산업단지 300% 일반 : 산업단지 350% 준 : 산업단지 400%, 공동주택 270%
용인시	전용 : 300% 일반 : 350% 준 : 400%	전용 : 산업단지·준산업단지 300% 일반 : 산업단지·준산업단지 350% 준 : 산업단지·준산업단지 400%
파주시	전용 : 300% 일반 : 350% 준 : 400%	전용 : 산업단지 300% 일반 : 산업단지 350% 준 : 산업단지 400%
천안시	전용 : 300% 일반 : 350% 준 : 400%	전용 : 200% 일반 : 아파트형공장 350% 준 : 아파트형공장 350%
평택시	전용 : 300% 일반 : 350% 준 : 400%	전용 : 산업단지 공장 300% 일반 : 산업단지 공장 350% 준 : 산업단지 공장 400%
당진시	전용 : 300% 일반 : 350% 준 : 400%	전용 : 200% 일반 : 아파트형공장 350% 준 : 아파트형공장 350%

* 산업단지 :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2. 법령의 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1항 및 시행령 제85조 1항은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도시지역 등의 용적율을 규정하고 있음

○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

로 정함을 규정하고 있음

○ 그 중 공업지역의 용적율은 400퍼센트 이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구규모, 용도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함을 규정

○ 시행령 제85조제1항은 전용공업지역 300, 일반공업 50,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

-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 시행령 제85조제1항(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 비도시지역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완화된 용적율(125% 이하) 적용이 가능

※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이 가능

<비도시지역 용적률>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50%이상 80%이하
	생산관리지역	50%이상 80%이하
	계획관리지역	50%이상 100%이하
농림지역		50%이상 80%이하
자연환경 보전지역		50%이상 80%이하

❑ 관련 법령의 검토에 의하면, 관리지역을 제외하고는 용적율의 완화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법78조의 제4항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용적율 상승의 여지 보유

3. 개선방향

❑ 공업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규정 마련

○ 2012년 4월 10일 개정, 완화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업지구 용적율 완화 추진

❑ 현재의 법률 내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용적율 상향과 관련된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도 가능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법78조 규정에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용적율을 상향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

* 조치필요사항 :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는 검토 중

4. 기대효과

❑ 산업단지내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토지의 효율적 공급

○ 한정된 토지에 보다 많은 기업의 입주가 가능해지고 기업의 추가적인 고용 창출이 가능

※ 송도 지식정보 산업단지의 경우 : 00개 기업입지와 000명의 추가적인 고용창출

❑ 지자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 기업에 대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로 인해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 산업연관 분석에 의하면 도시 전체에 대한 전후방 연계효과가 00임

❑ 산업단지의 고품격화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

○ 공개공지, 주차공간, 녹지 등 반영여부에 따라 용적율 인센티브와 연계함으로써 산업단지 품격 제고

○ 계획입지를 통해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입주기업의 성장을 통한 도시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

2 산업단지 민간개발자에 대한 개발이익 현실화

1. 현황 및 문제점

❑ 산업단지 민간개발자의 개발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성원가에 15%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업단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산입법 시행령 개정(2009.7.1)

○ 산입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조례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지자체 중 유일하게 충청남도에서만「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 적정이윤 비율을 규정

○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르면, 적정 이윤은 자본비용, 개발대행공사비, 선수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하고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은 100분의 12 이하로 할 수 있음

□ 지자체들은 조례를 제정하는 대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8호「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따르고 있음

○ 충남도 역시 조례에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인용하고 있음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개발대행공사비, 선수금을 제외한 금액의 6%가 적정이윤으로 규정되어 있음

□ KDI에서 공공투자사업 심사 시 활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이 5.5%임을 감안할 때, 개발이익률 6%는 금융권이나 건설회사의 산업단지개발사업 투자를 막는 요인이라 볼 수 있음

○ 공공투자사업 심사 시 활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은 통상 그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시장 할인율에 비해 낮음

○ 사회적 할인율과 큰 차이가 없는 낮은 개발이익률은 산업단지개발사업 투자를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음

2. 법령의 검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는 산업입지 분양가격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본 시행령은 40조 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적정이윤을 붙여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적정이윤의 상한선을 조성원가의 15%로 정하고 세부 사항을 조례로 수권하였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2011.4.6>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7.10.4, 2008.2.29, 2009.6.30>

□ 산입법 및 산입법 시행령의 관할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행정규칙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8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제작하여 시행령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음

○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개발대행공사비, 선수금을 제외한 금액의 6%를 적정이윤으로 규정하고 있음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 2(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⑨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같은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동법 시행령 제40조제7항에 따른 조성원가(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의 경우에는 건축원가를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6으로 한다. <개정 2008.12.4>
1. 자본비용
2. 산업입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3. 산업입지법 제32조에 따른 선수금
[본조신설 2008.1.4]

❑ 충남도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령에서 수권받은 적정 이윤율을 정하고 있음

○ 적정 이윤은 자본비용, 개발대행공사비, 선수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하고 균형발전 지원대상 지역은 100분의 12 이하로 할 수 있음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18조(분양가격 결정시 이윤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윤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산업입지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26조의2 제9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2조에 따른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은 100분의 12 이하로 할 수 있다.

❑ 관련 법령의 검토에 의하면, 충남도의 사례를 따라 지역별로 수권받은 적정이윤율을 규정해주는 것이 필요함

○ 상위법으로부터의 수권규정이 존재함에도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것은 법령의 흠결로 볼 수 있음

○ 통합지침은 행정규칙으로서 조례의 하위 단계 규범에 불과하나, 시행령을 구체화 시킨다는 그 특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자체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조례의 상위 단계 규범 취급을 받고 있음

3. 개선방향

❑ 법체계 상 조례의 위상에 관한 검토 필요

○ 통합지침은 행정규칙으로서 조례의 하위 단계 규범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조례의 상위 단계 규범 취급을 받고 있음

○ 재원의 중앙의존비율이 높은 지자체로서는 중앙부처의 지침을 무시하고 행동하기 힘든 상황임

❑ 중앙부처 지침에 관한 검토 필요

○ 상위법에서 조례로 수권한 경우,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부처의 지침하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예시가 필요한 규정의 경우, 중앙부처 지침은 그저 예시에 불과함을 분명히 밝히고, 확정적 수치보다는 그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론을 지침으로 내려야 할 것임

❑ 지자체의 역량제고와 수권 규정에 관한 관심 필요

○ 적정이윤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나, 지자체 역량의 한계 혹은 무관심으로 인해 지역 고유의 적정이윤 산출노력을 하지 않고 지침에 무작정 따르는 경향도 있음

○ 시행령에서 조례에 수권한 이유는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적정이윤을 산출하여 반영하라는 요구도 있으므로 지자체의 역량 개발 및 수권 규정에 관한 관심이 요구됨

❑ 지자체의 수권 규정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본 조항 이외에도 조례를 통한 수권 규정을 명시한 상위 법안이 다양하나, 실제로 지자체가 그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아 흠결로 인한 투자 저해 법조항이 많음

○ 법령 확정시 조례 수권 규정을 지자체에 고지하고, 그 이행도나 반영도를 부처 평가나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등 수권 규정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 민간개발자에 대한 적정 개발이익률 조례 규정

○ 유럽권, 미국, 대만 등지에서는 분양가 산정에 있어서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이며, 적정이윤율은 대략 8%~15% 정도임(충남발전연구원, 2012)

구분	산정방식	비고(적정이윤율)
영국	시장원리(개발자가 결정) English Partnership이나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주로 기반시설이 빈약한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개발	적정이익율의 산정과 관련된 뚜렷한 제도적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대개 투입비용의 15%정도
독일	대도시 : 시장원리(개발자가 결정) 그 외 : 정책가격(정책적 결정)	공영개발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단지 민간개발업자들이 약 10% 정도의 이익을 분양가에 산입
대만	시장가격이하 수준으로 유지 : 산업단지 분양가는 정부에 의해 철저히 관리(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정부개발산업단지의 경우 총비용의 8%정도가 위탁을 받아 개발한 기관(개발 주체)으로 이윤이 돌아가며, 민간개발 산업단지의 경우 이윤제한 규정이 없다.
프랑스	최고가격 :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결정(시장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최저가격 : 정책가격(적자부분 지방정부 부담)	손실은 고용증가와 세금증대, 부가가치세 증대 등 지방세수 증가로 상쇄
미국	시장원리(개발자가 결정)	산업단지 분양과 관련된 정부규제 없음

○ 지자체 내의 금융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자율, 지역 내 투자여력 등 다양한 요소의 분석을 통해 지자체 고유의 적정 개발이익률을 산정하고 이를 조례로 입안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 지자체의 위상 및 역량제고

○ 조례의 위상 강화로 인한 지자체의 위상 강화 및 중앙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 조례 수권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자체 현황 및 경제 여건에 관한 이해가 깊어지며 이를 통한 지자체의 행정 역량 제고

❑ 산업단지용 토지의 효율적 공급

○ 맞춤형 적정 이용률에 따라 산업단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기업의 입주 및 추가적인 고용 창출이 가능

※ 송도 지식정보 산업단지의 경우 : 00개 기업입지와 000명의 추가적인 고용창출

❑ 지자체 지역경제 활성화제고

○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로 인한 신규 기업 유치 혹은 기존 기업 확장으로 인한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3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1-08)

1. 현황 및 문제점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음('09년~)

* 공개공지·공개공간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의 지역에 해당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공간
*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등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함
* 관련법령 :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 공개공지 등에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정사항임(국가정책조정회의, '09. 3. 27.)

*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개정('09. 6. 30.)

<공개공지 및 판촉활동 행사>





❑ 아산시, 논산시, 서천군, 태안군, 당진군 등은 공개공지 활용 규제 완화 내용을 건축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기존의 강화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 또한 의정부시의 경우 공개공지 등에서 문화행사만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수원시는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공개공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범위를 축소 적용

* 관련 규제완화가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 반영된 지자체를 예시한 것이며, 전체 지자체의 건축조례를 검토할 경우 더 많은 미반영·일부반영 지자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규제완화 규정 미반영은 물론이며, 공개공지에서 가능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간을 축소한 것은 법령의 규제완화 목적·취지에 반하고 규제 수요자인 주민에게 불편 초래

- 관련 법령에서 규제가 완화된 내용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이 바람직함

2.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공개공지 활용에 대한 완화된 규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여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

- 연간 60일 이내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행사나 판촉활동 허용

* 경기, 대전, 충남 기초지자체 : 아산시, 논산시, 서천군, 태안군, 당진군, 의정부시

○ 공개공지 안내 표지판 설치 및 표지판에 관련 법령 내용 명기

○ 자치단체별 공개공시 지역에 대한 홍보 강화

□ 기대효과

○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에 따른 경기활성화 기대

○ 지역단위 문화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다양한 소규모 행사를 통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 공개공지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한 대시민 소통 원활화

〈참고1〉 부처회신 양식 (예시)

『힘있는 당진 미소짓는 시민!』

당찬 당진

당 진 시

수신 중소기업옴부즈만 귀하 (우110-300 서울 종로구 관훈동 151-8 동덕빌딩 2층)
(경유)
제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의견 회신

1. 중소기업옴부즈만실-33(2013.02.05)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로 요청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 ◇

○ 의견요청 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6항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는 규정과 관련하여 당진시 건축조례에 공개공지 활용 규제 완화 내용을 미반영에 대한

☞ 검토 의견 : 2013년 상반기 중 건축조례 개정 예정으로 상기 공개공지 활용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끝.

당 진 시 장 (당진시장인)

주무관 이소정 건축허가팀장 조숙경 건축과장 박영수 전결 2013. 2. 13.
협조자 주무관 한건수
시행 건축과-5678 (2013. 2. 13.) 접수
우 343-050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수청동 1002번지) / http://www.dangjin.go.kr/
전화번호 041-350-4471 팩스번호 041-350-4509 / isojung2@korea.kr / 대국민 공개

부처회신 양식

<table>
<tr><td>① 건의기관</td><td></td><td>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td><td></td></tr>
<tr><td>③ 소관부처</td><td>아산시 건축과</td><td>④ 부서담당자 및 연락처</td><td>건축허가팀 김 종호 (041-5402721)</td></tr>
<tr><td>⑤ 제 목</td><td colspan="3">공개공지활용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r><td>⑥ 건의 내용</td><td colspan="3"><제도 현황>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등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내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공개공지에서는 문화 및 판촉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슴.
<건의 주요내용>
-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건축조례에 명문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슴</td></tr>
<tr><td>⑦관련 제도 내용</td><td colspan="3">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공개공지등의 확보)⑥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td></tr>
<tr><td>⑧ 부처 의견</td><td colspan="3">☐ 수용 ☑ 일부 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불가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공개공지등의 확보)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에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조례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위와같은 목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제한하고 있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위와 같은 사유로 건축조례로 별도로 정하지 않았던 것이며 이를 조례로 정할 경우 오히려 공개공지의 관리등과 관련하여 자칫 토지주 및 인근주민들과의 마찰이 조장될 수 있으며, 60일 이라는 한정된 기간에 대한 관리의 주체가 모호한 점등의 문제가 있음(예를 들어 6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어떠한 제재를 할것인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등)
-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부 수용하여 건축조례 개정시 반영할 예정임</td></tr>
<tr><td>⑨ 해외 사례</td><td colspan="3"></td></tr>
<tr><td>⑩ 추진 일정</td><td colspan="3"></td></tr>
</table>

〈부록 3〉 행정규제기본법

제1장 총칙 <개정 2010.1.25>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개정 2010.1.25>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

익의 비교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7.1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제9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개정 2010.1.25>

제17조(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10.1.25>

1.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삭제 <2009.3.25>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5>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

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그 기존규제의 정비 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끝낸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조직 정비 등)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개정 2010.1.25>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개정 2010.1.25>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규제개혁 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5368호, 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529호, 1998.2.28>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7797호, 2005.12.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

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532호, 2009.3.2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965호, 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1935호, 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4〉 지방규제 설문지

기업투자 및 기업활동 관련 지자체 규제에 관한 설문지
(기업인 대상)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전행정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지방차원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실태분석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기업의 투자 및 활동에 관한 각종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지방차원에서의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귀하의 고견을 듣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4조 및 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e-mail : hhkim@krila.re.kr
연 락 처: 02-3488-7344

■ 각 문항의 해당 번호에 체크(√)하거나 내용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I. 다음은 지자체 기업활동 규제전반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기업활동에 대한 지자체 규제정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기업활동에 대해서 지자체의 규제가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1-2	지자체의 기업활동 규제수준이 기업활동을 저해할 정도로 높다	①	②	③	④	⑤

2.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원인의 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우선순위를 1, 2, 3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앙정부 제정 법령(　　)　② 지자체의 조례 및 법규(　　)
③ 지자체 공무원 행태(　　)

3. 기업활동에 대한 다음의 규제 정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중앙정부가 제정한 기업활동 규제와 관련된 법령이 기업활동을 저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지자체의 기업활동 규제와 관련된 조례가 기업활동을 저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지자체의 기업활동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행태가 기업활동을 저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기업활동에 대한 지자체 조례 등 자치법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다음 각각에 대해 지자체 조례의 규제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전혀 부담이 없다	부담 없는 편이다	보통	엄격한 편이다	매우 엄격하다
2-1	창업 관련 규제	①	②	③	④	⑤
2-2	형질변경 등 토지이용 규제	①	②	③	④	⑤
2-3	공장설립 등 건축규제	①	②	③	④	⑤
2-4	폐기물 처리 등 환경 규제	①	②	③	④	⑤
2-5	조업안전 등 안전 규제	①	②	③	④	⑤
2-6	인허가 등 절차상의 규제	①	②	③	④	⑤
2-7	기타 규제	①	②	③	④	⑤

2. 창업과 관련된 다음의 지자체 조례나 규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2-8	창업과 관련해 무리한 조건을 붙인다 (일정 이상의 조리실 면적 등)	①	②	③	④	⑤
2-9	창업을 위해 거쳐야하는 절차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10	창업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길다	①	②	③	④	⑤
2-11	창업심사에 비용이 많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3. 형질변경 등 다음의 토지이용 조례나 규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2	토지이용 변경을 위해 무리한 조건을 붙인다 (근방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건물이 있어야 한다 등)	①	②	③	④	⑤
2-13	토지이용 변경을 위해 거쳐야하는 절차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14	토지이용 변경에 걸리는 시간이 길다	①	②	③	④	⑤
2-15	토지이용 변경 심사에 비용이 많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 공장설립 등 다음의 건축 조례나 규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6	공장설립이나 증축을 위해 무리한 조건을 붙인다.	①	②	③	④	⑤
2-17	건축을 위해 거쳐야하는 절차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18	건축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길다	①	②	③	④	⑤
2-19	건축규제 처리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 폐기물 처리 등 환경 조례나 규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2-20	환경규제의 기준이 엄격하다	①	②	③	④	⑤
2-21	환경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절차가 너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22	환경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23	환경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이행사항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길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 조업안전 등 안전과 관련된 조례나 규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2-24	안전 규제의 기준이 너무 높다	①	②	③	④	⑤
2-25	안전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요구하는 절차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26	안전 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27	안전 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이행사항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길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귀하가 겪으신 투자를 저해시키는 지자체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의 문제점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6번에 응답한 이외의 사항이나, 기타 법령 등의 문제점을 서술해 주세요.

구 분	문제점
창업과 관련된 규제	- -
형질변경 등 토지이용 규제	- -
공장설립 등 건축규제	- -
폐기물 처리 등 환경 규제	- -
조업안전 등 안전 규제	- -
기타 규제	- -

8. 다음 각 지자체 자치 법규(조례, 규칙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귀사가 입은 손해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년에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백만원)

구 분	규제로 인한 비용
창업과 관련된 규제	(백만원)
형질변경 등 토지이용 규제	(백만원)
공장설립 등 건축규제	(백만원)
폐기물 처리 등 환경 규제	(백만원)
조업안전 등 안전 규제	(백만원)
기타 규제	(백만원)

9. 다음 각 지자체 자치 법규(조례, 규칙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었다면, 귀하는 지금보다 1년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더 투자하고, 어느 정도 인원을 더 고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문제 해결 시 추가 투자액 및 추가 고용인원	
창업과 관련된 규제	연간 추가 투자	(백만원)
	연간 추가 고용 인원	(명)
형질변경 등 토지이용 규제	연간 추가 투자	(백만원)
	연간 추가 고용 인원	(명)
공장설립 등 건축규제	연간 추가 투자	(백만원)
	연간 추가 고용 인원	(명)
폐기물 처리 등 환경 규제	연간 추가 투자	(백만원)
	연간 추가 고용 인원	(명)
조업안전 등 안전 규제	연간 추가 투자	(백만원)
	연간 추가 고용 인원	(명)
기타 규제	연간 추가 투자	(백만원)
	연간 추가 고용 인원	(명)

Ⅲ. 다음은 지자체 기업활동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태도, 행위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문제가 많다	문제가 있다	보통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3-1	창업과 관련된 규제	①	②	③	④	⑤
3-2	형질변경 등 토지이용 규제	①	②	③	④	⑤
3-3	공장설립 등 건축규제	①	②	③	④	⑤
3-4	폐기물 처리 등 환경 규제	①	②	③	④	⑤
3-5	조업안전 등 안전 규제	①	②	③	④	⑤
3-6	인허가 등 절차상의 규제	①	②	③	④	⑤
3-7	기타 규제	①	②	③	④	⑤

2. 기업 활동의 다음 항목에 대해 공무원의 태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3-7	기업활동 규제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기업활동 규제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기업활동 규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0	기업활동 규제업무를 법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3-11	기업활동 규제업무 수행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12	부서 경계를 넘어서는 규제업무의 경우 부서 상호간의 협조를 위해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13	기업활동 규제업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지자체의 기업활동 인·허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인·허가와 관련한 조례 등 지자체 자치법규와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문제가 많다	문제가 있다	보통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4-1	창업 관련 인허가	조례 등 자치법규	①	②	③	④	⑤
		공무원 인식, 태도	①	②	③	④	⑤
4-2	형질변경 등 토지이용 인허가	조례 등 자치법규	①	②	③	④	⑤
		공무원 인식, 태도	①	②	③	④	⑤
4-3	공장설립 등 건축 인허가	조례 등 자치법규	①	②	③	④	⑤
		공무원 인식, 태도	①	②	③	④	⑤
4-4	폐기물 처리 등 환경 인허가	조례 등 자치법규	①	②	③	④	⑤
		공무원 인식, 태도	①	②	③	④	⑤
4-5	조업안전 등 안전 인허가	조례 등 자치법규	①	②	③	④	⑤
		공무원 인식, 태도	①	②	③	④	⑤

2. 지자체의 인허가와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4-6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구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7	인허가의 처리 기간이 길다	①	②	③	④	⑤
4-8	인허가 절차상 요구하는 자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9	인허가 심의지연 등 소극적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10	법령의 변경을 모른 채 제동을 건다	①	②	③	④	⑤
4-11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이 재량을 남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4-12	인허가 관련 로비스트, 브로커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지자체의 기업활동 규제와 관련된 행정시스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다음에 제시된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5-1	각종 서류의 제출 과정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2	여러 부서와 관련된 업무의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3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 및 발급 편의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4	각종 행정처리를 위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	①	②	③	④	⑤
5-5	각종 행정처리 절차 및 소요시일 등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게 공개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6	각종 행정처리 절차 및 소요시일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7	규제업무의 진행에 대한 정보가 해당 고객에게 잘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8	각종 서류의 제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상시로 문의할 수 있는 전담조직(창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9	지자체에서 규제를 전담하는 조직과 담당자를 찾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다	①	②	③	④	⑤
5-10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주기적으로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청취, 수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귀사가 속해 있는 자치단체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신고센터 혹은 기업애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있으면 명칭을 기입해 주십시오.

① 있다 명칭 ()	② 없다

3. 위의 문항 2에서 "있다"라고 답한 경우, 신고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4. 지자체의 규제개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해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지자체 자치법규의 정비
② 지자체 공무원 행태 변화
③ 지자체 행정시스템 정비
④ 지자체 규제신고센터의 정비
⑤ 관련 법령의 개정
⑥ 규제 관련 부서 간 책임 명확화
⑦ 규제 관련 부서 간 권한조정 강화
⑧ 기업애로 사항의 주기적 파악
⑨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
⑩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인허가 관련 로비스트, 브로커
⑪ 기타 ()

5. 지자체의 기업투자 활성화 및 규제완화를 저해하는 요인, 관할권 갈등 등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다음은 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귀 사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①_____ 제조업 ② _____ 건설업 ③ _____ 서비스업

④ ___ 기타 ()

2. 귀 사의 입지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_____ 개별입지 ② _____ 산업단지 ③ _____ 경제자유구역

④ ___ 기타 ()

3. 귀 사의 설립연도와 종업원 수는 어떠합니까?

설립연도	**()년**
종업원수	**()명**

4. 귀 사가 위치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특·광역시/도	**()시/ 군/ 구**

5. 귀 사의 성장단계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_____ 창업 후 초기단계 ②_____성장기(시장 확보 단계)

③_____ 성숙기(시장 확대 단계) ④_____ 안정기(후속 상품개발)

⑤_____ 정체기 ⑥_____ 기타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기업투자 및 기업활동 관련 지자체 규제에 관한 설문지
(공무원 대상)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전행정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차원의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기업의 투자 및 활동에 관한 각종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지방차원에서의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귀하의 고견을 듣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조사결과는「통계법」4조 및 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mail :
연 락 처:

■ 각 문항의 해당 번호에 체크(√)하거나 내용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I. 다음은 지자체 기업활동 규제전반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기업활동에 대한 지자체 규제정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기업활동에 대해서 지자체의 규제가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1-2	지자체의 기업활동 규제수준이 기업활동을 저해할 정도로 높다	①	②	③	④	⑤

2.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원인의 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우선순위를 1, 2, 3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앙정부 제정 법령 ()　② 지자체의 조례 및 법규 ()
③ 지자체 공무원 행태 ()

3. 기업활동에 대한 다음의 규제 정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중앙정부가 제정한 기업활동 규제와 관련된 법령이 기업활동을 저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지자체의 기업활동 규제와 관련된 조례가 기업활동을 저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지자체의 기업활동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행태가 기업활동을 저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기업활동에 대한 지자체 조례 등 자치법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다음 각각에 대해 지자체의 조례의 규제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느슨한 편이다	느슨한 편이다	보통	엄격한 편이다	매우 엄격하다
2-1	창업 관련 규제	①	②	③	④	⑤
2-2	형질변경 등 토지이용 규제	①	②	③	④	⑤
2-3	공장설립 등 건축규제	①	②	③	④	⑤
2-4	폐기물 처리 등 환경 규제	①	②	③	④	⑤
2-5	조업안전 등 안전 규제	①	②	③	④	⑤
2-6	인허가 등 절차상의 규제	①	②	③	④	⑤
2-7	기타 규제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지자체 기업활동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태도, 행위 등 규제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창업과 관련된 규제	①	②	③	④	⑤
3-2	형질변경 등 토지이용 규제	①	②	③	④	⑤
3-3	공장설립 등 건축규제	①	②	③	④	⑤
3-4	폐기물 처리 등 환경 규제	①	②	③	④	⑤
3-5	조업안전 등 안전 규제	①	②	③	④	⑤
3-6	인허가 등 절차상의 규제	①	②	③	④	⑤
3-7	기타 규제	①	②	③	④	⑤

2.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3-8	기업활동 규제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기업활동 규제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3-10	기업활동 규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1	기업활동 규제업무를 법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3-12	기업활동 규제업무 수행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13	부서의 경계를 넘어서는 규제업무의 경우 부서 상호간의 협조를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14	기업활동 규제업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지자체 기업활동의 인·허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다음 항목에 대한 조례 등 지자체 자치법규와 공무원의 태도의 인허가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	창업 관련 인·허가	조례 등 자치법규	①	②	③	④	⑤
		공무원 인식, 태도	①	②	③	④	⑤
4-2	형질변경 등 토지이용 인·허가	조례 등 자치법규	①	②	③	④	⑤
		공무원 인식, 태도	①	②	③	④	⑤
4-3	공장설립 등 건축 인·허가	조례 등 자치법규	①	②	③	④	⑤
		공무원 인식, 태도	①	②	③	④	⑤
4-4	폐기물 처리 등 환경 인·허가	조례 등 자치법규	①	②	③	④	⑤
		공무원 인식, 태도	①	②	③	④	⑤
4-5	조업안전 등 안전 인·허가	조례 등 자치법규	①	②	③	④	⑤
		공무원 인식, 태도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의 지자체 인·허가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4-6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7	인허가의 처리 기간이 길다	①	②	③	④	⑤
4-8	인허가 절차상 요구하는 자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9	인허가 심의지연 등 소극적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10	법령의 변경을 잘 모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11	재량의 여지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12	인허가 관련 로비스트, 브로커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지지자체 기업활동 규제와 관련된 행정시스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는 다음에 제시된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5-1	각종 서류의 제출 과정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2	여러 부서와 관련된 업무의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3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 및 발급편의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4	각종 행정처리를 위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	①	②	③	④	⑤
5-5	각종 행정처리 절차 및 소요시일 등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게 공개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6	각종 행정처리 절차 및 소요시일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7	규제업무의 진행에 대한 정보가 해당 고객에게 잘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8	각종 서류의 제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상시로 문의할 수 있는 전담조직(창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9	지자체에서 규제를 전담하는 조직과 담당자를 찾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다	①	②	③	④	⑤
5-10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주기적으로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청취, 수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가 근무하시는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신고센터 혹은 기업애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래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있다()	없다()
명칭()	

3. 위의 문항 2에서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신고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4. 지자체의 규제가 기업은 물론 사회적 비용을 어느 정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높음	높음	보통	적음	매우 적음
①	②	③	④	⑤

5. 다음 항목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재량권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창업과 관련된 규제	①	②	③	④	⑤
3-2	형질변경 등 토지이용 규제	①	②	③	④	⑤
3-3	공장설립 등 건축규제	①	②	③	④	⑤
3-4	폐기물 처리 등 환경 규제	①	②	③	④	⑤
3-5	조업안전 등 안전 규제	①	②	③	④	⑤
3-6	인허가 등 절차상의 규제	①	②	③	④	⑤
3-7	기타 규제	①	②	③	④	⑤

6. 지자체의 규제개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해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지자체 자치법규의 정비
② 지자체 공무원 행태 변화
③ 지자체 행정시스템 정비
④ 지자체 규제신고센터의 정비
⑤ 관련 법령의 개정
⑥ 규제 관련 부서 간 책임 명확화
⑦ 규제 관련 부서 간 권한조정 강화
⑧ 기업애로 사항의 주기적 파악
⑨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
⑩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인허가 관련 로비스트, 브로커
⑪ 기타 ()

7. 지방차원에서의 기업투자 활성화, 규제완화를 저해하는 요인, 관할권 갈등 등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Ⅵ. 다음은 통계처리에 관한 설문입니다.

☞ 해당번호에 √ 표시나 소속 자치단체 및 담당기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_____남 ② _____여

2. 귀하의 연령은?

①_____ 20대 이하 ② _____ 30대 ③ _____ 40대 ④ _____ 50대 이상

3. 귀하가 속한 자치단체는?

☞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광역시/도	() 시/ 군/ 구

4. 귀하의 직급은?

①____ 9급 이하 ②___ 8급 ③___7급 ④____6급 ⑤_____5급 이상

5. 귀하의 공직 근속기간은?

①__5년 이하 ②__6-10년 ③__11-15년 ④___16-20년 ⑤___21년 이상

6. 귀하께서 규제업무를 담당하신 기간은?

☞ 업무를 담당하신 경험이 있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만 담당기간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험) 유무	예()	아니오()
담당기간	()년 ()개월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3. 12. 13., 4차 투자활성화 대책 :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 개선 중심, 청와대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보고자료.

김은지, 2014, 일본의 규제개혁 추진현황과 평가, 대외경제연구원.

심우일, 2013, 선진국 규제개혁제도 비교연구,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안전행정부, 2013. 9.,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완화 과제발굴 회의 자료.

안전행정부, 2013, 8.,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완화 추진상황, 제1차 지방 규제개선위원회 회의자료.

안전행정부, 2013, 10.,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완화 추진상황, 제2차 지방 규제개선위원회 회의자료.

안전행정부, 2008, 지자체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한국능률협회 연구용역 보고서.

양준철 외, 1999, OECD 규제개혁 검토 : 미국, 네델란드, 일본, 멕시코, 대외경제연구원.

이준호, 2013, 영국의 규제개혁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최병선, 2006, 정부규제론, 법문사.

현대경제연구원, 2013, 09., "최근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경제주평 통권 658.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better.go.kr/

규제정보 포털 홈페이지 http://www.better.go.kr/

세계은행 홈페이지 http://www.doingbusiness.org/rankings#

헤리티지 재단 홈페이지 http://www.heritage.org/index/ranking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137-87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Tel. 02)3488-7300 Fax. 02)3488-7309